

연구보고서

2024

15

퇴직연금제도 인출국면 현황과 과제

이경희 · 손성동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목 차

• 요약	1
I. 서론	2
1. 연구배경 및 목적	2
2. 주요 연구내용	3
II. 국내 퇴직연금 인출제도 현황	4
1. 인출국면 제도	4
2. 인출시장 현황	12
3. 인출 인프라	23
4. 문제점	29
III. 해외사례 분석	31
1. 미국	31
2. 영국	44
3. 호주	70
4. 일본	84
5. 시사점	100
IV. 발전방안	102
1. 필요성	102
2. 접근방법	105
3. 세부 발전방안	107
V. 결론	130
• 참고문헌	132

표 차례

〈표 II-1〉 개인형IRP 가입대상	7
〈표 II-2〉 만 55세 이후 인출방식별 과세방식	11
〈표 II-3〉 우리나라 신탁연금과 보험연금 특징 비교	13
〈표 II-4〉 신탁연금 운용상품 유형 사례	15
〈표 II-5〉 보험연금 방식의 상품유형 사례	16
〈표 II-6〉 퇴직연금 적립금 인출방식(만 55세 이후 연금개시 계좌)	20
〈표 II-7〉 연금과 일시금 선택 계좌당 적립금 규모(만 55세 이후 연금개시 계좌)	21
〈표 II-8〉 만 65세 이상 연금 종류별 수급자 수(2016~2022)	22
〈표 II-9〉 만 65세 이상 연금 종류별 수급 현황(2022)	23
〈표 II-10〉 연금전환 통보 대상 사례	23
〈표 II-11〉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보고서 표준 서식	25
〈표 II-12〉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 내용	27
〈표 II-13〉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상품공시 내용	28
〈표 II-14〉 일시납 즉시형 종신연금 수익비 추정 결과(Lee-Carter 모형)	29
〈표 III-1〉 미국 401(k) 추가 납입(Catch Up) 한도 추이	34
〈표 III-2〉 미국 연금보험 수입보험료(2022~2023)	38
〈표 III-3〉 미국 소득연금 시장유형별 판매 비중	39
〈표 III-4〉 미국 소득연금 지급옵션별 비중과 평균보험료(2021)	40
〈표 III-5〉 미국 일시납 거치형연금 거치기간 분포	41
〈표 III-6〉 캘리포니아대학 Deferred Lifetime Income 특징	43
〈표 III-7〉 영국 계약형 인출단계 지급옵션별 최초 선택 추이(2018/19 vs. 2022/23)	54
〈표 III-8〉 영국 계약형 퇴직적립금 규모/인출옵션별 건수(2022. 4~2023. 3)	55
〈표 III-9〉 영국 재량인출 적립금 규모/연령 분포(2022. 4~2023. 3)	57
〈표 III-10〉 영국 연금보험 적립금 규모/연령 분포(2022. 4~2023. 3)	58
〈표 III-11〉 영국 연금보험 유형별 판매건수(2022. 4~2023. 3)	59
〈표 III-12〉 영국 UFPLS 적립금 규모/연령 분포(2022. 4~2023. 3)	60
〈표 III-13〉 영국 전액 일시금 적립금 규모/연령 분포(2022. 4~2023. 3)	61
〈표 III-14〉 영국 정률인출 수준 분포(2022. 4~2023. 3)	62
〈표 III-15〉 영국 연금보험 자문서비스 유형(2022. 4~2023. 3)	63
〈표 III-16〉 영국 재량인출 자문서비스 유형(2022. 4~2023. 3)	64

〈표 III-17〉 영국 NEST 제공 펀드 특성	65
〈표 III-18〉 영국 Vanguard Asset Management Pathways 펀드 수수료	69
〈표 III-19〉 호주 연령구간별 최저 인출률	73
〈표 III-20〉 호주 지급방식별 계좌 수 추이	75
〈표 III-21〉 호주 연금수령 옵션별 가입자의 평균 적립금 규모	76
〈표 III-22〉 호주 연금수령 옵션별 가입자의 평균 연금급여 규모	77
〈표 III-23〉 호주 MyNorth Lifetime 계좌 구성	80
〈표 III-24〉 호주 MyNorth Lifetime 최대 인출률	82
〈표 III-25〉 호주 MyNorth Lifetime 연간 보너스율(annual bonus rates)	83
〈표 III-26〉 일본 DB형 노령급부금의 연금 및 일시금 지급 현황	91
〈표 III-27〉 일본 기업형 DC 노령급부금의 연금 및 일시금 지급 현황	92
〈표 III-28〉 일본 개인형 DC 노령급부금의 연금 및 일시금 지급 현황	93
〈표 III-29〉 연도별 비율지정 방식에서의 연금액 산출	95
〈표 III-30〉 횡수지급방식(예)	99
〈표 IV-1〉 50대 이상 및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자 현황	102
〈표 IV-2〉 50대 이상 1인당 개인형 IRP 적립금액 등의 증가 추이	103
〈표 IV-3〉 연금종류별 연금가입자 현황	105
〈표 IV-4〉 일본의 퇴직급여 종류와 지급방법	113
〈표 IV-5〉 근퇴법 제17조 개정(안)	113
〈표 IV-6〉 연금수령에 대한 연금소득세율	118
〈표 IV-7〉 2017년 퇴직연금통계에서의 퇴직연금 수급 현황	119

그림 차례

〈그림 II-1〉 신탁연금 지급방식	14
〈그림 II-2〉 보험연금 지급방식	15
〈그림 III-1〉 미국 하이브리드 연금+TDF 구성 요소	44
〈그림 III-2〉 영국 Money Helper 연금보험상품 가격비교 사례	47
〈그림 III-3〉 영국 Money Helper 재량인출 가격비교 사례	49
〈그림 III-4〉 영국 계약형 퇴직적립금 규모/인출옵션별 분포(2022. 4~2023. 3)	56
〈그림 III-5〉 NEST Guided Retirement Fund 구성	67
〈그림 III-6〉 호주 GDP 대비 퇴직연금적립금 규모(적립단계+인출단계)	71
〈그림 III-7〉 호주 변들형 인출상품의 구성요소	78
〈그림 III-8〉 MyNorth 인출상품 사망/해지 급부금 설정 한도	84
〈그림 III-9〉 일본의 통산 가입기간별 노령급부금 청구 가능 연령	87
〈그림 III-10〉 분할매도연금과 연금상품 이용의 차이	94
〈그림 III-11〉 기간균등지급 방식에서의 연금액 산출	94
〈그림 III-12〉 잔존월수(회수)안분 방식에서의 연금액 산출	95
〈그림 III-13〉 경과월지급방식에서의 연금지급 방식	96
〈그림 III-14〉 회수지급방식에서의 연금지급 방식	96
〈그림 IV-1〉 퇴직연금제도 연금화율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트라이앵글	107
〈그림 IV-2〉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른 과세방법	117
〈그림 IV-3〉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4대 서비스 영역	121
〈그림 IV-4〉 개인연금 상품 종류별 운용성과와 수익의 관계	125
〈그림 IV-5〉 개편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 상의 예상 연금수령액 서식	127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the Decumulation Phase in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As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in Korea approaches its 20th anniversary, the number of participants entering the decumulation phase is increasing. However, the current retirement pension system is primarily focused on the accumulation phase, with inadequate provisions for the decumulation phase. This study aims to derive and find solutions to the challenges facing the domestic retirement pension system by referring to foreign cases.

In the United States, the SECURE Act introduced mandatory Lifetime Income Illustrations for longevity risk management, expanded incentives for incorporating annuities, and exempted fiduciary responsibilities for annuity providers. The United Kingdom requires providers to offer open market options, establish independent governance committees, provide information on risks associated with withdrawal options, supply pension and annuity price comparison data, and offer discretionary and structured withdrawal options. Australia proposed the concept of a comprehensive retirement income product as a default option in the decumulation phase, extending the scope of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from accumulation for old age to withdrawal for a dignified retirement. Japan permits various withdrawal methods, such as lump-sum payments, annuities, combinations of annuities and lump-sum payments, and direct management of annuities and reserves.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advancement strategies for the retirement pension system that has entered the decumulation phase, in three

aspects:

Institutional Aspects: These include relaxing pension income requirements, enhancing IRP flexibility, defaulting annuity income option, strengthening tailored communication provision for the decumulation phase, and applying the lowest tax rate when selecting annuities.

Environmental Aspects: Suggested improvements include the enhancement of retirement pension statistics, systematic provision of free public advisory services, and strengthening the comparative disclosure for the decumulation phase.

Managerial Aspects: Proposals include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annuities, improving the items in operation status reports, and strengthening asset management capabilities.

요약

우리나라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출국면에 진입하는 가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적립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출단계에 대한 대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인출국면에 진입한 국내 퇴직연금제도의 과제를 도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은퇴강화법(SECURE)에서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한 평생소득금액 예시(Lifetime Income Illustration) 의무화, 종신연금보험 편입 유인 확대, 종신연금보험 사업자에 대한 수탁자책임 면제 등을 도입하였다. 영국은 공개시장옵션, 독립지배구조위원회, 인출옵션 선택 시 수반되는 위험에 대한 정보제공, 연금보험 가격비교 정보, 재량인출 및 정형화된 인출옵션 제공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호주는 인출단계에서 디폴트 상품의 조건으로 포괄적 퇴직소득상품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범위를 노후를 대비한 적립단계에서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인출단계로까지 확장하였다. 일본은 일시금, 연금, 연금+일시금, 연금+적립금 직접운용 등 다양한 인출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측면에서 인출국면에 접어든 퇴직연금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연금수령 요건의 완화, IRP 유연성 제고, 연금수령의 디폴트화, 인출국면 맞춤형 정보제공의 강화, 종신연금 선택 시 최저세율 적용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퇴직연금 통계의 개선, 공적 무료상담서비스의 체계적 제공, 인출국면 비교공시 강화 등 3가지를 제안하였다. 경영적 측면에서는 연금보험 경쟁력 제고, 운용현황보고서의 항목 개선, 자산운용 역량 강화 등 3가지를 제시하였다.

1. 연구배경 및 목적

다층노후연금 체계에서 퇴직연금제도는 은퇴 후에도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득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24년 인출국면에 진입하는 50대 인구는 872만 명에 달하고, 2025년에는 65세 이상 연령층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소득흐름의 확보가 중요한 화두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근로자의 은퇴 이후 안정적 소득흐름 확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퇴직연금제도는 도입 이후 18년이 경과하면서 적립금이 380조 원을 넘어서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구현하고 있다. 머지않은 시기에는 퇴직연금적립금 규모가 국민연금을 넘어설 것이라는 주장까지 등장할 정도로 퇴직연금제도의 위상과 중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퇴직연금제도의 확산과 이를 통한 노후자금 축적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차례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온 정책당국의 노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와 대상자 중 인출국면에 진입한 자의 비중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아져 버린 현실을 감안하면,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궁극적 목표인 지속가능한 은퇴소득 창출과 관련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인출국면 관련 내용은 최초 제정 이후 별다른 개정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인구구조 측면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외국에서는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출국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제도의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2022년 장수위험 관리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둔 퇴직연금제도 개혁을 단행하여 적립단계에서부터 종신연금 상품을 편입하도록 하여 적립단계와 인출단계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호주는 오랜 논의 끝에 2023년 퇴직연금제도를 적립국면과 인출국면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은퇴소득 전략(Retirement Income Covenant)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책무

를 새로이 부과하였다. 영국은 2020년 금융자문서비스를 받지 않고 인출국면에 진입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네 가지 투자옵션(Investment Pathways)을 제공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내에 독립지배구조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감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퇴직연금제도의 인출국면에 대한 진단과 해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인출국면에 접어든 국내 퇴직연금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인출국면에 접어든 국내 퇴직연금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퇴직연금제도의 인출국면에 대한 진단이다. 여기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인출국면과 관련한 규정과 과세방식을 살펴본다. 이어 인출시장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신탁연금과 보험연금 등의 인출옵션, 인출방식 선택 현황, 인출 관련 인프라 등을 살펴본다.

둘째, 해외사례 분석을 위해서는 미국·영국·호주·일본 등 4개국을 살펴본다. 각 국가의 인출관련 제도, 시장 상황, 인출 관련 구체적 사례를 차례로 분석한다. 인출 관련 제도에서는 퇴직연금제도 관련 법령과 세제를, 시장 상황에서는 인출에 특화된 상품의 유형과 구조, 판매실적 등을 살펴본다.

셋째, 발전방안에서는 크게 제도·환경·경영 등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세부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도적 발전방안은 주로 관련 법령의 규정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인출국면의 발전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편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적 측면의 발전방안은 퇴직연금제도를 규율하는 법령에서 다루기 힘든 내용이지만 인출국면에 접어든 가입자들이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반 내용을 말한다. 경영적 측면의 발전방안은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주로 인출국면에서의 보험회사 경쟁력 제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며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국내 퇴직연금 인출제도 현황

1. 인출국면 제도

가. 인출 관련 규정

1) 퇴직급여 종류 및 자산운용

우리나라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어 18년이 지났고, 적립금 규모도 2023년 말 기준 382.4조 원에 달하였지만, 그간 제도개선은 주로 적립국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2005년 최초 제정된 이후 인출국면 관련 법령 개정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동 법 제17조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인출방식(급여 종류)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동 조항에서는 연금과 일시금에 대한 수급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연금은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5년 이상 지급'하도록 한다. 연금방식 인출조건에 대해서는 연령/가입기간/지급기간에 대한 요건을 두고 있는 반면, 일시금은 앞서 언급한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제한 없이 지급하도록 한다.

퇴직연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안정적인 노후소득 마련이므로 이에 부합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6월 발의된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연금기능 강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다.¹⁾ 구체적 내용으로 연금 형태를 기본적인 지급방식으로 하되, 사전에 명시적으로 연금 수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만 일시금을 허용하고, 일시금 수령 시 그 한도를 55세 도달 시점 적립금의 30%로 제한하는 방식이다(안 제24조의2 신설). 그러나 입법 예고된 이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2024년 5월 자동 폐기되었다.

한편, 인출국면 상품에 대한 운용규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퇴직연금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운용방법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열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및 기준을 말한다.(개정 2015. 3. 23, 2022. 4. 13)

1. 운용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
 -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적금
 - 나.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중 적립금이 반환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계약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 이 경우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은 사용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판서가 취급하는 예금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중 신용등급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인 증권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330조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예탁금
 -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사. 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인 중장기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요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8조의3에서 정하고 있다.

1) 국회법률도서관(<https://law.nanet.go.kr>)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8조의3(운용방법으로서의 보험계약) ① 납입보험료의 전액이 적립금의 반환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다만,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 자산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비용은 적립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2항 단서에 따른 보험계약의 경우 위험보험료 및 보증수수료를 적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적립금의 반환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약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계약(이하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이라 한다, 2023. 11. 16 신설)은 제외한다.**

1.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 개인형퇴직연금에서 운용될 것
 2. 납입보험료 전액(연금개시 시점까지의 자산운용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퇴직급여로 보증할 것
 3. 제2호에 따른 보증을 위해 보증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산출방식 등의 적정성을 판매 전에 확인받고, 보험업 감독규정 제6-11조의5에 따라 보증준비금을 적립할 것
 4.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보험계약부채로 구분될 것
- ③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의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제8항제1호가목의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설명의무를 준용하여 가입자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2023년 11월 허용된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연금전환 특약 형태가 아니라 퇴직연금 운용 상품으로 연금급여가 지급되는 최초 상품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금소득을 수령하면서 잔여 적립금은 계속 운용할 수 있어 유연성과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2) 개인형IRP를 통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2021년 4월 13일부터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하 '개인형IRP' 또는 'IRP'라 함)으로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형IRP를 통한 수령의 예외 사유가 된다. 구체적인 예외 사유는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2015년 12월 11일 이후 3백만 원) 이하인 경우, 담보대출 상환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만 55세 이후 퇴직하여 연금방식으로 퇴직급여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인형IRP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017년 7월 26일부터 개인형IRP를 설정할 수 있는 대상은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로 확대되었다. 여기에는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및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포함된다. 개인형IRP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2023년 기준 1,800만 원) 내에서 본인이 추가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연간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 II-1〉 개인형IRP 가입대상

구분	가입대상	
퇴직연금 도입기업	퇴직근로자	기존 퇴직연금제도(DB, DC)에서 퇴직급여를 수령한 근로자(의무사항)
		퇴직급여 일시금 또는 중간정산금 수령자(자율 선택)
	추가부담금 납부희망자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의 근로자 퇴직금제도에서 일시금을 수령하여 IRP에 납입한 가입자
개인사업자(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1년 미만 근속 및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자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http://www.fss.or.kr/fss/lifeplan/bnacJoin/list.do?menuNo=200954#>)

개인형IRP는 퇴직급여를 이전시키는 용도와 근로기간 동안 추가납입을 통해 적립금을 증식시키는 것이 혼재되어 있다. 이에 대한 과세방식도 상이하기 때문에 현업에서는 전자를 퇴직IRP, 후자를 적립IRP로 구분하고 있다.

나. 과세방식

인출국면에 대해 소득세법에서는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퇴직소득과 연금계좌를 통한 연금 소득에 대해 달리 과세한다.

1) 퇴직소득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퇴직금 포함)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분류과세 방식으로 세부담을 크게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이 달라지는데 퇴직급여가 많을수록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퇴직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이다.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에 의하면, 퇴직급여 규모가 5천만 원 수준일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은 근속연수 5년이 4.7%, 10년은 1.5%, 15년은 0.7%에 불과하다. 이는 퇴직급여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절세 목적으로 연금방식을 선택할 유인이 거의 없음을 시사한다. 퇴직급여가 1억 원일 경우 실효세율은 근속연수가 5년이면 10.4%이나, 10년으로 길어지면 4.3%, 15년은 2.4%, 20년은 1.2%로 낮아지고, 25년은 0.8%에 불과하다. 퇴직급여가 1.5억 원이면 근속연수 5년일 때 14.8%, 10년일 때 7.1%이나, 15년이면 4.0%로 낮아지고, 30년은 1.1%에 불과하다. 퇴직급여가 2억 원으로 높아질 경우 근속연수 5년과 10년의 실효세율은 각각 17.9%, 9.8% 수준이나, 15년은 5.8%, 20년은 3.9%로 낮아진다.

소득세법 제146조에서는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할 경우 연금외수령(일시금수령)하기 전까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는 퇴직소득을 본인의 일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연금계좌(개인형IRP, 연금저축²⁾)로 입금하면, 인출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납부한다는 의미이다. 설령 본인의 일반 계좌로 입금했다라도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다시 입금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2)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을 의미함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대략 퇴직급여 규모가 1.5억 원 이상이고, 근속연수는 10년 이하일 경우 부담하는 퇴직소득세 규모는 1천만 원 수준이다. 따라서 퇴직급여 규모가 2억 원 이상으로 크고, 근속연수가 짧을 경우 절세(퇴직소득세 이연) 목적으로 연금계좌로 퇴직소득을 이전시켜 인출할 유인이 작용한다. 이연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로 연기(이연)하였다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퇴직소득산출세액에 퇴직소득금액 대비 이연된 퇴직소득의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text{이연퇴직소득세} = \text{퇴직소득산출세액} \times \frac{\text{이연퇴직소득}}{\text{퇴직소득금액}}$$

2) 연금소득

소득세법에서는 연금계좌를 통해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연금계좌에 포함된 재원(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그리고 이들의 운용수익)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저율(5.5~3.3%, 지방소득세 포함)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에서는 연금계좌로부터 연금형태 인출 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다만, 이연퇴 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는 예외),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일 것 등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재원별 인출순서가 정해져 있다. 가장 먼저 인출되는 금액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자기)부담금으로 이는 납입단계에서 과세되었으므로 인출단계에서는 비과세된다. 두 번째 인출되는 금액은 퇴직소득 원금으로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며,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이연하여 연금수령 시점에서 70%(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60%(실제 수령연차 10년 초과)를 과세한다. 마지막 인출되는 금액은 연금계좌를 통해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과 운용수익금이다. 이 재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하며,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한다. 다만, 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6.6~49.5%, 지방소득세 포함) 또는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5의2.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70세 미만	100분의 5
70세 이상~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

나. 삭제(2014. 12. 23)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

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표 II-2〉는 만 55세 이후 연금계좌 적립금 인출 시 연금수령 한도 여부와 형성된 재원 기준으로 적용되는 과세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사용자 부담금으로 형성된 퇴직소득과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운용수익금을 연금수령 한도 내 금액으로 인출 시 세제혜택(퇴직소득세의 60~70%, 연금소득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을 부여한다. 여기서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누고 120%를 곱하여 산정된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 평가액이 1억 원일 경우 1년차 연금수령 한도는 1천 2백만 원이 된다.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할 경우에는 연금수령 한도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한도 초과금액은 기타소득세(16.5%)가 적용된다. 따라서 절세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이전시킨 후 매년 연금수령 한도 내 금액으로 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129조에서 정하고 있다.

〈표 II-2〉 만 55세 이후 인출방식별 과세방식

구분	재원	사용자 부담금으로 형성된 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 +운용수익금						
연금수령 한도 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연금계좌의 평가액</td> <td>120</td> </tr> <tr> <td colspan="2">----- x -----</td> </tr> <tr> <td>(11 - 연금수령연차)</td> <td>100</td> </tr> </table>	연금계좌의 평가액	120	----- x -----		(11 - 연금수령연차)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연금수령연차 10년 이하: 이연퇴직소득세 30% 감면 • 실제 연금수령연차 10년 초과: 이연퇴직소득세 4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500만 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70세 미만: 5.5% - 만 80세 미만: 4.4% - 만 80세 이상: 3.3% • 연 1,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세(6.6~49.5%)* 또는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중 선택
		연금계좌의 평가액	120						
----- x -----									
(11 - 연금수령연차)	100								
연금 외 수령, 연금수령 한도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연퇴직소득세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 100%(분류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세(6.6~49.5%)* 또는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중 선택 						

주: * 지방소득세 포함

자료: 저자가 작성함

2. 인출시장 현황

가. 인출옵션

1) 신탁연금과 보험연금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형IRP와 연금저축을 포괄하는 연금계좌를 통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개인형IRP 중심으로 살펴본다. 개인형IRP를 통한 연금인출방식은 크게 신탁연금과 보험(또는 보장형)연금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신탁연금계약에 기반하며 후자는 보험연금계약에 기반한다.³⁾ 신탁연금은 적립단계와 유사하게 가입자가 자신의 IRP계좌 내에서 자산을 직접 운용지시하면서 필요한 연금소득을 인출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보험연금은 연금개시를 하면 연금전환 특약으로 전환하여 적립금을 보험회사로 이전시킨 후 약정된 방식에 따라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즉, 신탁연금은 가입자의 통제 하에 적립금을 보유하고 직접 운용 지시하며 이에 따른 리스크도 자신이 부담하는데 비해 보험연금은 보험회사로 적립금을 이전시키고 투자리스크, 장수리스크, 수익률 순서리스크도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사업자 기준으로 보면 신탁연금은 주로 은행/증권사에서 취급하는 방식으로 개인형IRP 운영 중에 연금개시 신청을 하면 기존 운용 중인 상품의 변경 없이 연금소득을 분할 지급한다. 계좌 내에 다양한 신탁상품으로 운용하면서 소득을 인출하게 된다. 보험연금은 개인형IRP 주계약인 퇴직연금보험의 연금전환특약을 활용하여 해지환급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료(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연금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이다. 개인형IRP 계좌 내에서 특약인 연금전환을 신청하면 운용관리계약은 종료되며 연금보험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사업비 부과방식도 상이하다. 신탁연금은 인출단계에서도 적립단계와 동일하게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및 펀드보수를 부과할 수 있는데 비해 보험연금은 연금수급이 이루어지면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없이 수령하는 연금연액에 대해 계약관리비용(보험회사 별 0.4%~2%)만 부과한다.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2023년 개인형IRP의 사업자별 총비용부담률은 0.11%~0.97% 수준이나 상세 내역(적립국면/인출국면, 운용관리/자산관리/펀드비용, 대면/비대면, 신탁연금/보험연금)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3) 신탁계약연금/보험계약연금 또는 신탁연금/보험연금(보장형연금)이라는 용어는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학술용어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기에 업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차용함

대체적으로 인출국면의 비대면 가입자에 대해 더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며 일부 사업자는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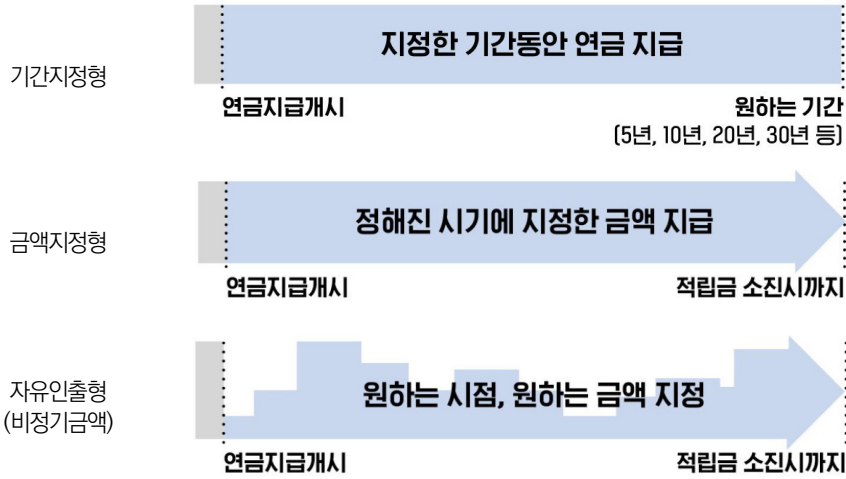
〈표 II-3〉 우리나라 신탁연금과 보험연금 특징 비교

구분	신탁연금	보험연금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RP 내 운용 중인 상품에서 인출해 연금소득으로 지급(흔히 은행/증권사 방식으로 불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IRP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연금전환 특약으로 전환하여 연금소득으로 지급(흔히 보험사 방식으로 불림)
지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간지정형, 정액형, 자유인출형, 혼합(기간/정액+수시인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명보험계약: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상속연금형 등 손해보험계약: 확정기간연금형
자산운용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입자가 직접 운용 지시 원리금보장형(예금 등)과 원리금비보장형(펀드 등) 운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사가 금리연동형으로 운용^{주)} 최저보증이율(예: 1%) 적용(원리금보장형)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립금 대비 운용관리수수료, 자산 관리수수료, 펀드보수 등 적립단계와 동일한 방식으로 부과(비대면 개설 시 다수 사업자가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수령액에 대해 수수료 부과 적립단계와 달리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미부과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수령하면서 적립금을 계속 운용 가능 다양한 방식(예: 정액+수시인출) 조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인 연금수령 가능 투자리스크, 장수리스크, 수익률순서리스크 등을 보험사로 전가 가능

주: 2023년 11월 보증형 실적배당형상품 허용되었으나, 2024년 기준 출시된 상품 없음
 자료: 저자가 작성함

〈그림 II-1〉은 신탁연금의 지급방식을 기간지정형, 금액지정형, 자유인출형(비정기금액 지정형 또는 수시인출형으로도 불림)으로 구분한 것이다. 기간지정형은 가입자가 지정한 기간(예: 5년, 10년, 20년, 30년 등) 동안 연금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총 지급기간만을 설정하는 유형으로 매회 지급액(지급시점의 적립금 평가액/잔여회차)이 변동된다. 금액지정형은 가입자가 지정한 금액(예: 월 50만 원, 100만 원 등)을 적립금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액은 세전/세후 기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운용수익에 따라 예상 지급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다. 자유인출형은 가입자가 원하는 시점과 원하는 금액을 지정하여 적립금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림 II-1〉 신탁연금 지급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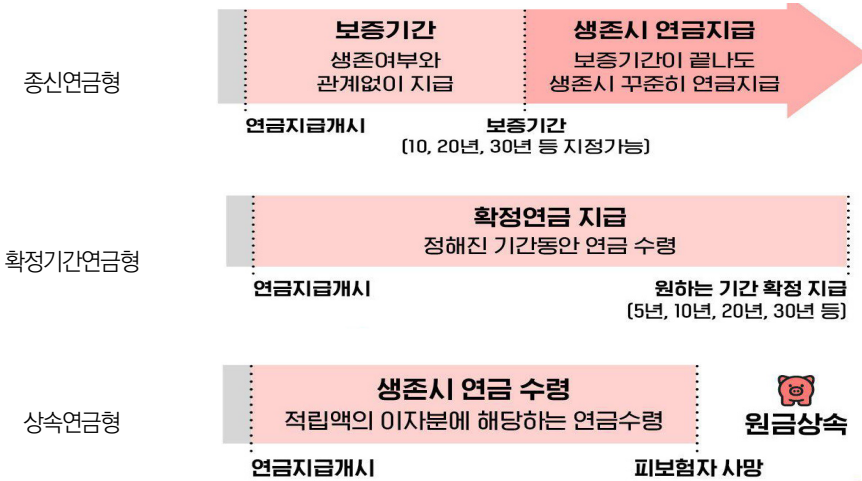


자료: A생명보험회사 개인형IRP 안내자료를 재구성함

〈그림 II-2〉는 보험연금의 지급방식을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상속연금형으로 구분한 것이다.⁴⁾ 종신연금형은 생존 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정 기간(예: 10년, 20년, 30년 등) 지급보증기간을 설정하여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소득을 지급한다. 만약 지급보증기간 내에 사망하면 남은 보증기간에 대한 잔여 연금액을 지급하지만, 중도해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확정기간연금형은 사전에 정해진 기간(예: 5년, 10년, 20년, 30년 등) 동안 생사와 무관하게 연금액을 지급한다. 상속연금형은 가입자(피보험자) 생존 시에는 적립금(원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으로 지급하고, 가입자(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원금을 피상속인에게 상속하는 방식이다.

4)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보험연금방식은 확정기간연금형(연금 지급기간 최대 25년)으로 국한됨

〈그림 II-2〉 보험연금 지급방식



자료: A생명보험회사 개인형IRP 안내자료를 재구성함

2) 운용상품

신탁연금은 적립단계와 마찬가지로 원리금보장형상품과 원리금비보장형(실적배당형)상품으로 운용된다. 원리금보장형상품으로는 은행/저축은행 예금, 보험사 이율보증형보험 (Guaranteed Insurance Contract; GIC), 증권사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quity-Linked Bond; ELB) 등이 제공되고, 원리금비보장형은 주로 공모펀드가 제공된다. 다만, 주력상품은 상이한데 적립단계는 투자위험을 감내하고 자산 증식에 초점을 두는데 비해 인출단계는 안정적인 소득흐름에 방점을 두기 때문이다. 인출국면의 신탁연금에서 주로 활용하는 상품은 월지급식 채권형 펀드, 월배당 ETF, 이자·배당소득 중심인 채권/리츠/부동산 펀드 등이다. 최근에는 인출국면에 적합한 상품으로 설계된 목표소득펀드(Target Income Fund; TIF)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표 II-4〉 신탁연금 운용상품 유형 사례

구분	원리금보장형	원리금비보장형(실적배당형)
적립단계	예금, ELB, GIC 등	TDF, 펀드(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 실적배당형보험 등
인출단계	예금, ELB, GIC 등	TIF, 월지급식 채권형 펀드, 월배당 ETF, 리츠, 부동산 펀드 등

자료: 저자가 작성함

인출국면의 보험연금은 연금전환 선택 당시 판매 중인 특약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종신연금형 가입연령의 경우에도 연금개시 시점의 나이가 적용된다. 급여 지급 유형으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연계형, 체증형, 체감형 등으로 설계 가능하다. 현재 연금전환 특약은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운용되면서 연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저보증이율(예: 연복리 1.0%)이 존재한다. 이는 일정 기간 후 금리가 변동하는 확정금리형이며, 약정 만기까지 금리가 변동하지 않는 고정금리형은 아니다.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용이율은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를 반영하여 기준이율을 산출하고, 기준이율에 장래 운용수익률과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결정된다. 적용이율은 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한다. 한편, 2023년 11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으로 연금급여 지급이 가능한 상품의 범주가 기존 금리연동형에서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으로 확대되었다.

〈표 II-5〉 보험연금 방식의 상품유형 사례

구분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상속연금형
가입연령	만 55~80세	만 55세 이상	만 55~80세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사망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5~50년	연금지급개시~사망
지급사유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매년 연금지급해당일에 가입자가 살아 있을 때(사망한 경우에도 보증 지급기간 10/20/30년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에 가입자가 살아 있는 경우 보험기간의 매년 연금지급 해당일에 가입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매년 연금지급해당일에 가입자가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 시점 적립금에 대해 사망률 및 특약의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지급개시 시점 적립금 기준으로 특약의 이율을 적용하여 부담금 및 적립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지급개시 시점 적립금 기준으로 특약의 적용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 사업비를 차감해 계산한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해당일에 지급 (피보험자 사망 시는 사망시점 책임준비금을 지급)

주: * 연금연액은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수수료(계약관리비용)를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A생명보험회사 상품 설명서

3) 신탁연금과 보험연금 규정

2023년 말 기준 연금개시 실적이 있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출옵션 유형은 해당 사업자가 속한 금융업권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은행과 증권사는 대부분 신탁연금만을 제공하며, 신탁업을 영위하지 않는 보험사의 경우 보험연금만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의 업무영역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됨에 따라 생존위험과 관련되는 종신연금형과 상속연금형은 생명보험회사만 취급할 수 있다.

신탁업과 보험업 인가를 모두 받은 일부 보험사 중 극히 일부만 실제 신탁연금과 보험연금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 가입자는 둘 중 한 개를 선택하거나, 두 개를 혼합(예: 신탁연금 1억 원+보험연금 0.5억 원, 60~79세 신탁연금수령+80세 이후 종신연금수령 등)할 수 있다. 이런 혼합설계는 명시적인 규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기반한다. 근로복지과-3324(2012. 10. 2)에서는 IRP 적립금 수령방식에 대해 '55세 이상인 가입자는 연금(이 경우 연금 지급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함)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급여 수령방법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에, 일부 보험사는 보험연금과 신탁연금을 동시에 수령(보험연금+신탁연금)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가입자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노후소득의 안정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신탁연금과 보험연금(특히 종신연금형)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한국의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사업자가 속한 업권별 규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상품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탁계약 내에 종신연금을 편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신탁계약에 의한 퇴직연금 운용 시 종신형 연금보험 편입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편입 곤란하다고 회신하였다.⁵⁾ 구체적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이자와 생존확률(가입자 개개인의 사망률과 정보를 분석)을 반영하여 피보험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연금개시 후에 해지가 불가능하고, 생존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일부·전부·초과 지급이 가능한 상품이다. 퇴직연금감독

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함(신탁계약에 의한 퇴직연금 운용 시 종신형 연금보험 편입 가능 여부 등, 2016. 8. 9 회신)

규정 제8조의3 운용방법으로서의 보험계약은 납입보험료의 전액(부가보험료 제외)이 적립금의 반환에 충당하기 위해 적립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종신형 연금보험이 이런 조건을 충족하여 취급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상위법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적립금이 반환되는 것'은 적립한 금액의 '전부'가 반환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생존기간에 따라 적립금 전액의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적립금이 반환되는 것'이라는 내용을 전제로 하는 퇴직연금 신탁계약의 운용방법으로 편입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법령해석으로 인해 적립단계와 인출단계 모두 생명보험회사만 종신연금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출옵션으로서 일시납 종신연금상품 역시 생명보험회사만 취급 가능하다.

4) 연금계좌 이체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에서는 연금계좌 이체제도를 허용한다. 이는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인출로 보지 않아 기타소득세 부과 없이 연금 가입기간을 존속시키는 제도이다. 가능한 방식은 연금저축계좌(신탁, 보험, 펀드) 상호 간, 연금저축계좌(신탁, 보험, 펀드)와 개인형IRP 간, 개인형IRP 상호 간 이체이다. 적립기간이 5년 경과되고, 만 55세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적립금 전액에 대해 연금저축계좌 → 개인형IRP 및 개인형IRP → 연금저축계좌⁶⁾ 양방향 모두 이체 가능하다.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가입일, 연금개시일, 연금수령연차, 연금수령한도 등 연금수령 조건은 이체받은 계좌 기준으로 설정된다. 가입자는 신규 가입 금융회사(이체 받을 계좌의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계좌이체는 제한된다.

- 연금수령 중인 계좌는 연금수령 전인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는 불가능
- 종신연금을 수령중인 계좌는 상품특성상 계좌이체가 불가능
-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의 계좌이체는 불가능

6) 연금저축은 개인형IRP에 비해 운용 제한(적립금 전부를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으로 운용 가능)이 적고, 가입자 필요시 담보 대출 가능한 장점이 있음

-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는 이체 불가능
- 계좌 내 일부 금액을 타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제한

5)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⁷⁾

정부는 2024년 10월 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기존에는 퇴직연금계좌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의 해지(현금화)에 따른 비용(중도해지 금리 등),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기회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동일한 제도 내(DB↔DB, DC↔DC, IRP↔IRP)에서 신탁 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이율보증형보험, 파생결합사채 등), 공모펀드, ETF 등의 상품은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사전지정운용상품, 자산관리 형태가 보험계약인 상품(금리연동형 보험), 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한 언변들형 계약은 실물이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입자가 운용하는 상품 중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실물이전 대상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할 수 있지만,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기존과 같이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해야 한다. 비록 실물이전 서비스가 퇴직연금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시키는 데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인출방식 현황

1) 만 55세 이상 연금수급 개시 계좌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은 만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만 55세 이후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은 미흡한 수준이나, 2017년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다. 계좌 수 기준 연금수령 비율은 2017년 1.9%(4,679좌)에서 2023년 10.4%(55,124좌)로 증가하였으며, 적립금액 기준 연금수령 비율은 2017년 21.6%(1조 756억 원)에서 2023년 49.7%(7조 7,040억 원)로 증가하였다. 2022년과 2023년 연금수령을 선택한 계좌 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각각 91.7%, 69.3%에 달하며, 적립금액 기준 증가율 역시 58.1%, 52.1%에 달한다.

7)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10. 10), “퇴직연금 실물이전서비스 개시”

〈표 II-6〉 퇴직연금 적립금 인출방식(만 55세 이후 연금개시 계좌)

(단위: 좌, 억 원, %)

구분	계좌 수				적립금액			
	연금		일시금		연금		일시금	
		비중		비중		비중		비중
2017	4,679	1.9	236,783	98.1	10,756	21.6	39,039	78.4
2018	6,145	2.1	290,227	97.9	12,643	21.4	46,359	78.6
2020	12,404	3.3	361,953	96.7	23,565	28.4	59,483	71.6
2021	16,984	4.3	380,286	95.7	32,028	34.3	61,398	65.7
2022	32,566	7.1	424,902	92.9	50,639	32.4	104,474	67.4
2023	55,124	10.4	474,540	89.6	77,040	49.7	78,063	50.3

주: 2019년은 발표 자료 없음

자료: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각 연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또한, 연금방식을 선택한 계좌당 평균 적립금액 규모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이를 보인다. 연금수령계좌의 평균 적립금 규모는 2017년 2억 3천만 원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낮아져 2023년에는 1억 4천만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일시금 대비 연금방식을 선택하는 계좌의 적립금 배수 역시 동 기간 13.9배에서 8.5배로 하락하였다.

퇴직급여를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주된 이유는 퇴직소득세 감면 정책과 관련된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나, 연금계좌(개인형IRP/연금저축)로 이체한 후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면 과세액의 3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기 때문이다. 퇴직소득세율은 근속연수가 짧고 퇴직급여 규모가 클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이들 계층에서 연금방식 선택 시 절세효과가 커진다. 또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해서 금융상품에 예치하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15.4%, 지방소득세 포함)하지만, 연금계좌로 이체 후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면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 지방소득세 포함)로 과세한다. 따라서 퇴직급여 규모가 커서 운용수익으로 인한 이자·배당소득세 부담이 클 경우에도 연금방식을 선택하면 절세효과가 커진다.⁸⁾

8) 현재 연금계좌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도 연금수령 방식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연금계좌 외 일반 금융상품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초과 시 전체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함)

〈표 II-7〉 연금과 일시금 선택 계좌당 적립금 규모(만 55세 이후 연금개시 계좌)

(단위: 좌, 억 원, %)

구분	연금(A)	일시금(B)	배수(A/B)
2017	2.30	0.16487	13.9
2018	2.06	0.15973	12.9
2020	1.90	0.16434	11.6
2021	1.89	0.16145	11.7
2022	1.55	0.24590	6.25
2023	1.40	0.16450	8.50

주: 2019년은 발표 자료 없음

자료: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보도자료(각 연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2) 만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통계청은 2023년 포괄적 연금통계를 개발·발표하였다.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11종의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계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의 연금 수급 여부와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만 65세 이상 내국인(904.6만 명) 중 연금 수급자는 818.2만 명으로 수급률은 90.4% 수준이고 이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65만 원 정도이다. 가구 기준으로 보면 만 65세 이상 인구가 포함된 647.8만 가구 중 619.0만 가구(수급률 95.6%)가 월평균 83만 8천 원의 연금을 수령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연금소득을 수령한 자는 2016년 1천 명에서 2021년 9천 명으로 증대되었다. 〈표 II-6〉 계좌 기준 연금수령자 수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기준 연령의 차이(만 55세 vs. 만 65세), 집계 방식의 차이(계좌 vs. 수령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II-8〉 만 65세 이상 연금 종류별 수급자 수(2016~2022)

(단위: 천 명)

구분	수급자 수	연금제도						
		기초 (장애인)	국민	지역	퇴직	개인	주택	농지
2016	5,897	4,588	2,526	339	1	120	32	5
2017	6,236	4,828	2,779	368	1	149	41	6
2018	6,536	5,065	3,009	394	2	184	49	7
2019	6,885	5,300	3,282	424	3	224	57	8
2020	7,335	5,599	3,626	461	5	274	65	10
2021	7,768	5,932	3,969	495	9	325	71	11
2022	8,182	6,168	4,353	530	16	381	78	11

주: 1) 수급자 수 전체는 중복수급이 포함되어 있음

2)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대부분 확정기간형 연금(수령기간이 10년 이내)이어서 종신연금 형태인 지역연금과 차이가 있음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3. 10. 26), “2016~2021년 「연금통계」 개발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2024. 8. 14), “2022년 연금통계 결과”

〈표 II-9〉는 2022년 기준 만 65세 이상자의 연금 종류별 수급 현황이다.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월평균 수급액은 1,583천 원에 달한다. 그러나 평균값과 달리 중위값은 417천 원에 불과하여 수급자 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수령금액별 구성비를 보더라도 월 25만 원 미만이 38.6%로 가장 높고, 50~100만 원이 21.4% 수준이다. 반면, 200만 원 이상은 12.1%에 불과하다. 퇴직연금 수급액의 분포가 매우 넓은 것은 퇴직연금제도가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정되기에 업종 및 고용형태,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급여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표 II-9〉 만 65세 이상 연금 종류별 수급 현황(2022)

(단위: 천 명, 천 원, %)

구분	수급자 수	연금제도							
		기초 (장애인)	국민	지역	퇴직	개인	주택	농지	
수급자 수	8,182	6,168	4,353	530	16	381	78	11	
수급금액	월평균	650	279	413	2,523	1,583	837	1,216	1,306
	중위수	419	308	314	2,514	417	282	981	1,110
구 성 비	25만 원 미만	19.9	42.8	35.6	0.2	38.6	45.2	3.1	8.8
	25~50만 원	40.4	56.4	39.1	0.1	16.1	25.6	12.8	11.6
	50~100만 원	27.5	0.9	19.1	2.4	21.4	18.0	35.1	24.8
	100~200만 원	6.9	0.0	6.2	29.6	11.8	6.5	32.7	31.2
	200만 원 이상	5.4	0.0	0.1	67.6	12.1	4.7	16.2	23.6

주: 수급자 수 전체는 중복수급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4. 8. 24), "2022년 연금통계 결과"

3. 인출 인프라

가. 연금전환 프로세스

현재 연금전환 관련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자체적인 내규를 정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상 퇴직연금사업자는 개인형IRP 가입자에 대해 법령상 연금수령 가능한 만 55세 도달 시 연금개시 가능성을 통보한다. 일부 사업자는 적립금 일정 규모(예: 5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안내하는데, 이는 연금전환에 따른 운영관리비용을 감안한 조치로 이해된다. 고객에 대한 통보는 연금수령 가능 시기가 도래함을 사전에 알리는 것으로 예를 들면, 연금개시 가능일 30일(1차), 15일(2차) 전에 이메일이나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로 이루어진다.

〈표 II-10〉 연금전환 통보 대상 사례

[퇴직금, 퇴직금+가입자부담금] 있을 때	[가입자부담금]만 있을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55세 도래 일정 적립금 규모(예: 500만 원 이상)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55세 도래 일정 적립금 규모(예: 500만 원 이상) 초과 가입일^(*)(2020. 1. 1)로부터 5년 경과

주: IRP 가입일은 계좌개설 후 최초 입금일을 의미함(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자료: 특정 퇴직연금사업자 자료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통보 이후 절차는 사업자별로 상이한데 가입자가 원하면 연금수령 관련 대면/비대면컨설팅을 지원한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일시금과 연금방식 간 세제 차이, 지급주기/지급일자/지급기간 등 연금지급 유형별 특징과 세제 차이 등이다. 선택한 유형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며 가입자가 컨설팅 및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하고 연금개시 신청을 확정하면, 신청한 방식에 따라 연금급여가 지급된다.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을 기점으로 비대면 연금전환 시스템도 고도화되어 대부분의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연금전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연금전환 관련 영상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일부 대형 사업자는 모바일 앱에 연금전환 시뮬레이션 기능을 탑재하여 본인이 다양한 지급옵션을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연금수령 개시 후 정보제공

연금수령이 개시되면 퇴직연금사업자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를 통해 수시로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연금수령금액 안내 시에는 수령금액, 납부한 세금, 잔여 적립금, 종합과세 여부 등이 포함된다. 소득세법 상 연간 연금수령한도 초과 시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세율이 과세됨을 안내하고, 연금으로 퇴직금을 모두 수령한 경우 장래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율이 과세됨을 통지한다. 또한, 연간 연금수령 누적금액이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2024년 기준: 1천 5백만 원)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와 기타소득세(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연금수령자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제공은 적립단계와 동일하게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보고서'라는 양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에 의거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주요 내용은 적립금 및 자산현황, 상품운용 현황(원리금보장형/실적매당형 구분), 수익률,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는데, 금융감독원은 2018년 12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표준 서식을 공표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금융권역 별, 금융상품별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항목을 추가하는 등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업자는 표준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표 II-11〉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보고서 표준 서식

구분	내용
한눈에 보는 나의 퇴직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약표: 전기말·당기말 적립금, 기중 납입액 및 차감액, 누적수익률 및 연환산수익률 요약표 • 그래프: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추이, 상품별 적립금 비중 및 부담금 투자비율 현황
자산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금 납입: 사용자(회사) 납입액 및 가입자 납입액 세부내역 • 적립금 차감: 수수료(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 및 중도인출 등 적립금 차감 세부내역 • 상품별 운용현황: 상품별 적립금 및 비중, 누적 평가손익
수익률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률: 사업자 비교공시 수익률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한 가입자별 수익률(누적, 연환산, 최근 1년) • 상품별 수익률: 나의 투자 수익률(누적, 연환산, 최근 1년), 상품 자체 수익률 및 참고지수 수익률(설정일 이후, 최근 1년)
수수료 등 비용 상세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수수료: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 산정기준 및 산정내역 • 상품비용: 펀드 별 총보수·비용 비율(TER^㉞), 총보수·비용부담액 및 가입금액 백만 원당 부담액

주: 총비용부담률=(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펀드총비용 등)/연도 말 적립금 총액×100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 12. 13), “퇴직연금 「상품제안서」 및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 마련”

한편, 금융감독원은 2021년부터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보고서의 맨 마지막에 기타사항을 추가하여 ‘예상 연금수령액’과 ‘계좌이체 제도 안내’을 포함시켰다. 예상 연금수령액은 직전 3년간 월평균 납입액을 고객이 지정한 기간 동안 납입하고 예상수익률이 향후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고객이 신청한 연금수령 개시 예정일로부터 2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하고 산출된 금액이다.

최근 일부 대형 사업자는 인출단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금수령 현황보고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회사별로 구체적인 양식과 포함된 내용은 상이하지만 주요 항목은 연금 전환 조건, 연간 운용현황(연금수령액/운용수익/당기말 평균금액 등), 연금전환 이후 누적 운용현황 등이다. 특정 사업자는 향후 수익률 변화에 따른 연금수령액, 수령기간, 총연금수령액(세전/세후)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다. 통합연금포털 공시

1) 정보제공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국민 스스로 노후준비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안정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다. 개인이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내 연금조회'를 선택하고 로그인을 하면 [연금계약정보] 탭과 [예시 연금액] 탭이 생성된다. [연금계약정보]에는 본인 이 지금까지 납부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퇴직연금(DB, DC/IRP), 개인연금(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주택연금의 납입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예시 연금액]에서는 지금까지 납부한 각각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개시 예정일에 수령할 수 있는 연간 연금액을 예시한다. 연금개시연령은 공적연금은 법에서 정한 수급개시연령이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만 60세를 가정한 것으로 실제 개시예정일과는 다를 수 있다.

'노후재무설계' 메뉴를 선택하면 노후 필요 자금을 진단할 수 있다. 성/현재 연령/예상은 퇴연령/월 생활비 필요액을 기준으로 노후 필요자금을 계산하고, 이미 가입한 연금상품의 예상 연금액의 현재가치와 비교하여 노후필요자금 여유금액(노후 필요자금 - 이미 가입한 연금상품 예상 연금액의 현재가치)을 산정하게 된다. 진단을 통해 노후필요자금이 부족한 경우 연금저축상품과 퇴직연금상품을 추가 가입할 수 있도록 각각에 대한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퇴직연금 상품조회]를 클릭하면 '개인형IRP 계좌안내'로 연계된다. 이 항목은 [가입], [이체], [해지], [연금수령신청] 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금수령신청 탭에서는 연금수령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연금수령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금융권역 및 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회사별 콜센터 전화번호를 수록하고, 퇴직연금 홈페이지로 연계하였다.

'전문가상담' 메뉴를 선택하면 금융자문서비스로 연결된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서민들의 안정적 금융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전문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1대1 맞춤형 서비스로, 빚을 지고 있는 서민의 부채관리, 소득과 지출관리, 은퇴·노후준비 등 재무상담을 제공한다. 상담방식은 대면(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내 상담부스), 전화, 온라인 방식이며 업무시간은 9:00~17:00이다. 노후소득 관련 주제에서는 은퇴 후 연금수령 계획 및 유의사항, 연금제도(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의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2) 퇴직연금사업자 간 비교공시

퇴직연금사업자 간 비교공시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상품(연금저축 비교공시/퇴직연금 비교공시/원리금보장 연금상품/사전지정운용방법) 비교공시 중 일부로 공시되고 있다. 퇴직연금 비교공시 내용은 수익률과 총비용부담률(퇴직연금사업자별 수익률과 부담 비용을 비교), 맞춤형 수수료 비교, 원리금보장상품 제공현황으로 구성된다. 맞춤형 수수료 비교는 제도 유형을 7가지(DB/DC/기업형 IRP/개인형IRP(가입자 부담분)/개인형 IRP(사용자 부담분)/표준형 DC/연금전환특약)로 구분하여 계약기간(1년 미만/3년/5년/7년/10년/10년 초과)에 대해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할인정보 등을 제공한다.

〈표 II-12〉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 내용

구분	설명	항목
수익률	퇴직연금사업자의 제도별/원리금보장 여부별 수익률	사업자, 제도별(DB, DC, IRP), 원리금 보장 여부별 적립금, 수익률, 장기수익률(3, 5, 7, 10년)
총비용 부담률	퇴직연금사업자의 제도별 총비용 부담률 및 수수료 정보	사업자, 제도별(DB, DC, IRP) 총비용 부담률, 총 수수료,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펀드 총비용
맞춤형 수수료 비교	적립금액에 따른 퇴직연금 수수료 정보를 제도유형, 계약 기간에 따라 조회 가능	사업자, 제도별(DB/DC/기업형 IRP/개인형IRP(가입자 부담분)/개인형IRP(사용자 부담분)/표준형 DC/연금전환특약) 수수료율(운용관리, 자산관리), 연간 수수료(운용관리, 자산관리), 기타 할인 정보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현황	원리금보장상품의 사업자별 상품 제공 금액과 실적, 금리, 잔여 한도 등의 제공 현황	사업자, 특정사업자 제공 한도, 금리, 상품 제공금액, 판매사업자별 상품제공 실적 및 잔여 한도
원리금보장 상품	퇴직연금사업자가 취급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정보	상품명, 제공기관, 만기, 약정금리, 제도 구분

자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현행 통합연금포털의 수익률, 총비용 부담률, 수수료 비교공시는 전체 퇴직연금사업자가 공시하고 있지만, 운용국면과 인출국면 정보가 구분되지 않는다. 퇴직연금사업자 중 일부는 비대면 개설 시 인출국면에 대해서도 적립국면과 동일하게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현행 공시 방식으로는 이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서 파악하기는 어렵다.

라. 퇴직급여 연금수령 시 가격 정보

퇴직급여의 인출전략을 모색할 때 퇴직일시금 대비 수령 가능한 연금소득 규모 즉 연금지급률이 중요한 정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기준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감독/정책당국은 이런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종신연금을 제공하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생명보험협회 상품공시 사이트에 일시납 5천만 원을 납부하고 즉시 연금수령 시 유지기간(1/3/5/10/20년) 별 적립금액,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수준을 공시하고 있을 뿐 월/연간 수령 가능한 금액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일시납 5천만 원 납부 후 즉시 연금수령하는 연금보험상품의 공시이율 수준은 2.60~2.72%에 불과하여 시중금리(기준금리: 3.50%) 대비 가격경쟁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II-13〉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상품공시 내용

구분	최저보증이율	공시이율
A사	5년 이내: 0.9%, 5년 초과: 0.7%	2.68%
B사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5%	2.71%
C사	5년 미만: 1.25%,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0년 이상: 0.5%	2.72%
D사	10년 이내: 1.0%, 10년 초과: 0.5%	2.60%

자료: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홈페이지 내용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https://pub.insure.or.kr/>)

김현중·이동화(2024) 연구에서도 현재 국내 시장에서 판매 중인 종신연금 상품은 일반 소비자에게 매력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Lee-Carter 모형을 추정된 사망률을 활용하여 수익비(Money's Worth Ratio)를 분석하였다. 수익비는 계약자가 사망 시점까지 수령하는 연금급여의 현재가치를 납입한 일시납 보험료로 나누어 측정한다. 추정 결과 남성과 여성의 55세(10년 보증) 수익비는 0.678~0.684 수준이며, 70세(30년 보증) 수익비도

0.761~0.754 수준이다. 통계청의 2019년 사망률 데이터를 사용하더라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계약자는 납부한 보험료의 24.6~32.2%를 연금 급여가 아닌 여타 부대 비용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기대할 수 있는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하회하는 것이다. 종신연금의 가격 매력도가 낮은 이유는 시장금리 대비 낮은 공시이율, 사업비 및 여타 부대비용(자본비용, 예금보험료, 각종 분담금, 교육세 등), 역선택으로 인한 비용 등에 기인한다.

〈표 II-14〉 일시납 즉시형 종신연금 수익비 추정 결과(Lee-Carter 모형)

성별	연령	보증기간		
		10년	20년	30년
남성	55세	0.678	0.687	0.700
	60세	0.678	0.695	0.718
	65세	0.675	0.708	0.741
	70세	0.671	0.732	0.761
여성	55세	0.684	0.687	0.694
	60세	0.685	0.693	0.709
	65세	0.683	0.702	0.731
	70세	0.681	0.722	0.754

자료: 김현중·이동화(2024)

4. 문제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출국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제도 및 인프라는 미흡한 상황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현행 근퇴법상 인출 관련 조항은 급여 종류로 연금 또는 일시금만 규정되어 있으며 노후소득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연금수령 요건에 대한 내용은 적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사업자의 업권에 따라 인출 방식과 가용 상품이 결정되어 금액/기간지정 연금 방식(신탁연금방식)은 은행, 증권사와 일부 신탁업 인가를 받은 보험사가 제공하고, 보험

연금방식은 보험사(종신형은 생명보험사만 가능)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장수리스크관리에 적합한 종신연금상품은 사업자를 생명보험회사로 선택할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종신연금수령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퇴직적립금을 활용하여 종신연금을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인출국면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연금전환 프로세스(적립기 → 이행기 → 인출기)와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인출 실적, 상품별 성과 등)도 미흡하여 가입자는 은퇴에 임박하여 제한된 정보 하에 인출방식과 상품을 선택한다. 이는 연금전환에 대한 의사결정 시 정보의 제시 방식에 따라 연금 선택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를 감안할 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후기 고령기에는 재량 운용보다는 안정적인 연금소득이 더 바람직함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가입자의 기대 수준에 비해 인출국면에 적합한 상품 경쟁력도 높지 않아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리하면 가입자가 자신의 니즈에 부합하게 다양한 인출방식과 관련 상품을 조합하여 노후소득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III장에서는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미국

가. 인출 관련 제도

1) 장수리스크관리 유인 강화

(1) 적격장수연금계약(QLACs) 도입

미국 정부는 확정급여형(DB)제도와 달리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에 대해서는 퇴직적립금을 소득흐름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guidance)을 거의 제공하지 않았다(Munnell et al. 2021). 은퇴자 스스로 매년 인출할 금액을 결정해야 하는데, 너무 빨리 인출하면 적립금이 조기에 소진되거나 너무 보수적으로 인출하면 너무 적게 소비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은퇴 이후에도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적립금을 사용하여 즉시연금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는 역선택으로 인한 높은 비용, 공적연금 보유, 배우자의 자가 보험 역할, 유동성 선호 등으로 설명된다. 미국은 학계 및 정책당국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제도 내에 중신연금급여를 편입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오랜 논의 끝에 2014년 적격장수연금계약(Qualified Longevity Annuity Contracts: QLACs)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Deloitte 2016).

미국 정부는 장수리스크 관리 수단 중 하나로 고정중신연금(fixed lifetime-income annuity) 활용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적격 퇴직적립금 계좌를 통해 일정 기간 연금수령을 이연(거치)시키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U.S. IRS 2014).⁹⁾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9) QLAC 조건으로 변액연금 또는 주가지수연계연금 등 연금급여가 투자실적이나 시장지수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QLAC의 목적이 예측 가능한 평생소득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확정 방식으로 금액을 보정한 계약만 적합하다고 봄

평균수명을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개인에 대한 수명 예측은 불가능하기에 은퇴자가 평균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전략 수립 시 보유 자산보다 오래 생존할 가능성은 50%에 달한다. 연금제도가 장수리스크를 위험집단으로 결합함으로써 은퇴자가 사망할 시점까지 보장된 소득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은퇴 시점 이후 즉시 수령하는 즉시연금은 생존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낮은 기간(예: 60~75세) 동안 생존보장에 대한 대가로 높은 기회비용 즉, 유연성과 유동성 제약을 요구한다. 이런 측면에서 생존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고령기(80세, 85세)부터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거치형은 비용효율성이 높아 은퇴 직후 유동성 욕구가 높은 사람에게 적합하다. 예를 들면, 65세 남성이 월 \$1,000 수령하는데 필요한 보험료 규모는 일시납즉시연금형은 \$191,000인데 비해 거치형은 80세 개시 시 \$60,000이고, 85세로 개시 시점을 늦추면 \$36,000으로 낮아진다. 이는 즉시형 보험료 대비 각각 31%, 19% 수준에 불과하다. 지급개시 전 사망으로 인한 손해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기납입 보험료 환급 옵션을 제공하거나 더 이른 연령(70세, 75세)에 지급을 개시할 수도 있다(American Academy of Actuaries 2022).

(2) 평생소득 강화 정책

미국 정부는 DC 및 IRA와 같은 퇴직연금제도에 종신연금(세제혜택을 부여한 적격 종신 연금이나 QLACs)을 포함시키도록 장려했다. 2022년 12월 시행된 은퇴강화법(Settling Every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Act 2.0, 이하 'SECURE 2.0'이라 함)은 SECURE Act를 기반으로 92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핵심사항은 퇴직연금 계좌와 근로자가 은퇴를 대비해 저축하는 방식을 대폭 변경하였다는 것이다(자본시장연구원 2020a).¹⁰⁾ 인출국면 관련 주요 내용은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한 평생소득금액 예시(Lifetime Income Illustration) 의무화, 종신연금보험 편입 유인 확대, 수탁자책임 면제(safe harbor) 등이다.

미국 노동부는 2010년부터 준비해서 2019년 법안 통과 후, 2022년 1분기부터 DC 가입자들이 수령하는 운용보고서에 평생소득금액을 예시하도록 하였다.¹¹⁾ 정부에서 제공한 작성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국 상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11) 미국 DB제도는 일시금 수령이 일반적인 DC/IRA와 달리 종신연금수령이 디폴트 인출옵션으로 활용되고 있어 정부의 평생소득금액 예시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적립금 규모: 운용보고서 작성 기준일의 적립금을 평생소득으로 전환하여 표시(적립금에는 미상환 대출금 포함)
- 평생소득 수령일자: 67세(사회보장제도 연계), 만약 가입자가 67세 이상일 경우에는 실제 연령 기준
- 예정사망률: 국세청에서 명시한 남녀 단일 사망률
- 예정이자율: 운용보고서 작성기간 마지막 달 첫 영업일 기준 10년만기국채금리
- 예상되는 평생소득금액: 1인과 2인 기준
 - 1인(본인)일 경우: 평생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금액 산정
 - 2인(본인+배우자)일 경우: 마지막 생존자까지 평생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금액 산정 (실제 결혼상태, 배우자 실제 연령과 관계없이 동갑 배우자를 가정하고, 마지막 생존자에 대해 100% 지급할 때 가능한 금액)
- 예상소득은 예시 목적일 뿐 보장되는 금액은 아님

DC제도 내에 연금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 지침을 따르거나, 실제 가입한 계약의 종신연금 예상액 중 하나를 선택해서 표기할 수 있다. 다만, DC제도에서 가입한 연금보험 계약 조건을 따르더라도 평생소득금액은 1인과 2인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런 정보 제공을 통해 가입자로 하여금 저축과 지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일시금 수령이 기본 값(default)이 아니라 연금수령이 기본방식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미국 정부는 퇴직연금제도 내에 종신연금보험이 편입될 수 있도록 QLAC제도 확대 정책을 취하였다. QLACs는 일반적으로 IRA 또는 401(k)에 보유되어 있는 퇴직적립금으로 구매한 거치연금보험으로, 85세 또는 그 이전에 지급이 시작된다. 최초 도입 시 QLACs를 구입할 수 있는 보험료 한도는 \$145,000와 IRA적립금의 25% 중 작은 값¹²⁾이었다. 법 개정으로 2022년 12월 29일 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IRA적립금의 25% 한도 규정을 삭제하고 \$200,000로 상향 조정하였다. 아울러 연금지급 개시 연령 측면에서도 85세에 도달하면 연금지급을 개시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노후소득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12) Min(\$145,000, IRA적립금×25%)

미국의 경우 종신연금보험을 편입하는 것은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수탁자 책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투자상품과 달리 QLAC를 공급하는 보험회사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 면제 규정을 두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평생소득을 강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만 50세 이상 추가 납입 한도 상황

401(k), 403(b) 등 직장을 기반으로 한 퇴직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는 기본 한도와 만 50세 이상 은퇴 임박 근로자 대상 추가 납입(Catch-up) 한도로 구분된다. 기본 한도는 2022년 \$20,500에서 2023년 \$22,500, 2024년 \$23,000로 상향되었다. 추가 납입은 50세 이상 개인들이 은퇴 시점까지 몇 년 동안 더 많은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되었다.¹³⁾ 최초 도입 당시 한도금액은 \$1,000였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높아져 2022년에는 \$6,500가 되었고, 2023년부터 \$7,500로 확대되었다.

〈표 III-1〉 미국 401(k) 추가 납입(Catch Up) 한도 추이

구분	2022	2023	2024	2025
기본 한도	\$20,500	\$22,500	\$23,000	\$23,000
50세 이상 추가 한도	\$6,500	\$7,500	\$7,500	\$7,500
60~63세 특별 한도	NA	NA	NA	\$10,000

자료: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2025년부터는 60~63세를 대상으로 \$10,000의 특별 한도를 허용한다.¹⁴⁾ 이는 은퇴에 임박한 가입자에게 특별 한도를 부여함으로써 기존 한도(\$7,500)를 초과하여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다만, 2026년부터 401(k), 403(b) 등에 납부하는 고소득층은 세후 납부하는 Roth 계정에만 추가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 고용주로부터 \$145,000 이상 급여를 수령한 근로자가 해당된다.

13)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14) 특별 추가 납입 한도(\$10,000)는 2026년부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될 예정임

나. 시장 현황

1) 상품 유형

미국의 연금보험상품은 리스크와 수익 측면에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해왔다.

가) 금리고정형 연금

금리고정형(Fixed-Rate Deferred; FRD)은 최저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연금액은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금리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안전성과 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어 안전자산(예: 국채)의 매력도, 주식수익률, 금리스프레드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주력 판매채널은 은행창구이다.

나) 지수연계형 연금

지수연계형(Fixed Indexed Annuity; FIA)은 주가지수(S&P500)와 연계된 수익을 보장하는 지수형 연금상품으로 최저수익을 보장하면서 적립금 증대에 초점을 둔다. 생존보장급부(Guaranteed Living Benefits; GLB)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적립단계에서 적립금 증대에 주력할 경우 GLB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인출단계에서 안정적인 소득흐름이 필요할 경우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력 판매채널은 독립대리점이다.

다) 등록된 자산연계형연금

등록된 자산연계형연금(Registered Index-Linked Annuity; RILA)은 변액연금의 과도한 투자손실을 제어하되 성장가능성은 열어 두어 보장과 성장 간 균형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Registered'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록된 상품을 의미한다. 2010년 AXA Equitable Life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불확실한 경제 환경과 주가변동성 확대 여건 속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2014년 수입보험료 규모는 19억 달러로 변액연금 시장의 1.4%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에는 240억 달러를 기록하여 변액연금 시장의 25%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RILA는 적격 및 비적격 퇴직계좌 적립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구입할 수 있는 거치형 주식 연금 연금상품이다.¹⁵⁾ 큰 틀에서 보면 RILA는 변액연금의 일부로 분류할 수 있으나, 수익률의 하한을 두어 가입자의 투자리스크를 보험사가 보장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존재한다. 수익률의 하방 제한과 함께 상한 역시 일정 수준으로 제한된다.

라) 소득연금

소득연금(Income Annuity)은 은퇴소득 마련을 위한 인출국면 전용상품이다. 퇴직적립금을 일시금으로 납부하고 즉시연금을 수령(single premium immediate annuity; SPIA)하거나 일정 기간 거치(deferred income annuity; DIA) 후 평생보장된 소득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에 인출국면에 특화된 상품으로 볼 수 있다. 연금지급률(payout rates)은 납입 보험료 대비 연금액 비율로 가격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다. 금리가 하락하면 가격경쟁력이 낮아지므로 판매량은 축소된다.

마) 변액연금

주식시장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적인 변액연금(Variable Annuity; VA) 시장은 축소되었다. 보험사도 변액연금상품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상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 위해 RILA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인출단계에서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보장하는 종신소득보장인출(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 GLWB) 옵션 활용도가 가장 높다. GLWB 옵션을 선택하면 변액연금 계정의 적립금이 소진되더라도 평생 동안 일정금액의 소득을 계속 인출할 수 있지만, 보증수수료를 적립금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투자 수익을 잠식한다. 보수적인 은행 고객들은 GLWB 대신 투자손실의 하방을 제어하는 동시에 시장 성장 기회를 향유할 수 있는 RILA를 더 선호한다.

15) RILA는 DC제도의 적립국면 적격디폴트투자대안(Qualified Default Investment Alternatives; QDIA)으로 활용 가능함. Ellis et al.(2023)은 Target-Date RILA를 제안하였는데 특별계정으로 적격퇴직연금제도 내에 설정하고, 투자성과는 연말 S&P500 지수와 연계시키는 방식임

2) 판매 실적

가) 전체 수입보험료

미국은 2022년 이후 금리상승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해 확정연금 시장이 크게 성장하였다. <표 III-2>는 2022~2023년 미국 연금보험 유형별 수입보험료 규모를 정리한 것이다. 2023년 기준 수입보험료 규모는 전년 대비 23.2% 성장한 3,854억 달러이고, 이중 확정연금 비중은 74.4%에 달한다. 변액연금은 전년 대비 7.3%p 감소한 25.6%를 차지하였는데, 유형별로 보면 전통형 변액연금의 비중이 13.3%이고, RILA 비중은 12.3%이다. 2012년 이후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식 기반 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하락하고, 전통형 변액연금에 대한 선호도 하락하였다.¹⁶⁾ 소비자 선호도가 일정 수준의 하방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금리고정형(FRD), 지수연계형(FIA), 등록된 자산연계형(RILA) 상품으로 이동하였다. RILA는 투자수익률 하방보장과 시장상승기회 참여라는 조합을 통해 2023년 수입보험료 47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금리인상에 힘입어 확정연금으로 분류되는 소득연금 수입보험료 규모도 2022년 113억 달러(SPIA 92억 달러 + DIA 21억 달러)에서 2023년 175억 달러(SPIA 133억 달러 + DIA 42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전체 연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에서 4.6%로 높아졌다. 상품 유형별 전년 대비 성장률은 즉시형(SPIA)이 44.6%, 거치형(DIA)은 100.0%에 달한다. 한편, 적격장수연금(QLACs)은 DIA로 분류되는데 수입보험료 규모가 2022년 2.3억 달러에서 2023년 6.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이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연금 지급률 개선과 함께 SECURE 2.0 발효로 인해 QLACs 최대 구입금액이 \$125,000에서 \$200,000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QLACs가 전체 연금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6%에 불과하며 소득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대 수준이다.

16) 전통형 변액연금 수입보험료 규모는 2012년 \$147 billion에서 2023년 \$99 billion으로 32.7% 감소하였음(LIMRA 2024)

〈표 III-2〉 미국 연금보험 수입보험료(2022~2023)

(단위: \$ billion, %)

구분	유형	2022		2023	
		수입 보험료	비중	수입 보험료	비중
변액 연금	전통형변액연금(A)	61.8	19.8	51.4	13.3
	등록된 자산연계형연금(RILA, B)	41.1	13.1	47.4	12.3
	소계(C=A+B)	102.9	32.9	98.8	25.6
확정 연금	지수연계연금(D)	79.8	25.5	95.9	24.9
	금리고정형거치연금(E)	113.0	36.1	164.9	42.8
	소득연금(F=G+H)	11.3	3.6	17.5	4.6
	즉시형(SPIA, G)	9.2	2.9	13.3	3.5
	거치형(DIA, H)	2.1	0.7	4.2	1.1
	QLACs	0.2	0.06	0.6	0.16
	Structured settlements(I)	5.8	1.9	8.3	2.2
	소계(H=D+E+F+I)	209.9	67.1	286.6	74.4
전체(C+H)	312.8	100.0	385.4	100.0	

자료: LIMRA(2023b, 2024) 자료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나) 소득연금 시장유형별 현황

(1) 판매비중

소득연금은 일시납 즉시연금(Single Premium Immediate Annuity; SPIA)과 일시납 거치연금(Deferred Income Annuity; DIA)으로 구분되며, 판매방식은 퇴직연금제도 내(IRA), 퇴직연금제도 외(비적격, non-qualified), 그리고 고용주 설정 제도(employer plan)로 구분된다. 〈표 III-3〉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일시납과 거치형 모두 고용주 설정 제도 비중은 미미하고 퇴직연금제도 내(IRA)와 퇴직연금제도 외(비적격) 비중이 높다.¹⁷⁾ 일시납 상품은 퇴직연금제도 내와 제도 외 비중이 거의 유사한 반면, 거치 상품은 70% 이상이 IRA 계약을 통해 판매되었다.

17) 2022년 법령(SECURE Act 2.0) 개정으로 인해 고용주가 설정하는 제도 내에서 DIA를 구입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Ⅲ-3〉 미국 소득연금 시장유형별 판매 비중

(단위: %)

구분	일시납(SPIA)			거치(DIA)		
	퇴직연금 제도 내 (IRA)	퇴직연금 제도 외 (비적격)	고용주 설정 (employer plan)	퇴직연금 제도 내 (IRA)	퇴직연금 제도 외 (비적격)	고용주 설정 (employer plan)
2014	50	50	0	73	27	0
2015	49	51	0	71	29	0
2016	49	50	1	70	29	1
2017	50	50	0	73	27	0
2018	54	45	1	73	27	0
2019	53	46	1	73	27	0
2020	51	48	1	72	27	1
2021	51	49	0	73	27	0
2022	59	41	0	71	29	0
2023	60	39	1	76	24	0

자료: LIMRA(2024)

(2) 옵션 선택

소득연금은 개인의 필요와 목표에 부합하게 맞춤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급옵션을 제공한다. 크게 종신형과 확정기간형으로 구분되는데, 종신형은 다시 보증기간 설정 유무에 따라 구분된다. 계약건수 기준으로 보면 확정기간형과 납입보험료 환급형이 50% 이상을 차지하며, 종신형의 경우 보증기간부(6~10년) 비중이 높고 순수 종신형은 높지 않다. 판매건수 기준으로 보면 일시납의 경우 확정기간형 비중이 29% 수준으로 가장 높는데 비해 거치형은 종신 수령 후 잔여 적립금을 일시금이나 분할급여로 지급하는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한편, 평균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종신형의 보증기간 없음이나 종신형의 잔여액 분할지급 유형이 높은 수준이고, 확정기간형이나 종신형의 10년 이하 보증기간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표 Ⅲ-4〉 미국 소득연금 지급옵션별 비중과 평균보험료(2021)

(단위: %, \$)

유형	일시납(SPIA)			거치(DIA)			
	금액*	건수*	평균보험료	금액*	건수*	평균보험료	
종신연금형(A)	보증 없음	16	12	246,000	27	18	234,700
	1~5년 보증	1	2	118,100	8	12	107,800
	6~10년 보증	15	19	144,200			
	11~15년 보증	2	3	165,200	9	9	147,700
	16~20년 보증	12	12	190,100			
	20년+ 보증	1	1	206,800	-	-	-
	잔여액 일시지급	22	20	203,200	50	53	145,800
	잔여액 분할지급	2	2	269,000	-	-	-
확정기간연금형(B)	29	29	169,700	6	8	103,400	
합계(A+B)	100	100	-	100	100	-	

주: *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LIMRA·LOMA(2023)

〈표 Ⅲ-5〉는 일시납 거치형 연금계약을 적격장수연금(Non-QLAC vs. QLAC) 기준으로 구분하여 거치기간별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적격장수연금 여부와 상관없이 거치기간은 9년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적격장수연금이 아닌(Non-QLAC) 경우 거치기간이 1~4년이 가장 높는데 비해 QLAC는 5~9년이 가장 높아 퇴직연금제도를 통한 거치기간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조금 더 긴 편이다. QLAC를 활용하면 퇴직적립금 인출개시 연령을 85세까지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70.5세(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에 도달한 사람이 거치연금을 구입해서 1~15년 사이에서 거치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평균보험료 규모를 살펴보면, QLAC는 Non-QLAC 대비 31~54% 수준으로 나타나 장수리스크 관리에 비용효율적인 수단임을 알 수 있다.

〈표 III-5〉 미국 일시납 거치형연금 거치기간 분포

(단위: %, \$)

거치기간	Non-QLAC			QLAC		
	금액*	건수*	평균보험료	금액*	건수*	평균보험료
1~4년	53	50	211,300	10	13	65,800
5~9년	28	26	211,500	45	39	98,500
10~14년	14	18	163,000	25	26	81,000
15~19년	2	3	141,000	20	22	77,100
20년 +	3	3	190,000	0	0	-
합계	100	100	-	100	100	-

주: *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LIMRA·LOMA(2023)

다) QLACs 부진 원인

보험사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QLACs 공급 시 판매수수료를 절감하여 경쟁력 있는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가입자는 재량인출 옵션과 QLACs를 결합하여 은퇴기에 안정적인 소득흐름을 마련하고 의료비, 장기요양비용 등 유동성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QLACs는 공적연금 및 확정급여형 의존도 감소,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인해 성장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기대에 못미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급 측면에서 보면 생명보험회사가 장수리스크, 경험데이터 미흡, 협소한 시장, 역선택 등을 우려하여 적극적으로 상품을 개발·공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퇴직연금제도 내에서 수탁자도 연금보험 제공을 꺼리는데 그 이유는 보험사 및 상품 선택과 관련된 수탁자 책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높은 상품 가격, 만족스러운 공급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과 익숙하지 않다는 점, 단일 솔루션이 모든 가입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제도 내 새로운 유형의 상품(자산)을 제시하는데 따른 운용 측면의 복잡성 등이 작용한 결과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QLACs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데, 이는 개인이 일정 기간 거치 후 고연령 도달 시 연금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에 대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에서는 사회보장급

부 청구 시 기대수명 및 장수리스크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기본 정보를 포함하도록 권고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커미션 기준으로 판매되는 QLACs와 자문수수료 방식으로 판매되는 QLACs¹⁸⁾ 상품이 모두 개발되어 시장에 공급되고 있어 퇴직자는 자신에게 더 유리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¹⁹⁾

다. 사례

1) University of California 평생소득옵션

캘리포니아대학 연금저축프로그램(UC Retirement Savings Program)은 가입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소득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은퇴 이후 투자옵션을 자동화·단순화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은퇴가 임박했거나 은퇴 예정자 대상으로 거치형 평생소득(Deferred Lifetime Income) 옵션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 옵션은 QLAC의 한 유형으로 퇴직적립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종신연금보험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장수리스크를 관리한다. 62~69세 가입자에게 일시납 거치 종신연금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고, 78세부터 연금급여를 수령하도록 한다. 전체 적립금 중 종신연금보험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은 투자계정에 남아 계속 투자하고 필요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종신연금급여는 연금기금에서 지급·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생명보험회사에서 지급·보장한다. 연금기금²⁰⁾과 생명보험회사 간 협상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므로 소매시장에서 일반적인 선취수수료(up front fees)와 판매수당(sales commission)은 지급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종신소득 옵션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III-6>과 같다. 연금기금과 생명보험회사 간 단체계약을 체결하고, 가입자 개인이 옵트 인(opt-in) 방식으로 종신연금보험 가입을 선택하면, 퇴직연금계정에서 연금보험료가 차감되어 해당 생명보험회사로 이체된다. 종신연금보험 구입 시 일시납 보험료 규모는 최저 \$100,000부터 최대 \$200,000 수준이다. 청약철회기간은 90일을 적용한다. 연금수령 방식은 단생 또는 연생(배우자 및 최종 생존자 50% 또는 75%) 중 선택할 수 있다. 연금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연금지급 개시 전 거치기간(60~78세 미만) 동안에는 기납입보험료를 환급하며, 연금지급이 개시

18) commission-free QLAC

19) 투자자문가(Registered Investment Advisors)는 자문보수(fee)를 수령함

20) 생명보험회사 선정은 타겟데이트펀드(TDF) 관리자인 SSGA가 담당하며 선정에 대한 신탁책임도 부담함

된 78세 이후에는 기납입보험료에서 연금급여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한다. 연금급여는 매년 예상 물가상승률에 해당하는 2%씩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설계하여 실질가치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표 III-6〉 캘리포니아대학 Deferred Lifetime Income 특징

특징	주요 내용
급여 옵션	독신: 1인(단생), 종신연금
	기혼: 2인(연생), 배우자 50%/75%
사망보험금	연금지급개시 전(62~78세 미만): 보험료 환급
	연금지급개시 후(78세 이상): 잔여 보험료(보험료-급여수령액합계) 환급
생계비 조정	매년 연금액 2% 증가

자료: University of California(2023)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2) TDF+하이브리드 연금²¹⁾

설문 조사에 따르면 DC 제도의 6.7%는 제도에 내재된 연금 옵션(in-plan annuity option)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LANSOR 2024). Alliance Bernstein LP, Black Rock Inc., Income America LLC, State Street Corp., TIAA/Nuveen 등이 관련 제품을 출시하였다. 이들이 출시한 하이브리드 연금(Hybrid Annuity Target-Date Funds)은 전통적인 타겟데이트펀드(TDF)와 종신연금상품이 결합된 것이다. 핵심 내용은 자산 축적과 장수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 번째 요소는 자산 증대를 위한 멀티 애셋 자산배분(multi-asset allocation)전략이다. 이는 적립단계에서 적립금 증대를 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은퇴연령이 가까워지면 위험을 줄이는 자산포트폴리오를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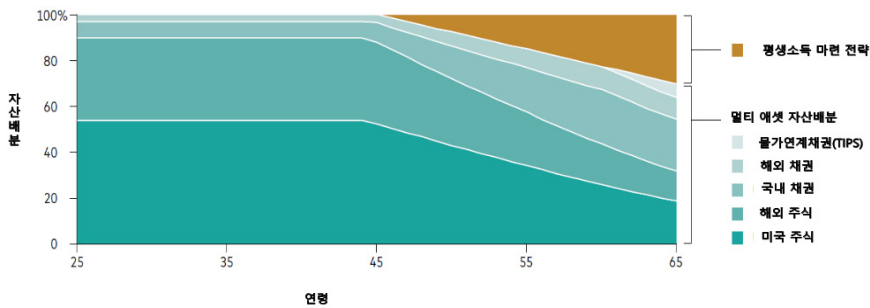
두 번째 요소는 향후 연금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마련 전략으로 은퇴 시점에 연금을 구입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자산으로 이전시키는 단계이다. 장기간(통상 55~65세)에 걸쳐 연금 구입 시점을 분산시킴으로써 연금가격 상승 위험을 관리한다. 안전 자산으로의 이전은 가입자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며 최종 연금 구입시점에 최고치

21) Vanguard Research(2024)

에 도달하는 방식이다. 이 전략은 은퇴 전 최소 10년 전에 시작할 수 있으나 실제 가입자가 선택하는 연금 옵션은 은퇴 시점이나 그 직전에 제공된다.

세 번째 요소는 평생소득보장을 위한 종신연금 구입이다. 인출단계에서 장래 연금수령 금액을 확정하는 금리고정형(fixed-rate) 유형을 구입하는 것으로 일시납즉시연금(SPIA), 일시납거치연금(DIA), 적격장수연금(QLAC) 등이 해당된다. QLAC는 78세 이후부터 연금 급여가 개시되며, 의무적으로 인출을 개시해야 하는 최저연령규정(MRD)에서 제외된다.

〈그림 III-2〉 미국 하이브리드 연금+TDF 구성 요소



자료: Vanguard Research(2024)

2. 영국

가. 인출 관련 제도

영국에서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의 인출 관련 규정은 주로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핸드북 19장 Pensions Supplementary Provisions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²²⁾ 주요 내용은 공개시장옵션(open market options), 독립지배구조위원회(Independent Governance Committees; IGCs), 인출옵션 선택 시 수반되는 위험에 대한 정보제공(retirement risk warnings), 연금보험가격비교정보(pension annuity comparison information), 재량인출 및 정형화된 인출옵션(drawdown, investment pathways) 등이다.

22) 호주 금융감독청 핸드북(<https://www.handbook.fca.org.uk>)

1) 정형화된 인출옵션 제공

영국은 2015년 4월 연금자유화조치(pension freedom)를 단행하였다. 이로 인해 종신연금 의무화 규정이 폐지되고 개인이 자유롭게 인출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조치 이후 종신연금 판매 실적이 크게 감소하였다.²³⁾ 종신연금은 평생소득에 대한 보장 기능은 높지만 유연성이 부족한 반면, 재량인출은 유연성은 높지만 평생소득 보장 기능이 미흡하다. 따라서 보장기능과 유연성을 모두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넛지(nudge)를 활용하여 개인의 바람직한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DWP 2020 & 2022).

2023년 7월 연금감독청(The Pension Regulator; TPR)과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은 수탁자에게 가입자 특성을 고려한 연금수령 단계의 디폴트 솔루션 개발을 권고하였다(TPR & FCA 2023). FCA는 퇴직적립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재정자문(financial advice)이 일반화된 사회에서 자문을 받지 않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20년 8월 인출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는 은퇴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박희진 2024).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자신의 니즈에 부합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로 하여금 4가지 정형화된 옵션(pathways)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4가지 인출 옵션은 5년 내 인출 없이 적립금 유지, 종신연금 구입, 장기 소득흐름으로 인출, 일시금 인출로 구성된다. FCA(2023)은 정부의 인출국면 규제가 시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이행 사항을 항목별로 점검하여 발표하였다.

영국 정부는 2012년 계약형의 취약한 지배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독립지배구조위원회(Independent Governance Committee; IGC)를 도입하였다. 2019년 12월 FCA는 IGC의 책무를 확대하여 4가지 인출 옵션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추가하였다. 이에 사업자가 제시한 4개 인출 옵션에 대한 비용 대비 가치, 리스크 공시의 적절성, 가입자 커뮤니케이션(소통과 참여)의 적합성, 투자자 관점의 설계 및 관리 여부를 평가하도록 한다.

23) FCA(2024)에 의하면, 2009년 46만 6천 건에서 2022년 5만 4천 건으로 감소함

2) 정보제공 및 가격비교 서비스

영국에서 55세 이후 퇴직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인출옵션은 크게 연금보험과 재량인출로 구분된다. 정책 및 감독당국은 이들 옵션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자가 정보에 기반하여 자신의 니즈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다(자본시장연구원 2020b). 공적기관(Money Helper)이 제공하는 정보는 자동등록, 적립, 연금제도, 공적연금, 인출, 연금과 세제, 연금과 은퇴(Pensions & Retirement) 등으로 구성된다.

가) 연금보험

가입자가 연금지급률 견적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면 된다. 각 단계별로 연금수령 조건을 입력하는 화면에서는 실제 의사결정한 사람들의 인터뷰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예를 들어 연금상품 유형 선택 시 종신연금을 선택한 사람들이 직접 자신의 선택 경험에 대해 가격비교시스템 활용 시 장점, 독립재정자문가(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IFA)와의 상담 필요성, 평생소득 극대화 추구 등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 자신의 상황에 부합하는 연금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별 가격비교정보를 얻기 위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상품 유형(종신연금, 확정기간형연금)
- 2단계: 인구통계 특성(출생연도와 연금수급개시 시기, 보험료 규모, 수령 주기, 거주 지역, 결혼상태 등)
- 3단계: 연금수급자 수(1인, 2인(배우자 50%, 66%, 100% 지급))
- 4단계: 사망 여부와 관련 없는 지급보장기간(guarantee period)
- 5단계: 정액형(fixed income), 체증형(increasing income)
- 6단계: 건강상태 및 흡연습관
- 7단계: 건강검진 결과
- 8단계: 보험사별 견적금액 비교(월/연간 연금금액)

〈그림 III-2〉 영국 Money Helper 연금보험상품 가격비교 사례

Use our free annuity comparison tool
Compare lifetime guaranteed income products
 (lifetime annuities)

1. Make your choice 2. Your details 3. Single vs Joint 4. Protection 5. Increasing 6. Your health 7. Medical conditions 8. Quotes

Quote 1 Remove

Your income (indicative)

£596 Monthly	£7,157 Yearly	£71,570 10 yearly
------------------------	-------------------------	-----------------------------

Your choices

- £ £100,000 pension pot
- Monthly in arrears
- Income starts at age 65
- Single income
- Guarantee period of 10 years
- No annual increase
- Health choices
- Medical conditions (not applicable)

Compare all providers >

Quote 1 Remove

All providers for this quote

Scottish Widows			
	£596	£7,157	£71,570
	Monthly	Yearly	10 yearly
Canada Life			
	£581	£6,974	£69,740
	Monthly	Yearly	10 yearly
Standard Life			
	£578	£6,938	£69,380
	Monthly	Yearly	10 yearly
Just			
	£544	£6,528	£65,280
	Monthly	Yearly	10 yearly
Aviva			
	£542	£6,505	£65,050
	Monthly	Yearly	10 yearly

< Show annuity details

자료: Money Helper 홈페이지 연금보험가격비교 결과(<https://comparison.moneyhelper.org.uk/en/guaranteed-income-for-life/your-details>)

나) 재량인출/자유인출

① 정의

영국의 경우 퇴직적립금에서 유연한 방식으로 소득을 인출하는 방식은 재량인출(pension drawdown) 또는 자유인출(flexible retirement income)로 불린다. 이 방식은 연금보험에 비해 연금소득을 받는 방법과 시기에 대해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적립금의 최대 25%를 비과세 일시금(비과세 허용 범위 내)으로 인출 후, 나머지 적립금은

계속 투자되는 방식이다. 투자리스크는 가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적립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인출할 수 있는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예상 기간에 도달하기 전에 적립금이 소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② 작동방식

재량인출방식에서는 퇴직적립금에서 비과세 허용한도인 25%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잔여 적립금 75%를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와 인출 계약을 맺을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자로 이전해야 할 수도 있다. 본인의 자금 수요와 위험선호에 부합하는 투자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점진적인 재량인출(phased or partial drawdown)은 인출계좌에서 매년 면세한도인 25%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투자를 통해 자금을 증식시키는 방식이다. 재량인출방식을 선택한 사람은 언제든지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연금보험이나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타 유형의 퇴직소득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Money Helper에서는 재량인출방식에 대해서도 유튜브 비디오로 핵심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돕고 있다. 투자 경로(Investment Pathway)는 적립금의 25%를 비과세 현금 수령 후 남은 적립금을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결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개인이 비과세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문을 받지 않고 재량인출을 원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투자 경로 옵션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는 향후 5년 동안 개인의 은퇴계획을 기반으로 기성 투자솔루션을 제시한 것으로 이에 편입되면, 개인은 투자 선택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

- 5년 이내에 인출 계획 없음: 계속 근로하거나 기타 소득이 있어 퇴직적립금을 통한 소득 필요하지 않은 경우
- 5년 이내에 연금보험을 설정: 1, 2, 3, 4, 5년 후 평생소득 필요한 경우
- 5년 이내에 재량인출을 시작
- 5년 이내에 전액 인출
- 미정

5년 내 재량인출을 선택하고 인출을 원하는 소득금액과 수령주기를 표기하면, 관련 상품들의 가격비교 검색결과를 제공한다.

〈그림 Ⅲ-3〉 영국 Money Helper 재량인출 가격비교 사례

Use our investment pathways comparison tool

Understand and compare your investment pathway options (for pension drawdown) ^{BETA}

1. Get started
2. Investment pathway options
3. Your choice
4. Products
5. Next steps

	Product name: AJ Bell SIPP	First year charge: £405.75		Product name: Personal Pension	First year charge: £400.77
	Add to favourites	More Information		Add to favourites	More Information
	Product name: Pension	First year charge: £383.75		Product name: Retirement Account	First year charge: £287.32
	Add to favourites	More Information		Add to favourites	More Information
	Product name: Fidelity SIPP	First year charge: £524.70		Product name: Active Money personal pension	First year charge: £379.51
	Add to favourites	More Information		Add to favourites	More Information
	Product name: HL SIPP	First year charge: £549.90		Product name: Vanguard Personal Pension	First year charge: £280.04
	Add to favourites	More Information		Add to favourites	More Information

자료: Money Helper 홈페이지 재량인출가격비교 결과(<https://comparison.moneyhelper.org.uk/en/tools/drawdown-investment-pathways/products>)

자신이 설정한 옵션에 대한 비교 결과가 나오면, 무료자문(Pension Wise)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동영상 자료를 제공한다. 개인이 실제 인출옵션 및 인출상품에 대한 선택을 하기 전에 Pension Wise를 통해 해당 옵션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 것이다.

3)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영국은 독립자문서비스가 활성화된 국가로 은퇴 시점이 도래한 경우 자신에게 적합한 연금수령 방식과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무료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2019년 4월 이후 공공기관인 MaPS(Money and Pensions Service)에서 기존 3개 기구(Money Advice Service, Pensions Advisory Service, Pension Wise)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행하여 무료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MaPS는 퇴직연금

제도의 주무부처인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산하 공공기관이다. 무료 전화 또는 웹 채팅을 이용해서 연금 전문가로부터 무료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원하는 인출 금액과 예상 투자수익률 기준으로 자신의 적립금이 얼마나 지속가능한 지 계산 가능하다.

Pension Wise는 Money Helper의 무료서비스로 2018년 설립되어 50대 이상 인출국면에 진입한 확정기여형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출 옵션에 대한 무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방식은 대면상담, 전화자문, 온라인 웹사이트 모두 가능하다. 가입자가 미팅 요청을 하면, 연금 전문가가 해당 가입자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 가능한 지급 옵션의 특성, 연금수령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사기를 조심하는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60분간 진행한다. 만약 50세 미만이거나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만 가입한 경우 일반적으로 Pension Wise 예약을 할 수 없지만 무료전화 또는 웹 채팅을 통해 연금전문가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4) 통계집적 및 발표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은 2015년 4월 연금 자유화가 도입된 이후 연금, 연금 및 재량인출 사업자의 대표 표본으로부터 퇴직 소득 데이터를 수집해왔다(Retirement Income Data Request; RIDR). 표본은 약 50개 퇴직 및 연금 제공업체로 2015년 기준 계약형 확정기여제도(contract-based pension plans) 연금 자산의 약 95%를 포괄하였다. FCA는 계약형 제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 2017년 7월 핸드북 규칙을 만들어 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였다.²⁴⁾ 감독당국은 사업자가 제출한 데이터에 대해 선별적인 품질검사 업무(selective quality assurance checks)를 수행한다.

이 데이터는 일부 가입자가 복수의 연금제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출한 가입자 개인 기준이 아니라 일시금 인출을 개시한 계좌 기준으로 작성된다. 2018년 4월 1일 이후 연금 및 퇴직 소득 상품을 제공하는 모든 감독 대상 사업자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사업자는 2가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4) 연금감독청(TPR) 소관인 기금형제도(trust-based occupational pension schemes)와 확정기여형제도는 포함되지 않음

- 퇴직소득 데이터(REP015, retirement income flow data): 퇴직소득흐름 자료는 2018년 상반기(4월 1일~9월 30일)부터 6개월 단위로 연 2회 작성함
- 퇴직적립금 및 재량인출 데이터(REP016, retirement income stock data and withdrawals flow data): 퇴직소득 관련 적립금 및 인출자료는 2018년(당년 4월 1일~익년 3월 31일)부터 매 회계연도 말 기준 작성함

감독당국은 퇴직소득 시장에 대한 통계를 집적/발표함으로써 잠재 위험을 식별하고 감독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하며, 정책개발에 대한 정보제공, 시장 동향 파악 및 소비자 보호에 활용한다. 아울러, 관련 사업자 외에도 자문회사, 퇴직소득 상품 유통업체,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2024년 4월 16일 발표한 통계 자료(Retirement income market data 2022/23)를 통해 2022년 4월~2023년 3월 동안 소비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최초 인출 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최초 인출 시 활용한 연금제도 개수(numbers)와 유형(types)
-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부분 인출한 가입자의 연금제도 개수
- 은퇴상품 구입 시 자문 활용
- 판매된 연금상품의 옵션 유형
- 은퇴상품을 제공한 사업자의 소속 권역
- DB에서 DC로 이전된 건수
- 일시금으로 인출된 금액
- 재량인출 적립금 및 자문

FCA는 이용자가 상세 검색 조건을 설정하여 인출방식별 시장 현황을 시계열 그래프로 조회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²⁵⁾

25) Retirement income market interactive analysis

나. 시장 현황

1) 인출방식 및 연금보험

영국의 퇴직연금제도에서는 55세(2028년 4월부터 57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적립금의 최대 25%까지 비과세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허용 한도(Lump sum allowance; LSA) 기준(2024년 기준 £268,275)을 초과하지 않는 한 25%는 면세되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한계세율로 과세된다. 또한, 일시금 및 사망 급여(Lump sum and death benefit allowance; LSDBA)를 포함하여 퇴직연금제도에서 비과세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총액 한도는 £1,073,100이다.

영국의 인출옵션 중 하나인 미결정연금펀드(Uncrystallised Funds Pension Lump Sum; UFPLS)는 인출방식을 결정하기 전까지 거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미결정(Uncrystallised)이란 연금자산이 특정 인출옵션으로 확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연금자산(Funds)은 개인의 연금계좌에 존재하며, 일시금(Lump Sum)은 한 번에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인출금액의 25%는 면세이며, 나머지는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된다. 이 방식은 유연한 인출 방법으로 일시적인 현금 수요가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적립금의 25%를 비과세 현금으로 수령한 후, 잔여 적립금을 활용하여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종신연금보험(또는 확정기간형연금)을 구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연금상품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종신연금(Lifetime annuity)

종신연금상품은 평생소득 보장, 투자리스크 및 장수리스크 관리에 적합한 상품이다. 노후 소득의 일부(예: 식비 및 가계비와 같은 필수 지출)를 충당하는데 적절하며, 인플레이션 연계연금도 가능하지만 중도해지는 불가하다.

② 확정기간형연금(Fixed-term annuity)

확정기간형연금은 일정 기간(1~40년) 연금소득 보장(5~10년 일반적), 약정 기간 후 사전에 합의된 만기금액(보험료+투자수익-연금수령액)을 수령하여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연한 재량인출 또는 다른 연금상품을 구입하거나, 약정기간 종료 시 더 유리한 연금상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③ 유병자연금(Enhanced annuities)

다른 국가와 달리 영국에서는 유병자연금이 발달하였다. 이는 가입자가 질병 진단을 받았거나 기대수명이 짧아질 수 있는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표준하체연금(impaired annuity)으로도 불린다. 해당 질병은 뇌졸중, 암, 당뇨병, 심장마비, 신부전, 만성 천식, 다발성 경화증,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며, 과체중 또는 장기간 흡연도 해당된다. 일부 보험회사는 육체 노동자, 기대수명이 낮은 지역 거주자 등에게도 높은 연금액을 지급한다.

④ 투자연계연금(Investment-linked annuities)

투자연계연금은 연금소득의 일부는 보장되고, 일부는 투자성과와 연계되는 종신연금이다. 가입자가 자신이 원하는 소득보장 수준을 선택하면 자산의 일부는 보장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하고, 남은 금액은 추가 수익을 위해 투자하여 성과가 양호하면 최저보장소득을 초과하는 연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비과세 일시금으로 구입한 종신연금(Purchased life annuity)

Purchased life annuity는 비과세로 인출한 일시금(적립금의 25%)을 활용하여 종신연금을 구입하는 것이다. 연금구입 자금은 비과세되고 이자 부문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이 상품은 은퇴 후 소득이 필요하고 자산의 안정적인 수입을 원할 때 유용하다. 영국은 연금자유화 이전 종신연금수령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은퇴자 소득원의 상당 부분이 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연금급여이다. 이런 사회보장적 기능을 감안하여 예금보험제도에서는 가입금액 전액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개인은 보험회사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우려 없이 퇴직적립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상당 규모의 종신연금을 구입할 수 있다.

2) 지급옵션 실적

영국 FCA는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의 지급옵션을 4개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표 III-7>은 2018년과 2022년 지급옵션의 선택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2018년부터 2022년 동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옵션은 전액현금인출이며, 그 다음이 재량인출, 연금보험 구입, 부분 UFPLS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7> 영국 계약형 인출단계 지급옵션별 최초 선택 추이(2018/19 vs. 2022/23)

구분	2018. 4~2019. 3			2022. 4~2023. 3		
	계약건수 (천 건)	적립금 (£백만)	건당적립금 (£000)	계약건수 (천 건)	적립금 (£백만)	건당적립금 (£000)
연금보험 구입	74	4,525	61	59	4,061	69
재량인출	194	28,443	146	218	29,867	137
부분UFPLS	27	2,730	102	42	4,003	96
전액현금인출 ^{주)}	357	4,650	13	421	5,268	13
전체	652	40,349	62	740	43,199	58

주: 가입자가 소액 일시금, 재량인출 또는 UFPLS를 통해 퇴직적립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함
 자료: FCA(2024)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표 III-8>은 2022년 4월~2023년 3월 동안 퇴직적립금 규모와 인출 방식별 제도 개수 자료이다. 적립금 규모가 증가할수록 현금으로 인출하는 비중은 낮아지고 재량인출 비중은 높아진다. 연금보험을 구입한 계좌는 적립금 규모가 소액이거나 고액일 경우에는 비중이 낮다. 반면, 중간 규모일 경우 활용도가 높다.

〈표 III-8〉 영국 계약형 퇴직적립금 규모/인출유선별 건수(2022. 4~2023. 3)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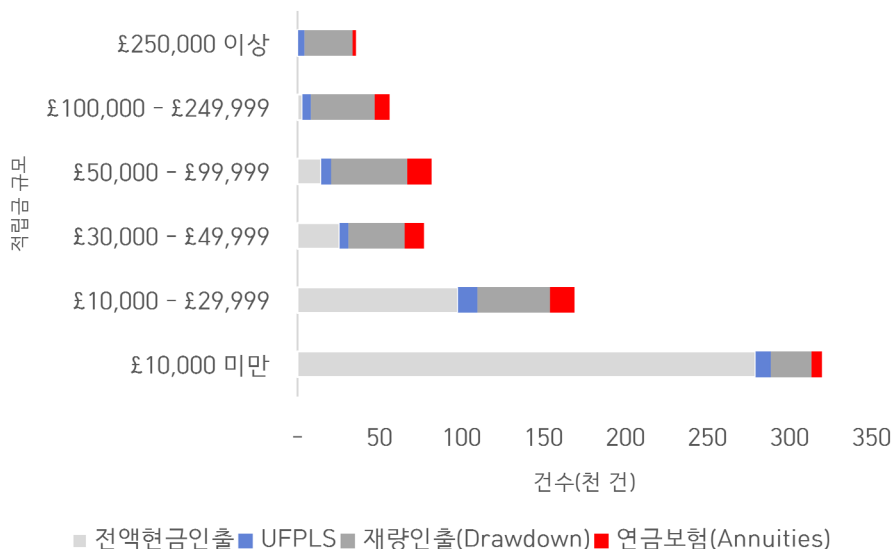
구분	전액현금인출 Encashments	UFPLS	재량인출 Drawdown	연금보험 Annuities	합계
£10,000 미만	279,299	9,310	24,796	6,397	319,802
	87.3	2.9	7.8	2.0	100.0
£10,000~ £29,999	97,894	11,813	44,296	14,953	168,956
	57.9	7.0	26.2	8.9	100.0
£30,000~ £49,999	25,665	5,356	34,333	11,791	77,145
	33.3	6.9	44.5	15.3	100.0
£50,000~ £99,999	14,432	6,110	46,378	14,863	81,783
	17.6	7.5	56.7	18.2	100.0
£100,000~ £249,999	3,030	5,138	38,939	9,088	56,195
	5.4	9.1	69.3	16.2	100.0
£250,000 이상	407	3,844	29,332	2,071	35,654
	1.1	10.8	82.3	5.8	100.0
전체	420,727	41,571	218,074	59,163	739,535
	56.9	5.6	29.5	8.0	100.0

주: 하단 수치는 비중임

자료: FCA(2024)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그림 III-4〉는 〈표 III-8〉을 그래프로 작성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퇴직적립금 규모가 £30,000 미만일 경우 전액현금인출 선호가 두드러지고, £30,000 이상일 경우 재량인출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II-4〉 영국 계약형 퇴직적립금 규모/인출옵션별 분포(2022. 4~2023. 3)



자료: FCA(2024) 자료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표 III-9〉부터 〈표 III-16〉은 세부 항목 별로 2022년 4월~2023년 3월 동안 인출계좌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표 III-9〉는 재량인출 방식으로 인출한 계좌의 연령과 적립금 규모 분포이다.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은퇴 초반인 55~64세 연령 비중이 70.6%로 가장 높고, 65~74세 비중은 25.0% 수준이다. 적립금 규모는 가장 낮은 집단과 가장 높은 집단을 제외하고 중간 정도 집단에서 고른 분포를 보인다. 재량인출 선택자의 적립금 규모별 비중은 £50,000~£99,999이 21.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10,000~£29,999 구간이 20.3%. £100,000~£249,999 구간이 17.9%를 차지한다. 반면, £10,000 미만은 11.4%, £250,000 이상은 13.5%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표 III-9〉 영국 재량인출 적립금 규모/연령 분포(2022. 4~2023. 3)

(단위: 건, %)

구분	55세 미만	55~64세	65~74세	75세 초과	전체
£10,000 미만	823	16,957	6,379	637	24,796
	0.4	7.8	2.9	0.3	11.4
£10,000~ £29,999	622	32,139	10,560	975	44,296
	0.3	14.7	4.8	0.4	20.3
£30,000~ £49,999	355	24,790	8,368	820	34,333
	0.2	11.4	3.8	0.4	15.7
£50,000~ £99,999	502	32,691	11,896	1,289	46,378
	0.2	15.0	5.5	0.6	21.3
£100,000~ £249,999	483	26,136	10,922	1,398	38,939
	0.2	12.0	5.0	0.6	17.9
£250,000 이상	429	21,402	6,386	1,115	29,332
	0.2	9.8	2.9	0.5	13.5
전체	3,214	154,115	54,511	6,234	218,074
	1.5	70.6	25.0	2.9	100.0

주: 1) 하단 수치는 비중임

2) 적립금 규모는 연금개시 시 수령할 수 있는 일시금(Pension Commencement Lump Sum; PCLS)을 차감한 규모를 의미함

자료: FCA(2024)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표 III-10〉은 연금보험을 구입한 계좌의 적립금 규모 및 연령 분포이다. 연령 분포를 보면, 65~74세가 58.3%로 가장 높고, 55~64세 34.9%, 75세 초과 6.6% 수준이다. 적립금 규모 분포는 £10,000~£29,999와 £50,000~£99,999 구간이 각각 25.3%, 25.1%이며, £30,000~£49,999는 19.9%이다. £10,000 미만과 £250,000 이상은 각각 10.8%, 3.5%로 낮은 수준이다. 65~74세 및 £50,000~£99,999 구간에서 연금보험 구입 비중이 15.3%로 가장 높다.

〈표 III-10〉 영국 연금보험 적립금 규모/연령 분포(2022. 4~2023. 3)

(단위: 건, %)

구분	55세 미만	55~64세	65~74세	75세 초과	전체
£10,000 미만	26	1,975	3,392	1,004	6,397
	0.0	3.3	5.7	1.7	10.8
£10,000~ £29,999	38	5,326	8,675	914	14,953
	0.1	9.0	14.7	1.5	25.3
£30,000~ £49,999	25	4,215	7,035	516	11,791
	0.0	7.1	11.9	0.9	19.9
£50,000~ £99,999	37	4,998	9,071	757	14,863
	0.1	8.4	15.3	1.3	25.1
£100,000~ £249,999	18	3,147	5,382	541	9,088
	0.0	5.3	9.1	0.9	15.4
£250,000 이상	18	985	915	153	2,071
	0.0	1.7	1.5	0.3	3.5
전체	162	20,646	34,470	3,885	59,163
	0.3	34.9	58.3	6.6	100.0

주: 1) 하단 수치는 비중임

2) 적립금 규모는 연금개시 시 인출 가능한 일시금(PCLS) 규모를 차감한 후 규모를 의미함

자료: FCA(2024)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표 III-11〉은 연금보험 상품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가입자의 생존 및 사망과 무관하게 일정기간 확정적으로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기간보증형 비중이 71.9%에 달한다. 피보험자 수 기준으로 보면 단생연금이 68.9%이며, 수령하는 연금급여가 일정한 정액연금 비중이 83.0%에 달한다. 피보험자의 건강 및 생활습관을 고려하여 장래 기대여명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유병자연금 비중도 40.8%에 달한다.

〈표 III-11〉 영국 연금보험 유형별 판매건수(2022. 4~2023. 3)

(단위: 건, %)

구분	판매건수	비중
유병자연금(Enhanced annuities) ^{주2)}	24,111	40.8
기간보증형연금(Guaranteed payment period annuities)	42,528	71.9
최저수익보장연금(Value protected annuities)	3,293	5.6
단생연금(Single life annuities)	40,772	68.9
연생연금(Joint life annuities)	18,391	31.1
정액연금(Level only annuities)	49,090	83.0
체증형연금(Escalating annuities)	10,071	17.0
전체	59,163	-

주: 1) 비중은 2022/23 기간 동안 판매된 59,163건에서 개별 옵션이 차지하는 건수임
(유병자연금이면서 단생연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 옵션은 중복 가능)

2) 유병자연금(enhanced annuities)은 생활습관(예: 흡연)이나 질병 관련 심사과정을 거친 계약을 의미하며, 기타 요인(예: 직업 또는 거주지)만 고려하여 인수된 계약은 미포함

자료: FCA(2024)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표 III-12〉는 UFPLS 방식을 택한 계좌의 적립금 규모 및 연령 분포이다. 연령 분포는 55~64세 비중이 74.7%, 적립금 규모는 £10,000~£29,999 구간이 28.4%로 가장 높은 구간이다. 연령과 적립금 규모 모두 고려 시 55~64세 및 £10,000~£29,999 비중이 21.3%로 가장 높다.

〈표 III-12〉 영국 UFPLS 적립금 규모/연령 분포(2022. 4~2023. 3)

(단위: 건, %)

구분	55세 미만	55~64	65~74	75세 초과	전체
£10,000 미만	-	6,988	2,270	52	9,310
	-	16.8	5.5	0.1	22.4
£10,000~£29,999	-	8,847	2,880	86	11,813
	-	21.3	6.9	0.2	28.4
£30,000~£49,999	-	3,978	1,335	43	5,356
	-	9.6	3.2	0.1	12.9
£50,000~£99,999	-	4,579	1,490	41	6,110
	-	11.0	3.6	0.1	14.7
£100,000~£249,999	-	3,678	1,432	28	5,138
	-	8.8	3.4	0.1	12.4
£250,000 이상	-	2,977	830	37	3,844
	-	7.2	2.0	0.1	9.2
전체	-	31,047	10,237	287	41,571
	-	74.7	24.6	0.7	100.0

주: 1) 하단 수치는 비중임

2) 적립금 규모는 연금개시 시 인출 가능한 일시금(PCLS) 규모를 차감한 후 규모를 의미함

자료: FCA(2024)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표 III-13〉은 전액 일시금으로 인출한 계좌의 적립금 규모 및 연령 분포이다. 전액 일시금 수령의 66.4%는 적립금 규모 £10,000 미만 소액 계좌이다. 적립금 규모가 소액이면서 은퇴 초기 연령(55~64세) 그룹의 일시금 수령 비중이 45.7%에 달한다.

〈표 III-13〉 영국 전액 일시금 적립금 규모/연령 분포(2022. 4~2023. 3)

(단위: 건, %)

구분	55세 미만	55~64세	65~74세	75세 초과	전체
£10,000 미만	2,162	192,394	80,551	4,192	279,299
	0.5	45.7	19.1	1.0	66.4
£10,000~£29,999	1,454	70,108	24,290	2,042	97,894
	0.3	16.7	5.8	0.5	23.3
£30,000~£49,999	384	19,154	5,735	392	25,665
	0.1	4.6	1.4	0.1	6.1
£50,000~£99,999	263	10,789	3,117	263	14,432
	0.1	2.6	0.7	0.1	3.4
£100,000~£249,999	107	2,010	810	103	3,030
	0.0	0.5	0.2	0.0	0.7
£250,000 이상	34	239	98	36	407
	0.0	0.1	0.0	0.0	0.1
전체	4,404	294,694	114,601	7,028	420,727
	1.0	70.0	27.2	1.7	100.0

주: 1) 하단 수치는 비중임

2) 적립금 규모는 인출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자금(uncrystallized funds)을 기준으로 함

자료: FCA(2024)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표 III-14〉는 정률 인출을 선택한 계좌의 연간 인출률 분포를 적립금 규모별로 정리한 것이다. 적립금 규모가 소액일 경우 인출률이 높고, 적립금 규모가 고액일 경우 인출률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보면 8% 이상 인출률의 비중이 39.9%로 가장 높다. 일정 수준의 은퇴소득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적립금 규모가 작을수록 인출률은 높고 (£10,000 미만: 8% 이상 인출 비중 79.4%), 적립금 규모가 클수록 인출률은 낮은 (£250,000 이상: 2% 미만 인출 비중 25.4%) 모습을 보인다.

〈표 III-14〉 영국 정률인출 수준 분포(2022. 4~2023. 3)

(단위: 건, %)

구분	2% 미만	2~3.99%	4~5.99%	6~7.99%	8% 이상	합계
£10,000 미만	1,641	1,138	1,230	1,137	19,824	24,970
	6.6	4.6	4.9	4.6	79.4	100.0
£10,000~£29,999	2,736	4,219	6,935	6,173	45,420	65,483
	4.2	6.4	10.6	9.4	69.4	100.0
£30,000~£49,999	3,760	6,191	9,510	8,054	33,319	60,834
	6.2	10.2	15.6	13.2	54.8	100.0
£50,000~£99,999	5,766	11,907	18,306	13,919	45,264	95,162
	6.1	12.5	19.2	14.6	47.6	100.0
£100,000~£249,999	13,721	22,219	26,655	18,986	35,275	116,856
	11.7	19.0	22.8	16.2	30.2	100.0
£250,000 이상	29,611	36,573	26,099	11,917	12,156	116,356
	25.4	31.4	22.4	10.2	10.4	100.0
전체	57,235	82,247	88,735	60,186	191,258	479,661
	11.9	17.1	18.5	12.5	39.9	100.0

주: 1) 하단 수치는 비중임

2) 정기적인 인출 또는 UFPLS 옵션이 설정된 상태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 인출되어 기간 말에 투자된 상태로 유지되는 제도 대상임

자료: FCA(2024)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표 III-15〉는 연금보험 구입 시 이용한 자문서비스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비용을 부담한 유료 자문서비스(regulate advice)를 받은 비중이 24.0%이며,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공적서비스(Pension Wise Guidance)를 받은 비중은 18.9%이다. 유료 혹은 무료 자문서비스 없이 연금상품을 구입한 비중은 57.0% 수준이다. 공적서비스를 이용한 계층은 적립금 규모와 큰 연관성 없이 모든 적립금 그룹에서 고른 분포를 보인다. 대체적으로 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 계층은 고액 적립금을 보유한 계층이다.

〈표 III-15〉 영국 연금보험 자문서비스 유형(2022. 4~2023. 3)

(단위: 건, %)

구분	유료자문서비스 (regulate advice)	무료공적서비스 (Pension Wise Guidance)	자문/자침 없음	합계
£10,000 미만	1,093	1,125	4,179	6,397
	17.1	17.6	65.3	100.0
£10,000~ £29,999	2,803	2,718	9,432	14,953
	18.7	18.2	63.1	100.0
£30,000~ £49,999	2,627	2,239	6,925	11,791
	22.3	19.0	58.7	100.0
£50,000~ £99,999	3,894	2,974	7,995	14,863
	26.2	20.0	53.8	100.0
£100,000~ £249,999	2,948	1,805	4,335	9,088
	32.4	19.9	47.7	100.0
£250,000 이상	850	343	878	2,071
	41.0	16.6	42.4	100.0
전체	14,215	11,204	33,744	59,163
	24.0	18.9	57.0	100.0

주: 하단 수치는 비중임

자료: FCA(2024)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표 III-16〉은 재량인출 선택 시 자문서비스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유료 자문서비스를 받은 비중이 55.3%로 연금보험 구입(24.0%) 보다 높다. 반면, 무료 공적서비스를 받은 비중은 8.1%로 낮은 수준이며, 어떠한 형태의 자문서비스 없이 판단한 비중은 36.6% 수준이다. 재량인출 시 공적 자문서비스를 이용한 계층은 적립금 규모가 소액이며, 고액 적립금 일 경우 유료 자문서비스를 활용하는 비중이 79.1%에 달한다.

〈표 III-16〉 영국 재량인출 자문서비스 유형(2022. 4~2023. 3)

(단위: 건, %)

구분	유료자문서비스 (regulate advice)	무료공적서비스 (Pension Wise Guidance)	자문/지침 없음	합계
£10,000 미만	9,588	2,701	12,507	24,796
	38.7	10.9	50.4	100.0
£10,000~ £29,999	17,213	4,456	22,627	44,296
	38.9	10.1	51.1	100.0
£30,000~ £49,999	16,737	3,169	14,427	34,333
	48.7	9.2	42.0	100.0
£50,000~ £99,999	26,806	3,692	15,880	46,378
	57.8	8.0	34.2	100.0
£100,000~ £249,999	27,148	2,356	9,435	38,939
	69.7	6.1	24.2	100.0
£250,000 이상	23,194	1,222	4,916	29,332
	79.1	4.2	16.8	100.0
전체	120,686	17,596	79,792	218,074
	55.3	8.1	36.6	100.0

주: 하단 수치는 비중임

자료: FCA(2024)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다. 사례

1) NEST Guided Retirement Fund(NGRF)

영국 마스터 트러스트형 공적퇴직연금제도(National Employment Savings Trust; NEST)의 적립금은 1개의 디폴트 펀드(default fund)와 6개의 선택 펀드(choice funds)로 운용된다.²⁶⁾ 가입자는 온라인 대시보드를 통해 7개 펀드 간 쉽게 전환할 수 있다. 디폴트 펀드는 특정 은퇴시점을 목표로 하는데, 예를 들면 2040 Nest Retirement Date Fund는 2040년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CPI+3%를 목표수익률로 설정하고 운용된다. 선택 펀드는 기대되는 투자리스크 수준 및 투자 대상에 따라 Ethical, Higher Risk, Sharia, Lower Growth, 그리고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Pre-Retirement, 은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Guided Retirement로 구성된다. 2020년 7월부터 가입자가 모닝콜 팩(morning call pack)을 받은 후 은퇴연령까지 인출 계획을 알리지 않으면, 적립금 규모가 £10,000 이상일 경우 인출국면 전용(Guided Retirement) 펀드로 배정한다.

〈표 III-17〉 영국 NEST 제공 펀드 특성

구분		개관	목표 수익률	목표 변동성
디폴트 펀드	Retirement Date F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초기(foundation)/성장기(growth)/은퇴준비기(consolidation)로 구성 • 가입초기 낮은 변동성, 이후 30년은 성장추구, 은퇴 10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위험자산 비중 축소 	성장기: CPI+3%	성장기: 13%
선택 펀드	Ethic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리적 관점 투자자 대상 • 4개 자산군 배분: Ethical global equities 67.4%/ Ethical sterling corporation bonds 20.4%/영국 부동산 9.7%/ 영국국채 2.5% 	CPI+3%	13%
	Higher Ris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폴트 펀드(growth phase)보다 더 높은 위험 수용 & 더 높은 투자수익 기대 • 수익추구 자산군의 범위를 분산시켜 극단적인 투자위험 축소 	-	17%

26) 영국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으로 인해 DB제도가 축소되고 DC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마스터 트러스트 역할을 강조함(Department for Work & Pensions 2023b). 마스터 트러스트는 서로 다른 다양한 성장전략을 갖고 있으며, 규모 확대, 제공상품 개선, 제3자와 협상력 발휘 등을 통해 비용 절감 가능함(Department for Work & Pensions 2023a)

〈표 Ⅲ-17〉 계속

구분		개관	목표 수익률	목표 변동성
	Sha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슬람법에 근거한 투자 펀드 기간 경과에 따라 실질 기준 적립금 증대 	-	22%
	Lower Growth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적 관점에서 비용 차감 후 명목가치 보전, 저위험투자로 자금 증식 	-	0.5%
	Pre-Retir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퇴 단계 진입 시 	CPI	은퇴 시점까지 변동성 축소
	Guided Retir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퇴 이후 가입자 니즈에 부합한 투자 자금 용도에 따라 4개 부문(Vault/ Wallet/Safe/Later Life)으로 구분하여 운용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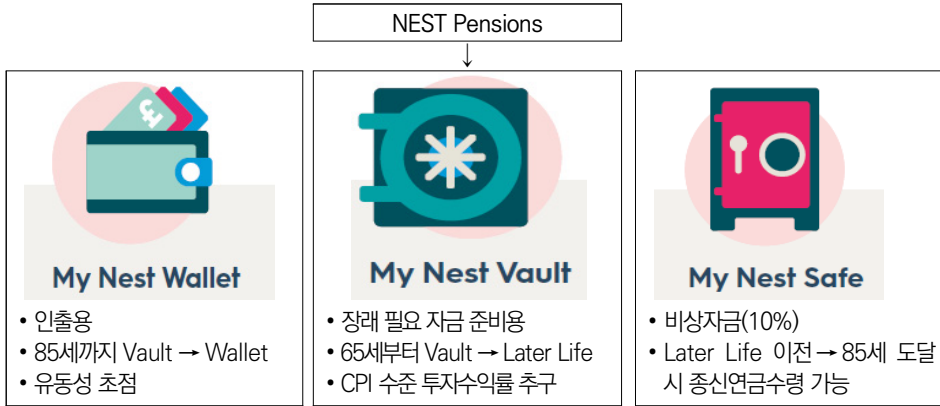
자료: NEST(2021)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NEST 가입자 중 55세 이상 규모가 2025년경 175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은퇴 전용 펀드를 출시하였다. Pre-Retirement펀드는 은퇴 단계 진입 기간 동안 수익 보전을 위해 은퇴시점 10년 전부터 점진적으로 위험자산 비중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NEST Guided Retirement Fund(이하 'NGRF'라 함)는 은퇴 후 즉시 인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 적용된다(김병덕 2021). NGRF는 60~70세 연령의 £10,000 이상²⁷⁾ 적립금 규모를 보유하면서 정기적인 소득흐름을 원하지만 1개 옵션으로 제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은퇴자를 목표로 한다. 은퇴 이후 가입자 니즈에 부합한 투자를 위해 자금 용도에 따라 4개 부문(Vault/ Wallet/Safe/Later Life)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최대 85세까지 필요 자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85세에 연금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부 자금을 따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27) 적립금 규모 £10,000 미만 은퇴자는 Nest Post Retirement Date Fund에서 운용 가능함

〈그림 III-5〉 NEST Guided Retirement Fund 구성



자료: NEST(2019) 자료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Vault 계정은 장래 필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안된 계정이다. 최초 적립금의 일정 수준을 Safe 계정으로 이전하여 비상자금 용도로 비축하고, 65세부터 매월 Vault에서 Later Life 계정으로 적립금의 일부를 이전시켜 85세부터 종신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Safe와 Later Life 계정에 자금을 할당한 후 잔여 적립금을 Vault 계정에서 투자하는데, 목표수익률은 CPI 수준을 추구한다.

Wallet 계정은 Vault에서 이전된 현금인출용 자금이 운용된다. Vault 투자실적에 따라 이전되는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Wallet으로 이전된 금액은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위험 자산에 투자된다.

Safe 계정은 최초 적립금의 10%를 할당한 것으로 예상치 못한 자금수요에 대응한 비상금으로 활용하거나 종신연금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명목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저위험 투자 중심으로 운용한다.

Later Life 계정은 가입자가 평생소득 수령을 원할 경우 85세에 종신연금(single life flat rate annuity)을 구입하는 데 활용된다.

투자위원회는 매년 자금을 검토하여 가입자에게 분배되는 금액의 비율이 지속 가능한지 확인한다.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을 원하지만 한 가지 선택에 얽매이고 싶지 않은 가입자를 위한 솔루션으로 85세까지는 재량인출, 85세 이후부터는 종신연금+비상자금을 통해 종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식이다.

2) Vanguard Asset Management

영국의 Vanguard Asset Management는 디지털 투자 플랫폼을 지향하고, 2020년 SIPP(Self-Invested Personal Pension)에서 은퇴솔루션(Drawdown 및 Pathway)을 출시하였다. 계약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SIPP를 영위함에 따라 FCA 규제에 입각하여 2020년 11월 독립지배구조위원회(IGC)도 설치하였다. 영국의 자기투자형 개인연금인 SIPP는 개인이 직접 투자 자산을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퇴직연금계좌로 국내 개인형IRP와 유사하다. Vanguard Asset Management 내에 설치된 IGC가 발표한 2020년 연차 보고서(annual report)는 인출국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자는 자문서비스를 받지 않고 퇴직적립금을 인출하려는 가입자에게 “향후 5년 이내에 퇴직적립금으로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4가지 답변 유형에 적합한 4가지 옵션을 제공한다(Vanguard 2021).

가) 옵션 1: 인출 없이 유지할 계획

이 경우는 적립단계와 가장 유사한 경로에 해당한다. 핵심은 잘 분산된 펀드와 인출단계 진입시기 도래에 따른 리스크 축소(de-risking)를 결합하는 것이다. 뱅가드는 투자자가 선택한 은퇴연령과 가장 근접한 목표퇴직펀드(Target Retirement Fund; TRF)를 디폴트옵션으로 지정하지만, 가입자가 원할 경우 변경 가능하다. 디폴트옵션은 단일펀드로 펀드 내에 위험조정 장치가 존재한다. TRF는 멀티에셋펀드이므로 공식적으로 벤치마크를 적용하지 않지만, IGC는 CPI+3% 기준으로 해당 펀드의 가치를 평가한다.

나) 옵션 2: 종신연금 구입 계획

종신연금 구입의 핵심은 실질가치를 보존하는 것이다. 연금 구입 시점에서 투자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격비교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강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병자연금이 적합하다. 이 옵션에 대한 뱅가드의 솔루션은 영국단기투자등급채권인덱스펀드(UK Short-Term Investment Grade Bond Index Fund)에 투자하는 것이다. 가입자가 선택 가능한 여러 유형의 연금상품이 있으며 뱅가드가 제공하는 단일펀드에서 이런 니즈를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어렵다. 연금보험상품을 원할 경우 뱅가드사가 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시장에서 구입하도록 안내한다.

다) 옵션 3: 장기 소득흐름 전환 계획

장기간 소득흐름으로 전환할 경우 핵심은 실질가치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 투자자는 서로 다른 니즈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는 사망시점까지 평생 소득을 원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소득원이 있을 경우 조기소진에 대한 우려없이 다양한 지출패턴에 맞춰 소득을 인출하고자 할 것이다. 뱅가드사 디폴트 펀드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인출하는 것인데, 지속가능한 수준은 투자수익률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장수 가정의 변화 등으로 인해 매년 변동될 수 있다. 수익률순서리스크(sequence risk)로 인해 인출을 시작한 초기 10년간 손실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뱅가드사는 현재 시점과 은퇴일자 시점의 중간에 근접한 TRF를 디폴트 옵션으로 활용한다.

라) 옵션 4: 일시금 인출 계획

일시금으로 인출할 예정인 경우 세금 최소화 및 실질구매력 하락 우려에 초점을 둔다. 디폴트 옵션으로 2019년 출시한 MMF(Sterling Short-Term Money Market Fund)를 제공하는데, 이를 선택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6개월 간격으로 서신을 보내 실질가치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상기시킨다.

마) 디폴트 옵션의 비용

뱅크가드사가 인출국면의 정형화된 옵션에 부과하는 비용은 계좌수수료(account fee)와 펀드운용수수료(fund management fee)로 구성된다. 계좌수수료는 적립금 대비 15bp(연간 최대 한도 £375)이며 펀드운용수수료는 MMF, 단기채권인덱스는 0.12%, TRF는 0.24% 수준이다.

〈표 III-18〉 영국 Vanguard Asset Management Pathways 펀드 수수료

펀드 유형	계좌수수료	운용수수료
옵션 4. Sterling Short-Term Money Market Fund	0.15%	0.12%
옵션 2. UK Short-Term Investment Grade Bond Index Fund	0.15%	0.12%
옵션 1 & 3. Target Retirement Funds	0.15%	0.24%

자료: Vanguard(2021)

사) 소비자보호

Vanguard는 Pathways 솔루션을 선택하는 모든 가입자가 옵션을 이해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Vanguard 컨설턴트와 상담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컨설턴트와의 상담은 인출 프로세스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또한 PensionWise와 상담할 것도 권장한다. 영국에서는 Vanguard 사례와 같이 가입자가 인출방식에 대한 의사결정 전에 가용한 옵션과 이에 내재된 리스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AJBell 2024; NFU Mutual 2024).

3. 호주

가. 인출 관련 제도

1)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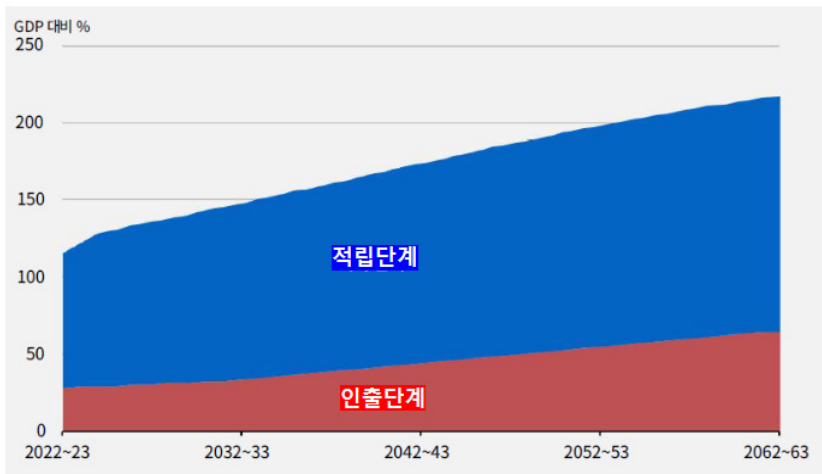
호주 퇴직연금시장은 적립금 규모 3조 6천억 달러로 세계 4위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는 정부, 규제기관, 인가받은 수탁자(Registrable Superannuation Entity; RSE)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에 기인한다. 호주 정부는 퇴직연금제도가 노후소득시스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향후 역할이 더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인출국면에 진입한 가입자 계좌 수가 지난 7년(2015~2022)간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기준 135만 개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2.4% 수준이다. 동 기간 인출국면의 퇴직급여는 2,470억 달러에서 4,780억 달러로 증가했는데 연평균 성장률은 거의 10%에 달한다. 인출국면의 가입자 및 급여 증가는 인구 노령화, 퇴직연금제도 법정 부담률 인상,²⁸⁾ 투자수익 등으로 적립금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향후 인출국면의 계좌 수는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APRA and ASIC 2023).

2023년 호주 재무부가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GDP 대비 퇴직연금적립금(적립단계+인

28) 호주에서 퇴직연금제도 도입 당시 부담률은 3% 수준이었으나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2023년 기준 부담률은 11%이며 2025년에는 12%로 높아질 예정이다

출단계) 규모는 2022년 7월~2023년 6월 기준 116%에서 2062년 7월~2063년 6월 기준 21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III-6>에서 보는 바와 같이 GDP 대비 인출단계의 적립금 규모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Australian Treasury 2023a).

<그림 III-6> 호주 GDP 대비 퇴직연금적립금 규모(적립단계+인출단계)



자료: Australian Treasury(2023a), p. 167

호주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기본 목적을 은퇴 후 소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인출국면 관련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2014년 인출단계의 개선 목적으로 금융 시스템조사(Financial System Inquiry)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인출단계에서 디폴트 상품의 조건으로 '포괄적 퇴직소득상품(Comprehensive Income Product in Retirement: CIPR)'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CIPR 요건으로 제안한 정기적인 소득 제공, 유연성 제공 및 장수리스크 관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디폴트 상품(예: 유연성 높은 계좌 방식 연금과 장수리스크 보장 연금)의 조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CIPR 정책 의도에 대해서는 시장참여자가 동의하였지만 이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2017년에는 혁신적인 소득흐름 규제(innovative income stream regulations)에 대한 공개 초안이 발표되었고, 2018~2019년 퇴직소득상품에 대한 표준화된 공개 협의도 진행되었다.

2021년 퇴직연금산업(감독)법(Superannuation Industry (Supervision) Act)에 퇴직소득

규약(Retirement Income Covenant: RIC)을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범위를 노후를 대비한 적립단계에서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인출단계로 확장하였다(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 2023). 법 개정으로 수탁자는 2022년 7월 1일 이후 퇴직소득전략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퇴직소득 규약은 가입자의 선택과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3가지 즉, 예상 은퇴소득 극대화, 예상 은퇴소득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에 대한 리스크관리, 은퇴기간 동안 필요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약이 추구하는 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특정 퇴직소득 상품 개발 및 제공
- 은퇴기간 동안 더 높은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재량인출 양식 개발
- 은퇴기간 동안 필요한 지출과 목돈 니즈를 계산해주는 계산기
- 공적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 적립금을 소득흐름으로 인출하는 방식, 기타 이용 가능한 소득흐름 유형에 대한 정보제공
- 계산기나 추정치를 통해 은퇴 시 예상소득에 대한 지침 제공

요약하면 퇴직소득규약 정책은 가입자 특성에 부합하게 맞춤형 전략 개발을 강조한 것이다. 퇴직연금기금이 가입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적합한 은퇴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의 노력과 함께 이러한 변화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와 규제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탁자를 감독하는 호주건전성감독청(APRA)과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퇴직소득규약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 왔다. 2023년 7월 규약 이행에 대한 주제별 검토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발표하였다.²⁹⁾ 이 보고서에서는 ‘은퇴국면(retirement phas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은퇴가 시작되거나 개인이 소득원(또는 일시금)으로 연금을 인출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생애 말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2022년 7월~2023년 6월 동안 다양한 특성을 지닌 16개 수탁자를 대상으로 이행 상태를 점검하였다.³⁰⁾ 일부 수탁자는 가입자들이 투자리스크, 인플레이션리스크, 수

29) APRA and ASIC(2023)

30) 이는 규제 대상 연금기금에 속한 45세 이상 가입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것임

익률순서리스크(sequencing risk) 등 인출국면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디폴트 옵션(예: 혼합펀드 또는 라이프사이클펀드)을 개발했고 다른 일부는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개 수탁자는 평생소득보장과 같은 장수리스크 보장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³¹⁾ 2024년 7월에는 APRA와 ASIC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³²⁾

2) 최저 인출률

호주 정부는 연령 구간별 최저 인출률(minimum drawdown rate)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매년 소득흐름으로 전환시킬 적립금 규모, 수령할 소득의 크기(허용되는 최저~최고 한도 범위 내) 및 주기, 연금기금 내 투자 방식 등을 선택해야 한다. 최저 인출률(minimum drawdown rate)은 연령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2022년 7월~2023년 6월 기준 55~64세는 4%, 65~74세 5%, 75~79세 6% 등이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최저 인출률도 높아지는데, 가장 인출률이 높은 연령 구간은 95세 이상으로 14%이다. 계좌 기반 연금의 경우 적립금 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60세 이후 인출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된다. 인출주기는 월/분기/반기/연 기준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적립금이 소진되거나 잔여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인출할 수 있다. 연금수령 중 사망하면 잔여 적립금은 사전에 지정한 수익자에게 귀속되거나 상속자산에 포함된다.

〈표 III-19〉 호주 연령구간별 최저 인출률

연령 구간	55~64	65~74	75~79	80~84	85~89	90~94	95+
최저인출률	4%	5%	6%	7%	9%	11%	14%

자료: moneysmart(<https://moneysmart.gov.au>)

31) 호주에서 평생소득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Allianz Retire +, AMP North, Australian Retirement Trust (QSuper), Challenger, Generation Life 등임

32) APRA(2024b)

나. 시장 현황

1) 인출옵션

① 계좌 기반 연금(재량인출)

호주에서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활용하여 소득흐름으로 전환하기 위한 인출옵션은 크게 계좌 기반 연금(account-based pension 또는 allocated pension³³⁾)과 연금보험(annuity)으로 구분된다. 법에서 정한 인출개시연령(preservation age)에 도달하면 소득흐름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인출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55~60세 사이에 도래한다. 구체적인 최저인출연령은 1960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는 55세이며, 그 후 출생자들은 출생연도가 1년 늦을수록 최저인출연령도 1년 늦어져 1964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는 60세로 설정된다.

② 연금보험

연금보험은 가입자에게 사망시점(종신형)까지 또는 일정기간(확정기간형) 동안 정기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연금보험의 일반적인 특징은 주식시장 변동과 무관하게 정기적인 연금액을 보장하며,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연금액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연금보험 제공자가 장수리스크와 투자리스크를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미래 소득을 확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③ 점진적 은퇴진입 전략

호주에서는 점진적인 은퇴로의 진입을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단계(Transition To Retirement: TTR)을 두고 있다. 인출개시연령(55~60세)이 도래하면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부를 계좌 기반 연금으로 이체하여 연금을 수령할

33) 계좌 기반 연금의 일종인 allocated pension은 주로 산업형연금기금과 소매형연금기금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인출한도가 최소 및 최대 기대여명을 기반으로 산출됨. 연금 수급자는 산출된 최소 및 최대 임계값 사이에서 소득을 인출할 수 있음. 2007년에 account-based pension이 도입되어 allocated pension을 대체하게 되었으나 allocated pension이라는 용어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음

수 있다. TTR 전략은 ‘연금소득+근로소득’을 결합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부담금을 퇴직계좌에 계속 적립하면서 인출계좌에서 연금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시장추이

호주 감독당국(APRA)이 발표한 2015년 7월~2023년 6월 연금 방식으로 수령한 계좌의 추이를 정리하면, <표 III-20>, <표 III-22>와 같다. <표 III-20>은 지급옵션별 계좌 수와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대부분 계좌가 재량인출에 속하는 계좌 기반 방식(account based pension+allocated pension)으로 수령하며, 연금보험(annuity) 비중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시계열 추이에서도 연금보험 선택 비중은 2015년 7.2%에서 2023년 5.6%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좌 기반 연금(account based pension+allocated pension) 비중은 동 기간 73.8%에서 80.7%로 높아졌다.

<표 III-20> 호주 지급방식별 계좌 수 추이

(단위: 천 좌,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Account based pension	543	574	634	714	762	796	748	788	863
	36.6	37.3	39.4	44.0	45.4	47.4	43.7	46.1	49.0
Allocated pension	552	540	564	522	539	513	596	582	559
	37.2	35.1	35.1	32.1	32.1	30.5	34.8	34.1	31.7
Annuity	107	110	105	101	101	101	100	99	99
	7.2	7.2	6.5	6.2	6.0	6.0	5.8	5.8	5.6
기타 pension	134	146	143	156	156	157	168	159	146
	9.0	9.5	8.9	9.6	9.3	9.3	9.8	9.3	8.3
TTR	149	167	162	131	120	114	100	81	94
	10.0	10.9	10.1	8.1	7.2	6.8	5.8	4.7	5.3
전체	1,485	1,538	1,608	1,624	1,678	1,681	1,713	1,709	1,76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9	100.0	100.0

주: 1) 전년 7월~당년 6월 기준: 2021년까지는 가입자 4인 이상이고 2022년 이후는 가입자 6인 이상임

2) 하단 수치는 전체 평균값 대비 상대 크기임

자료: APRA(2024a)

〈표 III-21〉은 지급옵션별 평균 적립금 규모(average pension members' benefits)와 전체 적립금 대비 각 옵션별 상대 규모를 비교한 것이다. 계좌 기반 연금을 선택한 가입자의 적립금 규모는 평균값을 상회하는데 비해 연금보험을 선택한 가입자의 적립금 규모는 평균값 대비 50% 수준이다. 시계열 추이에서도 연금보험을 선택한 가입자의 평균 적립금 규모는 전체 대비 낮아지는 추이를 보인다. 평균 적립금 규모를 계좌 기반 연금과 연금보험 간 비교하면, 연금보험은 계좌 기반의 62%(2015)~44%(2021) 수준에 불과하다.

〈표 III-21〉 호주 연금수령 옵션별 가입자의 평균 적립금 규모

(단위: 천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Account based pension	265	270	279	287	298	285	322	305	314
	105.2	104.7	104.5	102.0	102.7	98.6	100.2	93.6	91.8
Allocated pension	257	274	298	328	332	343	372	398	433
	102.1	106.1	111.5	116.5	114.5	118.7	115.6	122.3	126.5
Annuity	160	167	154	151	152	147	152	162	177
	63.7	64.9	57.6	53.6	52.5	50.7	47.4	49.6	51.8
기타 pension	264	247	243	261	277	296	324	341	359
	104.7	96.0	90.9	92.7	95.3	102.4	100.7	104.7	104.9
TTR	240	235	209	190	184	191	184	176	210
	95.2	91.0	78.0	67.7	63.2	66.1	57.2	54.0	61.3
전체	252	258	267	282	290	289	321	326	34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9	100.0	100.0

주: 1) 전년 7월~당년 6월 기준; 2021년까지는 가입자 4인 이상이고 2022년 이후는 가입자 6인 이상임

2) 하단 수치는 전체 평균값 대비 상대 크기임

자료: APRA(2024a)

〈표 III-22〉는 평균 연금급여 규모(average pension benefit payments)와 전체 연금급여 대비 각 옵션별 상대 규모를 비교한 것이다. 계좌 기반 연금으로 수령 시 급여 규모는 평균값을 하회하는데 비해 연금보험의 연금 급여는 평균값 대비 200% 수준에 달한다. 이는 소비할 재원 마련 목적의 소득흐름 측면에서 연금보험의 유용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평균 연금 급여 규모를 비교하면, 연금보험이 계좌 기반 연금의 1.87배(2020)~2.45배(2023) 수준이다.

〈표 Ⅲ-22〉 호주 연금수령 옵션별 가입자의 평균 연금급여 규모

(단위: 천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Account based pension	16	16	18	18	18	19	16	17	17
	82.6	81.1	85.3	82.5	82.4	83.6	74.5	75.7	76.0
Allocated pension	20	22	22	24	24	26	24	25	25
	102.5	107.7	104.7	110.2	110.3	114.2	114.9	113.7	114.6
Annuity	37	39	40	42	44	40	46	47	49
	195.4	193.1	194.9	199.0	200.9	178.6	217.9	213.3	223.0
기타 pension	23	23	24	24	25	25	24	25	27
	120.0	113.6	115.9	113.5	113.5	110.6	113.0	114.7	121.4
TTR	13	13	13	13	14	15	13	15	16
	67.6	66.8	65.5	62.6	63.1	66.7	61.7	69.9	71.3
전체	19	20	21	21	22	22	21	22	2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9	100.0	100.0

주: 1) 전년 7월~당년 6월 기준: 2021년까지는 가입자 4인 이상이고 2022년 이후는 가입자 6인 이상임

2) 하단 수치는 전체 평균값 대비 상대 크기임

자료: APRA(2024a)

호주 정부는 향후 계좌 기반 연금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았다. GDP 대비 비중은 2022년 7월~2023년 6월 기준 2.4%에서 2062년 7월~2063년 6월에는 5.6%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³⁴⁾

다. 인출 솔루션 사례

1) 재무부 표준상품 예시

호주 재무부(2023)는 인출국면에 적합한 상품으로 표준화된 상품개발을 독려하고, 번들형 퇴직상품(bundled retirement product)을 〈그림 Ⅲ-7〉과 같이 예시하였다. 번들형 퇴직상품은 계좌 기반 방식의 유연성,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비상자금(capital reserve), 평균수명 이후 고연령 시기를 위한 거치형 소득흐름으로 구성된다.

34) Australian Treasury(2023a)

〈그림 III-7〉 호주 번들형 인출상품의 구성요소



계좌 기반 소득(account based pension income stream)



비상자금 (capital reserve)



고연령 거치소득흐름 (deferred income stream)

자료: Australian Treasury(2023b)

계좌 기반 소득흐름은 적립기간 동안 보유한 계좌를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본인이 선택한 연금개시 연령까지 기본 인출률(default drawdown)을 적용하여 인출한다. 연금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비상자금(capital reserve)'을 인출할 수 있다. 이를 은퇴기간 동안 예상하지 못한 비용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만약 가입자가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면 잔여 금액은 사망급부로 지급된다. 거치(이연) 소득흐름은 장수리스크를 보장한다. 가입자가 거치연금 지급이 개시되는 연령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가능한 가장 늦은 연령은 90세이다. 90세 이전에도 개시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비용이 높아진다.

호주 정부는 연금기금 내에서 계속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개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종신 소득흐름을 제공하는 예시를 보였다. 가입자 본인의 선호에 따라 투자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투자성과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디폴트 투자방식은 연령과 투자기간을 고려한 혼합형(balanced)이며, 연금기금 내에서 장수리스크 보장을 위한 투자를 수행한다. 종국적으로 정부는 가입자의 기대여명이 예상보다 체계적으로 높아질 위험(장수리스크)의 최종 인수자가 된다. 아울러 연금단체 내 바람직하지 않은 사망률의 상호보조(사회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집단이 여건이 양호한 집단을 보조)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공평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유도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번들형 인출상품의 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최저 적립금: \$100,000
- 디폴트 방식을 의무 제공해야 하는 적립금 규모: \$150,000 이상
- 거치(이연) 소득 개시 연령: 디폴트 90세, 65~90세 가능하지만 높은 비용 부담
- 구입 방식: 일시납 또는 연납 보험료 지불(청약철회 기간 부여)
- 비상준비금: \$50,000

2) 평생소득계좌: AMP MyNorth Lifetime

호주 금융회사인 AMP(Australian Mutual Provident Society)는 투자 및 자산관리 플랫폼 중 하나로 'MyNorth'를 운영하고 있다. 동사는 2022년 7월 도입된 퇴직소득규약 실행 차원에서 2022년 9월 평생소득 솔루션(MyNorth Lifetime) 제품군을 출시했다. 이를 통해 자산관리통합 플랫폼으로 다양한 투자 옵션, 저축계좌 및 보험상품 등을 제공한다.³⁵⁾ 평생소득 솔루션은 세 가지 유형(Lifetime Super/Deferred Lifetime Income/Lifetime Income)으로 구성되며, 서로 다른 목표를 설정하여 고안되었다. 각 계좌는 독립적으로도 작동할 수 있지만, 번들형으로 사용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계좌 기반 연금의 유연성에 장수리스크 보장을 추가함으로써 평생 동안 높은 수준의 소득제공을 목표로 한다.³⁶⁾

- 평생소득계좌 = 유연성 추구 계좌 기반 연금 + 확실성(보장성) 추구 종신연금

평생소득계좌는 장수위험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가입자가 투자전략, 자산배분, 증권선택 등 중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계좌 내 적립금의 용도는 3가지 항목(사망급부, 중도해지급부, 생존급부)으로 구성된다. 이 상품의 핵심은 생존기간 동안 보험사로부터 평생소득(연간 보너스)를 수령하고, 그 대가로 사망 또는 해지 시 연금계좌의 잔여 적립금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이다. 호주 정부는 기초연금(Age Pension) 적용 대상 선정 시 이 상품 가입자 평가금액의 60%만 자산조사와 소득조사에 반영(40% 제외)함으로써 가입유인을 제공한다. MyNorth Lifetime을 구성하는 계좌 유형별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표 III-23>과 같다.

35) MyNorth Lifetime은 2022년 Plan for Life Excellence Awards에서 거치 종신 투자 부문 수상, 혁신 부문 수상, 2023년 세계연금정상회담에서 연금기금 설계 및 개혁상 수상, 2023년 Chant West 최우수 펀드: 혁신 부문 수상, 2023년 최우수 은퇴 솔루션 사업자(Investment Trends' Best Retirement Solutions Provider) 부문 수상, 2024년 Chant West 최우수 펀드: 종신 상품 부문을 수상하였음

36) MyNorth Lifetime 옵션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는 적립금의 0.10%(연 \$500 한도)임

〈표 III-23〉 호주 MyNorth Lifetime 계좌 구성

계좌 유형	적립국면		인출국면
	Lifetime Super	Deferred Lifetime Income	Lifetime Income
가입연령	64세 10개월까지	60~89세	60~89세
투자옵션 선택	가능	가능	가능
부담금 납부	가능	가능	불가
투자수익 비과세	불가	가능	가능
연간 보너스 (annual bonus) ^{주)}	불가	가능	가능
부분 인출(일시금)	가능(한도 없음)	가능(법정 한도 내)	불가
소득인출 (income payments)	불가	불가	유연한 소득 (최대 인출률 한도)
사망/해지 급부(benefit)	적립금	가입자 명시적으로 사망/해지 급부금 설정(opt-in) 가능, 명시적 설정 없으면 디폴트 값(사망/해지 급부 없음) 적용	
자문보수(advice fees)	가능	가능	가능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자산조사	가입 금액의 60%	가입 금액의 60%
	소득조사	N/A	N/A
			가입 금액의 60%

주: 연간 보너스는 평생소득 수령하기 위한 재원으로 생명보험회사에서 급부로 지급함
 자료: AMP(2023)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함

① MyNorth Lifetime Super

MyNorth Lifetime Super는 은퇴 시 평생 소득원으로 전환되도록 고안된 새로운 유형의 적립 계좌이다. 개설 가능한 연령은 64세 10개월까지이며 완전한 인출조건을 충족하지 않아야 한다. 이 계좌는 일반 퇴직연금 계좌와 비슷하게 운영되지만, North 플랫폼의 광범위한 투자 메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적이다. 현재 규제상 만 65세 도달 후에는 Lifetime Super 계좌를 보유할 수 없어 만 65세가 되기 전에 의사결정해야 한다. 만 60세 이상인 경우 Lifetime Super 계좌를 거치형 평생소득(Deferred Lifetime Income)/평생소득(Lifetime Income) 또는 기타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② MyNorth Deferred Lifetime Income

거치형 평생소득계좌인 MyNorth Deferred Lifetime Income은 최저인출연령인 만 60세 이후 인출 기능과 부담금 납부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계좌 개설 가능 연령은 만 60~89세이며, 계좌 기반 연금계좌의 투자성과를 통해 시장성과와 연계된 소득을 인출할 수 있다. 변동하는 투자 수익에 따라 적립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인출 가능한 소득금액도 매년 달라질 수 있다.

거치형 평생소득계좌는 평생소득계좌(Lifetime Income)로 전환하여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도인출로 간주하지 않는다. 최대 거치할 수 있는 연령은 99세이며 명시적으로 거치(이연)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5년 후에 연금지급이 개시된다. 거치형 평생소득 계좌는 부분 인출(일시금)이 가능하지만, 평생소득계좌로 이전되면 부분 인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보험사에서 평생소득 지급재원이 되는 연간 보너스를 보장하며, 배우자 옵션, 사망/해지 급부(death/exit benefit)도 옵트 인(opt-in) 방식으로 가입자가 설정할 수 있다.

③ MyNorth Lifetime Income

평생소득계좌는 유연하고 통제 가능한 인출전용 계좌이다. 인출금액은 적립금에 연간 최대 인출률(annual withdrawal and income rate)을 곱해서 산출한다. 최대 인출률은 생존과 사망에 대한 법적·의학적 정의를 사용하여 평생 지급될 수 있도록 산출한 것인데, 장애 여건이 변경되면 최대 인출률도 수정될 수 있다. 최대 인출률은 디폴트 값이며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이 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여 인출할 수 있다. 디폴트 값은 '투자수익률 6%, 사망/해지 급부 없음' 가정 하에 산출한 것으로 만약 실제 투자수익률이 6%를 초과하거나 하회하면 인출금액도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거치형 평생소득 또는 평생소득 계좌 가입자가 배우자 옵션(Couples Option)을 선택하면 연금보험의 연생방식으로 본인 사망 후 배우자에게 평생소득이 이전된다. 이 옵션은 배우자가 만 50세 이상일 때만 선택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인출률은 가입자 1명 인출률 대비 93% 수준이다. <표 III-24>는 평생소득 계좌의 연령별 인출률을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만 60세가 본인만 평생소득 수령 시 최대 인출률은 7.0822%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최대 인출률도 높아져 만 99세에는 24.4758%가 된다. 만약 본인

과 배우자가 연생방식으로 평생소득을 수령한다면, 최대 인출률은 만 60세가 6.6356%이며, 만 99세는 23.5938%로 낮아진다.

〈표 III-24〉 호주 MyNorth Lifetime 최대 인출률

(단위: %)

연령	본인	본인+ 배우자	연령	본인	본인+ 배우자	연령	본인	본인+ 배우자	연령	본인	본인+ 배우자
60	7.0822	6.6356	70	8.1837	7.1601	80	10.4676	9.4232	90	15.4305	14.3861
61	7.1621	6.6922	71	8.3419	7.5863	81	10.8092	9.7409	91	16.1780	15.1583
62	7.2473	6.7532	72	8.5120	7.7240	82	11.1778	10.0903	92	16.9821	15.9917
63	7.3384	6.8190	73	8.6953	7.8744	83	11.5760	10.4743	93	17.8455	16.8909
64	7.7458	6.8901	74	8.8930	8.0389	84	12.0072	10.8957	94	18.7726	17.8579
65	7.5401	6.9669	75	9.1067	8.2191	85	12.4727	11.3573	95	19.7689	18.8935
66	7.6518	7.0501	76	9.3380	8.4167	86	12.9755	11.8628	96	20.8588	20.0064
67	7.7713	7.1403	77	9.5884	8.6337	87	13.5195	12.4157	97	22.0165	21.1621
68	7.8993	7.2381	78	9.8591	8.8722	88	14.1076	13.0190	98	23.2333	23.3636
69	8.0365	7.3444	79	10.1514	9.1345	89	14.7434	13.6749	99	24.4758	23.5938

주: 투자수익률 6% 가정임

자료: AMP(2023)

④ 평생소득 보험료 산출 방식

평생소득계좌 가입자에게 평생소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간 보너스(annual bonus) 금액을 해당 계좌에 채워 넣어야 한다. 이 금액은 가입자가 생명보험사(TAL Life Limited)에 납부하는 보험료의 반대급부로 수령한다. 연간 보너스는 가입자 연령(또는 배우자 옵션 선택 시 낮은 연령) 기준으로 매일 산출되어 회계연도 말(6월 30일)까지 지급된다. 생명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다음 산식으로 산출된다.

- 생명보험회사 납부 보험료=사망/해지 시점 계좌적립금 - 사망/해지 급부금

〈표 III-25〉는 MyNorth Lifetime 연간 보너스 수준을 연금수령자 수(본인, 본인+배우자)와 연령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예시 값이다. 고연령 구간인 85세 이후에는 보너스율이 크게 높아진다.

〈표 III-25〉 호주 MyNorth Lifetime 연간 보너스율(annual bonus rates)

(단위: %)

연령	본인	본인+배우자	연령	본인	본인+배우자	연령	본인	본인+배우자	연령	본인	본인+배우자
60	0.1958	0.0033	70	0.5592	0.0379	80	1.6948	0.4747	90	5.7007	3.9832
61	0.2180	0.0042	71	0.6205	0.0488	81	1.9210	0.6041	91	6.4516	4.7376
62	0.2416	0.0056	72	0.6889	0.0632	82	2.1729	0.7675	92	7.2936	5.5805
63	0.2665	0.0072	73	0.7657	0.0823	83	2.4504	0.9698	93	8.2226	6.5373
64	0.2947	0.0091	74	0.8481	0.1069	84	2.7757	1.2178	94	9.2462	7.6212
65	0.3270	0.0116	75	0.9414	0.1376	85	3.1402	1.5110	95	10.2767	8.7929
66	0.3638	0.0147	76	1.0504	0.1764	86	3.5431	1.8590	96	11.6280	10.3007
67	0.4055	0.0187	77	1.1787	0.2266	87	3.9998	2.2751	97	13.1647	11.8833
68	0.4521	0.0239	78	1.3296	0.2905	88	4.5113	2.7682	98	14.9919	13.6538
69	0.5030	0.0300	79	1.4979	0.3719	89	5.0887	3.3434	99	17.0483	15.6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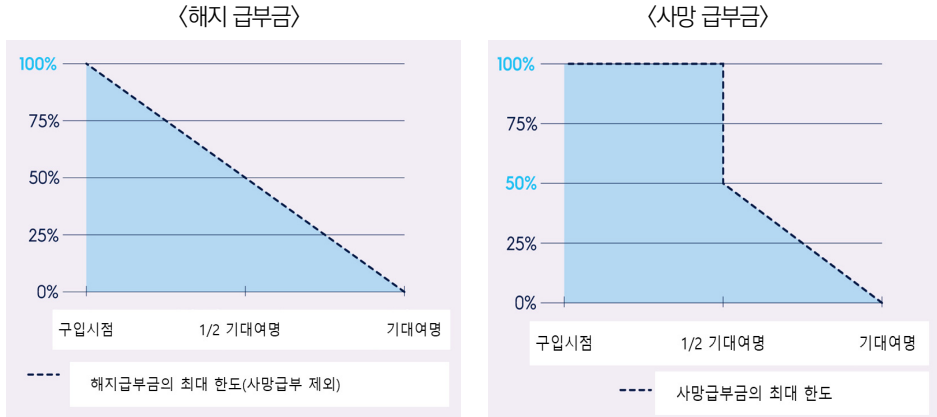
주: 투자수익률 6% 가정함

자료: AMP(2023)

평생소득 지급을 위한 보너스 재원은 사망자와 해지자의 적립금 중 일부로부터 발생한다. 사망/해지로 인한 중도 탈퇴자의 급부는 가입 시 명시적으로 선택(opt-in)하는데, 명시적 선택이 없으면 디폴트 값('0')으로 설정된다. 만약 가입자가 사망/해지 급부를 선택하면 적립금에서 사망/해지 급부금을 차감한 잔여금액을 생명보험사에 보험료로 납부하며, 동급부를 선택하지 않으면 적립금 전부를 보험료로 납부한다. 따라서 사망/해지 급부를 설정하면 납입 보험료 규모가 축소되어 수령하는 연간 보너스율도 낮아지게 된다.

다만, 호주 정부는 퇴직연금법(Superannuation Industry (Supervision) Act 1993; SIS)에서 인출한도규정(Capital Access Schedule)을 두어 사망/해지 급부금의 최대한도를 제한한다. 〈그림 III-8〉은 사망/해지 급부금의 최대한도 설정방식으로 구입시점부터 기대여명을 고려하여 설정하는데, 설정방식은 사망과 해지 간 상이하다. 해지 급부금은 구입시점부터 기대여명까지 수령가능금액 대비 선형 감소하는 방식이다. 사망 급부금은 기대여명의 1/2 시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수령가능금액 전부를 최대한도로 설정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해지 급부금과 동일하게 선형 감소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그림 III-8〉 MyNorth 인출상품 사망/해지 급부금 설정 한도



주: 세로축은 수령가능금액 대비 비율이며,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이 수준보다 낮게 설정 가능함
 자료: AMP(2023)

4. 일본

가. 인출 관련 제도

1) 확정급여형의 인출 관련 제도

일본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노령급부금 또는 탈퇴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DB법³⁷⁾ 제29조 제1항). 이 두 가지 급여 외에도 규약에서 정하면 장해급부금과 유족급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DB법 제29조 제2항). DB형에서 급여를 수령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규약에서 정하는 급여 수령요건은 DB법 등의 규정에 위반해서도 안 되며, 특정한 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이어서도 안 된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규약으로 정해진 노령급부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³⁸⁾을 충족해야 한다(DB법 제36조). 첫째, 60세 이상 70세 이하의 규약으로 정해

37) 공식 명칭은 확정급부기업연금법(確定給付企業年金法)이며, 통상 DB법으로 부름

진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될 것. 둘째, 시행령으로 정해진 연령 이상, 첫째의 규약으로 정해진 연령 미만의 규약으로 정해진 연령에 도달한 날 이후에 해당 사업소에 사용되지 않게 되었을 때 지급되는 것을 규약으로 정해 놓은 경우. 셋째,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령은 50세 미만이어서는 안 될 것. 넷째, 규약에서 20년을 초과하는 가입자 기간을 노령급부금을 수령하는 요건으로 정해서는 안 될 것.

노령급부금의 지급방법은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DB법 제38조 제1항). 다만, 규약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해 규약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노령급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DB법 시행령 제29조). 첫째, 연금으로 지급하는 노령급부금에 대한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둘째, 노령급부금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해 일시금으로 지급될 것. 셋째, 일시금 선택은 수급권을 청구할 때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노령급부금의 지급을 시작한 후 5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한해 이루어질 것. 다만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 시작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다.

노령급부금을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이다(DB법 시행규칙 제30조). ① 수급권자 또는 그가 속한 가구의 생계를 주로 유지하는 자가 지진, 풍수해, 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인해 주택, 가재도구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해 심각한 손해를 입은 경우. ② 수급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③ 수급권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중대한 장애를 입었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 ④ 기타 ③과 유사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연금급여의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종신 또는 5년 이상에 걸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DB법 제33조). 시행령(제25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다. 첫째, 보장기간을 정하는 경우 2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둘째,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월은 매년 일정한 시기로 정할 것.

급여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약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DB법 제32조 제1항). DB형의 급여액은 가입자 기간 또는 해당 가입자 기간에 대한 급여액,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비추어 적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서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

38) 이를 노령급부금 지급 시작 요건이라고 함

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특정 개인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 DB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에서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노령급부금의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해당 노령급부금의 전부를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노령급부금 중 보장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보장기간은 연금급여 지급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해당 연금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평소에 생존하고 있었다면 지급되었을 연금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장된 기간을 말한다. DB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급여액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의 4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가입자 기간에 따라 정해진 액수에 규약으로 정해진 수치를 곱하는 방법, ② 가입자였던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급여의 액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평균액 또는 누적액에 대해 가입자 기간에 따라 정해진 비율 및 규약으로 정해진 수치를 곱하는 방법, ③ 가입자였던 기간 중에서 규약으로 정해진 기간마다 각 기간에 대해 정액 또는 급여의 액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누적액을 규약으로 정해진 수치로 나누는 방법, ④ 기타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방법. ①~③에서 말하는 규약으로 정한 수치는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시작 시 수급권자의 연령, 지급기간, 보장기간(정한 경우에 한함) 및 기타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액수는 해당 급여가 지급되는 동안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액수를 개정할 수도 있다. 이 개정은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률 또는 국채수익률, 기타 후생노동성에서 정하는 바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확정기여형의 인출 관련 제도

일본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노령급부금, 장해급부금, 사망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DC법³⁹⁾ 제28조). 노령급부금의 지급방법으로는 연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금규약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DC법 제35조).

DC형 가입자가 노령급부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통산 가입기간⁴⁰⁾이 DC법에서 정하는

39) 공식 명칭은 확정각출연금법(確定拠出年金法)이며, DC법은 그 애칭임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DC법 제33조). 즉, 60세 도달 시점⁴¹⁾에 통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60세부터 75세 사이에 노령급부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 시기는 가입자가 결정할 수 있다. 통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10년 이상인 자에 비해 통산 가입기간의 길이에 따라 노령급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연령이 늦어진다(〈그림 Ⅲ-9〉 참조). 다만 DC형 가입자였던 자 중 60세 이상 75세 미만인 자는 통산 가입기간이 없더라도 DC형 가입자가 된 날 또는 후생노동성이 정하는 날부터 가산하여 5년이 경과한 날부터 노령급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림 Ⅲ-9〉 일본의 통산 가입기간별 노령급부금 청구 가능 연령

▶ 통산가입자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급권을 취득하는 연령이 달라짐.



자료: 三井住友信託銀行(2022)

노령급부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연금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연금규약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DC법 제 35조). 연금급여의 지급기간은 이를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월의 다음 월부터 시작하여 권리가 소멸⁴²⁾한 월까지 지급해야 한다.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월에 대해서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업형연금 가입자 또는 기업형연금 가입자였던 자 중 해당 기업형연금에 개인별 관리자산이 있는 자가 노령급부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75세에 도달한 경우, 자산관리기관은 운영관리기관의 판단에 따라 노령급부금을 지급한다(DC법 제34조).

40) 통산 가입기간은 기업형연금 가입기간, 기업형연금 운영지시자 기간, 개인형연금 가입기간, 개인형연금 운영지시자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자가 60세에 도달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월 이전의 기간에 한함

41) 60세 생일의 전날

42)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장해급부금 수급권자가 된 경우, 개인별 관리자산이 없어진 경우 등에는 수급권이 소멸됨(DC법 제36조)

3) 인출단계의 세제

노령급부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전액 잡소득으로 과세한다. DB형 연금에서 직원의 기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 기여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잡소득으로 과세한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공적연금 등의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DB형에서는 퇴직에 기인한 경우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퇴직 이외의 사유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시소득으로 과세한다. DB형에서 직원의 기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 기여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 또는 일시소득으로 과세한다. DC형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에 기인하지 않더라도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다만 이는 노령급부금 수급요건에 해당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2021년 8월 3일 '연금제도의 기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DC형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의 과세 규칙이 2022년 4월부터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다. 2022년 4월부터 연금수급 시작 연령의 선택지가 확대됨에 따라 DC형 연금을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언제 받을지가 중요해졌다.

여러 개의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 공제대상 기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같은 해 및 이전 해를 포함한 '4년 이내'의 여러 퇴직금 수령을 대상으로 퇴직소득 공제액을 조정, 즉 축소하게 되어 있다. 한편 DC형 연금의 노령급부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 한해서는 일반적인 퇴직금 수령에 적용되는 '4년 이내'가 아니라 '14년 이내'까지가 조정대상이다. DC형 연금의 일시금 수령에 대해서만 처리가 다른 이유는 DC형 연금의 일시금은 수급 시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급 시기를 조정해 많은 금액의 퇴직소득 공제를 받지 않도록 '14년 이내'가 조정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DC형 연금의 일시금 수령 최종 연령이 70세에서 75세로 연장됨에 따라 '14년 이내'가 '19년 이내'로 5년 연장되게 되었다.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및 DC형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의 소득세액은 과세소득의 일종인 '퇴직소득'과 퇴직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소득세율(5~45%, 부흥 특별소득세 별도 가산)에 의해 결정된다.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이며, 소득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이 일반적인 과세소득이다. 퇴직소득도 기점은 수입, 즉 퇴

직급 등의 수령액이지만 퇴직금에는 필요경비가 들지 않으므로 퇴직금 등의 수령액에서 직접 퇴직소득 공제액을 공제한다.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친 근로의 대가를 사후에 지급하는 특성과 퇴직 후 생활의 원천으로 충당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된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임원이 퇴직금을 받는 경우나 임원이 아니더라도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이면서 많은 퇴직금을 받는 경우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퇴직금 등의 수령액에서 퇴직소득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의 절반이 퇴직소득이 된다.

- 퇴직소득 = (퇴직금 등의 수령액 - 퇴직소득 공제액) × 1/2

퇴직소득 공제액이 많을수록 퇴직소득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가 적어진다. 퇴직소득 공제액은 원칙적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퇴직금 등의 수령액이 같다면 근속연수가 길수록 납부하는 소득세는 적어진다.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 공제액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 근속연수가 20년 이하인 경우의 퇴직소득 공제액 = 40만 엔 × 근속연수
- 근속연수가 20년 초과인 경우의 퇴직소득 공제액 = 800만 엔 + 70만 엔 × (근속연수 - 20년)

다만 같은 해에 여러 퇴직금 등을 수령했거나 이전 해를 포함한 '수년 이내'에 퇴직금 등을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 공제액을 산정하는 근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중복되더라도 퇴직소득 공제대상 기간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정하는 제도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은 일반적인 퇴직금의 경우 실제로 직원으로 근무했던 기간을 의미하지만 DC형의 일시금에 대해서는 DC형 연금 납입기간이 된다.

DC형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령이 60세부터 70세까지였던 2022년 4월 이전에는 DC형 연금을 언제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60세에 받았던 일반적인 퇴직금은 같은 해나 이전 해를 포함한 '14년 이내'에 해당되므로 퇴직소득 공제대상 기간의 중복 사용을 피하기 위한 조정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DC형 연금의 일시금 수령 최종 연령이 70세에서 75세로 연장된 2022년 4월 이후에는 과세규칙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74세가 되는 해까지 DC형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60세에 받았던 일반적인 퇴직금은 같은 해 또는 이전 해를 포함한 '14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 공제대상 기간의 중복 사용을 피하기 위한 조정 대상이 된다. 반면에 75세가 되는 해에 DC형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과세규칙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60세에 받았던 일반적인 퇴직금은 15년 전이 되므로 이전 해를 포함한 '14년 이내'에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소득 공제대상 기간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2022년 4월 이후 '14년 이내'가 '19년 이내'로 과세규칙이 변경됨에 따라 75세가 되는 해에 수령하더라도 퇴직소득 공제대상 기간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2022년 4월 이후 DC형 연금의 일시금 수령 최종 연령이 70세에서 75세로 연장되고 과세규칙도 '14년 이내'에서 '19년 이내'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70세부터 74세가 되는 해에 DC형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55세가 되는 해에 받았던 일반적인 퇴직금은 이전 해를 포함한 '19년 이내'에 해당되므로 퇴직소득 공제대상 기간의 중복 사용을 피하기 위한 조정대상이 된다. 그러나 75세가 되는 해에 DC형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55세에 받았던 일반적인 퇴직금은 20년 전이 되어 이전 해를 포함한 '19년 이내'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소득 공제대상 기간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시장 현황

1) 확정급여형의 급여종류별 지급 현황

2021년 기준(2022년 3월 말) DB형의 노령급부금 지급건수는 약 263.5만 건, 지급액수는 2조 7,347억 엔이다. 지급건수 기준으로 연금의 비중은 2021년 95.1%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소폭이지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일시금 지급건수는 2017년 약 20만 8천 건에서 2021년 약 13만 건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노령급부금 지급건수에서 차지하는 일시금의 비중 역시 2017년 8.2%에서 2021년 4.9%로 줄어들었다.

DB형 노령급부금 총지급액은 2017년 2조 6,105억 엔에서 2021년 2조 7,347억 엔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서 연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2017년 1조 7,735억 엔에서 2021년 1조 7,333억 엔으로 소폭이지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노령급부금 지급총액에서 차지하는 연금의 비중 역시 2017년 67.9%에서 2021년 63.4%로 소폭 줄어든 모습이다.

〈표 Ⅲ-26〉 일본 DB형 노령급부금의 연금 및 일시금 지급 현황

(단위: 천 건, 억 엔,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건수	연금	2,335.2 (91.8)	2,505.8 (91.7)	2,500.7 (94.1)	2,495.2 (95.2)	2,504.8 (95.1)
	일시금	208.1 (8.2)	228.2 (8.3)	157.1 (5.9)	124.8 (4.8)	130.0 (4.9)
	계	2,543.3 (100.0)	2,734.0 (100.0)	2,657.8 (100.0)	2,620.0 (100.0)	2,634.8 (100.0)
금액	연금	17,735 (67.9)	17,811 (65.5)	17,558 (64.4)	17,320 (64.6)	17,333 (63.4)
	일시금	8,370 (32.1)	9,374 (34.5)	9,691 (35.6)	9,508 (35.4)	10,014 (36.6)
	계	26,105 (100.0)	27,185 (100.0)	27,249 (100.0)	26,828 (100.0)	27,347 (100.0)

주: () 내의 숫자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厚生労働省(<https://www.mhlw.go.jp/content/12500000/000712299.pdf>) 자료를 이용해 작성함

2) 확정기여형의 급여종류별 지급 현황

최근 5년간 일본의 기업형 DC에서 노령급부금을 지급한 건수는 2018년 86,060건에서 2022년 113,282건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연금으로 지급한 건수는 2018년 23,232건에서 2022년 32,771건으로 약 41% 증가하였고, 일시금으로 지급한 건수는 2018년 62,828건에서 2022년 80,511건으로 약 28% 늘어났다. 연금의 비중은 2018년 27.0%에서 2022년 28.9%로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금액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2018년 약 165억 엔에서 2022년 약 229억 엔으로 약 39% 증가했지만, 노령급부금의 총지급액에서 차지하는 연금의 비중은 2018년 5.4%에서 2022년 5.8%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비해 일시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2018년 약 2,879억 엔에서 2022년 약 3,723억 엔으로 약 29% 증가하였고, 그 비중 역시 2018년 94.6%에서 2022년 94.2%로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Ⅲ-27〉 일본 기업형 DC 노령급부금의 연금 및 일시금 지급 현황

(단위: 건, 만 엔,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건수	연금	23,232 (27.0)	25,114 (26.0)	27,117 (26.8)	29,940 (28.2)	32,771 (28.9)
	일시금	62,828 (73.0)	71,537 (74.0)	74,074 (73.2)	76,189 (71.8)	80,511 (71.1)
	계	86,060 (100.0)	96,651 (100.0)	101,191 (100.0)	106,129 (100.0)	113,282 (100.0)
금액	연금	1,645,065 (5.4)	1,747,612 (5.0)	1,847,311 (5.1)	2,079,682 (5.4)	2,288,548 (5.8)
	일시금	28,789,751 (94.6)	32,869,495 (95.0)	34,384,389 (94.9)	36,093,897 (94.6)	37,227,822 (94.2)
	계	30,434,816 (100.0)	34,617,107 (100.0)	36,231,700 (100.0)	38,173,579 (100.0)	39,516,370 (100.0)

주: () 내의 숫자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運営管理機關連絡協議會(2023. 11) 자료를 이용해 작성함

한편 개인형 DC에서 노령급부금을 지급한 건수는 2018년 39,222건에서 2022년 48,332건으로 약 23% 증가했다. 이 중 연금으로 지급한 건수는 2018년 15,379건에서 2022년 21,205건으로 약 38% 증가하면서 그 비중 역시 2018년 39.2%에서 2022년 43.9%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일시금으로 지급한 건수는 2020년대 들어 담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비중은 2018년 60.8%에서 2022년 56.1%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금액기준으로 보면 기업형 DC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연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2018년 약 103억 엔에서 2022년 약 145억 엔으로 약 41%나 증가하였지만, 그 비중은 2018년 11.5%에서 2022년 15.1%로 소폭 늘어나는데 그치며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시금으로 지급한 총액은 2018년 약 795억 엔에서 2022년 약 818억 엔으로 소폭 증가(2.8%)에 그쳤지만, 그 비중은 80%대 중반을 기록할 만큼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Ⅲ-28〉 일본 개인형 DC 노령급부금의 연금 및 일시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만 엔,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건수	연금	15,379 (39.2)	16,856 (39.0)	18,122 (39.9)	19,747 (41.0)	21,205 (43.9)
	일시금	23,843 (60.8)	26,332 (61.0)	27,301 (60.1)	28,390 (59.0)	27,127 (56.1)
	계	39,222 (100.0)	43,186 (100.0)	45,423 (100.0)	48,137 (100.0)	48,332 (100.0)
금액	연금	1,031,286 (11.5)	1,127,842 (11.7)	1,197,899 (11.9)	1,346,085 (12.5)	1,452,774 (15.1)
	일시금	7,953,922 (88.5)	8,490,866 (88.3)	8,866,764 (88.1)	9,420,167 (87.5)	8,177,946 (84.9)
	계	8,985,208 (100.0)	9,618,708 (100.0)	10,064,663 (100.0)	10,766,252 (100.0)	9,630,720 (100.0)

주: () 내의 숫자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 運営管理機関連絡協議会(2023. 11) 자료를 이용해 작성함

3) 적립금의 연금화 방법

DC형에서 노령급부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적립금 전체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적립금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다.

노령급부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기로 결정했다면 일차적으로는 연금의 비중, 즉 적립금의 전체를 연금으로 수령할지 아니면 일부만 연금으로 수령할지 정해야 한다. 이것이 정해지면 그 다음으로는 적립금을 연금화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적립금을 연금화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분할매도연금(分割取崩年金)이다. 이는 스스로 적립금 운용을 계속하면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으로 수령하는 총액이 변동한다. 연금을 수령하는 도중에 변경도 가능하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연금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연금급여 전용 상품을 구입하여 매회 정해진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구입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연금상품을 이용하면 종신연금이나 확정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연금상품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연금 플랜에 따라 다르다.

〈그림 Ⅲ-10〉 분할매도연금과 연금상품 이용의 차이



자료 : https://www.resona-tb.co.jp/401k/pop/channel/pdf/oshiete_200115.pdf

분할매도연금에서 연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에는 기간균등지급, 연도별 비율지정, 잔존월수(회수)안분 등 3가지 방식이 있다. 기간균등지급은 예정된 기간 동안 일정 비율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연금계획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적립금 운용 상황에 따라 지급기간이 완료되기 이전에 연금이 종료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구체적인 예]

- 지급예정기간: 5년
- 연금지급회수: 2회(6월, 12월)
- 연금개시월: 10월
- 연금자산액: 600만 엔
- 기본지급방식: 회수 지급
- ※ 연금개시월은 원칙적으로 재정절차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완비한 상태에서 접수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임

위와 같은 예에서 기간균등지급 방식은 연금자산액 600만 엔을 10회(= 지급예정기간 5년 × 연간지급회수 2회)로 나누어 균등하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1회당 지급액은 60만 엔이다.

〈그림 Ⅲ-11〉 기간균등지급 방식에서의 연금액 산출

연금연도(1년차)		연금연도(2년차)		연금연도(3년차)	
1회차 (12월 지급)	2회차 (6월 지급)	3회차 (12월 지급)	4회차 (6월 지급)	5회차 (12월 지급)	6회차 (6월 지급)
60만엔	60만엔	60만엔	60만엔	60만엔	60만엔

자료 : https://faq.jis-t.co.jp/faq/show/1278?category_id=47&site_domain=default

연도별 비율지정 방식은 지급예정기간의 연도별로 수령할 비율을 지정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다. 원칙적으로 연금계획에 따라 지급액은 결정되며, 운용상황에 따라서는 지급기간 만료 이전에 연금지급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위의 구체적인 예를 적용하는 경우, 연금자산액 600만 엔을 10회(= 지급예정기간 5년 × 연간지급횟수 2회)로 나누어 균등하게 수령하게 되므로 1회당 지급액은 60만 엔이 된다. 연도별 지급비율을 1년차 40%, 2년차 20%, 3년차 20%, 4년차 10%, 5년차 10%로 한 경우의 연금수령 회차별로 수령하는 연금액은 <표 III-29>와 같다.

<표 III-29> 연도별 비율지정 방식에서의 연금액 산출

연금연도(1년차)		연금연도(2년차)		연금연도(3년차)		연금연도(4년차)		연금연도(5년차)	
지급비율: 40%		지급비율: 20%		지급비율: 20%		지급비율: 10%		지급비율: 10%	
1회차 (12월 지급)	2회차 (6월 지급)	3회차 (12월 지급)	4회차 (6월 지급)	5회차 (12월 지급)	6회차 (6월 지급)	7회차 (12월 지급)	8회차 (6월 지급)	9회차 (12월 지급)	10회차 (6월 지급)
120만 엔	120만 엔	60만 엔	60만 엔	60만 엔	60만 엔	30만 엔	30만 엔	30만 엔	30만 엔

자료: https://faq.jis-t.co.jp/faq/show/1278?category_id=47&site_domain=default

잔존월수(회수)안분 방식은 연금을 지급받을 남은 기간 혹은 남은 지급횟수로 나눈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다. 지급액은 변동하며 원칙적으로 지급기간 도중에 연금이 종료되는 일은 없다. 위의 구체적 예를 적용할 경우, 잔존월수(회수)안분 방식에 맞게 되는 회차별 연금수령액은 <그림 III-12>와 같다.

<그림 III-12> 잔존월수(회수)안분 방식에서의 연금액 산출

1/10회차	2/10회차	3/10회차	4/10회차	5/10회차
지급월 12월	지급월 6월	지급월 12월	지급월 6월	지급월 12월
11월말 시점의 연금자산액/10회	5월말 시점의 연금자산액/9회	11월말 시점의 연금자산액/8회	5월말 시점의 연금자산액/7회	11월말 시점의 연금자산액/6회

자료: https://faq.jis-t.co.jp/faq/show/1278?category_id=47&site_domain=default

분할매도연금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는 ‘경과월지급방식’과 ‘회수지급방식’이 있다.

경과월지급방식은 연금지급 예정기간 중 경과한 월수에 상당하는 연금액을 순차적으로 지급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DC형 연금의 기록관련업무를 수행하는 JIS&T에서 제시하는 예를 들어 살펴보자. 지급예정기간 5년, 연간 지급횟수 2회(6월, 12월), 연금개시월⁴³⁾ 10월, 연금자산액 600만 엔, 연금액은 기간균등방식으로 산출인 경우 연금개시월이 10월이므로 초회 지급월인 12월에는 경과한 월수인 2개월치 연금이 지급된다. 매월 지급 예상 연금액은 10만 엔(=600만 엔÷5년÷12개월)이므로 최초 연금지급월인 12월에는 2개월치에 상당하는 20만 엔을 지급하고, 2회차부터는 6개월치에 상당하는 60만 엔을 해당일에 연금을 지급한다.

〈그림 III-13〉 경과월지급방식에서의 연금지급 방식

9월	10월	11월	12월	1월	5월	6월
(서류접수) 산정완료	연금개시월 (10만엔/월)	(10만엔/월)	지급월 (10만엔/월)	(10만엔/월)	(10만엔/월)	지급월 (10만엔/월)
—	—	—	20만엔	—	—	60만엔

2개월분
6개월분

자료: https://faq.jis-t.co.jp/faq/show/1277?category_id=47&site_domain=default

이에 비해 횡수지급방식은 지급월이 도래하면 경과월에 관계없이 당회분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위와 같은 동일한 예에서 횡수지급방식에서 1회당 지급액은 경과월에 관계없이 60만엔(= 600만 엔 ÷ 5년 ÷ 2회)이 된다.

〈그림 III-14〉 횡수지급방식에서의 연금지급 방식

연금연도(1년차)		연금연도(2년차)		연금연도(3년차)	
1회차 (12월 지급)	2회차 (6월 지급)	3회차 (12월 지급)	4회차 (6월 지급)	5회차 (12월 지급)	6회차 (6월 지급)
60만엔	60만엔	60만엔	60만엔	60만엔	60만엔

자료: https://faq.jis-t.co.jp/faq/show/1277?category_id=47&site_domain=default

43) 연금개시월은 원칙적으로 재정절차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완비한 상태에서 접수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임

다. 활용사례

1) 종합형 401k 클럽

종합형 401k 클럽(綜合型401k俱樂部)은 독립계열 인사컨설팅회사인 휴먼 프라임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연합형 퇴직연금제도이다. 가입자가 1명뿐인 경우나 임원만 있는 회사여도 후생연금 적용 사업소면 가입할 수 있다. 동 클럽은 어떤 금융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운영된다. 동 클럽은 DC형 연금제도의 규약 및 부담금 납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대표 사업주인 휴먼 프라임은 도입 전 서류 준비부터 도입 후의 계속교육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동 클럽의 운영관리기관은 SBI베네핏시스템즈, 자산관리기관은 미즈호신탁은행이다.

동 클럽은 규약에서 노령급부금은 원칙적으로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지급기간은 5년 또는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종 신청 연령(75세)에 도달할 때까지 인출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시점에 자동으로 일시금을 지급한다.

노령급부금의 지급요건으로는 통산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만일 가입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입연수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을 61세부터 65세 사이로 설정해 두고 있다. 연금의 지급횟수는 연1회 또는 4회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지급기간은 5년이나 10년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연1회 지급을 선택하면 12월에, 연4회 지급을 선택하면 3, 6, 9, 12월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은 연금상품으로 변경하여 받을 수도 있고, 분할매도형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연금상품으로 변경하여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개시 시점에 '연금개시 후 상품'을 구매하게 되며, 이때 수령기간과 수령횟수를 지정한다.

2) 전세공연금(기업형 DC)

전세공연금은 일본의 세무사들이 소속된 조직으로, 세무사들 간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하는 단체인 전국세무사공영회가 운영하는 기업형 DC 연금이다. 전세공연금은 세무사의 주요 활동무대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의 경영자와 임원, 직원 등이 자조 노력으로 풍요로

운 노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창설된 전세공 독자적인 기업형 DC연금보험이다. 전세공연금의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이이치생명(第一生命), 니혼생명(日本生命), 후코쿠생명(富国生命), 스미토모생명(住友生命), 메이지야스다생명(明治安田生命) 등 5개 생명보험사이며, 이중 간사를 맡고 있는 곳은 다이이치생명이다.⁴⁴⁾

전세공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세무사(정회원), 세무사(정회원)의 종업원, 세무사(정회원)가 관여하는 단체의 관계자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중 만18세 이상이고 적립 완료일까지의 예정 가입년수가 2년 이상이 되는 자이다. 가입자는 부담금을 월납 또는 일시납으로 납입할 수 있다. 월납의 경우 1구좌에 5,000엔 구좌를 2개 이상 40개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가입 후에는 2구좌 이상을 남기고 나머지는 1구좌 단위로 줄일 수도 있다. 일시납의 경우는 월납 가입자에 한해 1구좌에 10만 엔인 구좌를 임의의 개수만큼 가입할 수 있는데, 한도는 1회 가입당 200구좌와 최대 400구좌이다.

전세공연금의 급부는 연금, 탈퇴일시금, 유족일시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가입자가 만 70세에 도달한 달의 다음 달 1일이나 만 60세 이상으로 연금수급을 희망한 달의 다음 달 1일에 연금수급권이 부여된다. 연금개시일은 연금수급권 취득일이다. 연금월액은 연금개시시의 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기본연금과 연금개시 이후의 배당금에 기반한 증가연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가입자는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10년 확정연금, 15년 확정연금, 10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가입자가 연금개시 후 보증기간 중에 연금 대신 일시금을 희망하면 보증기간의 자연기간에 상응하는 연금현가 상당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3) 일생협기업연금기금(DB형)

일생협기업연금기금(日生協企業年金基金, 이하 ‘일생협기금’이라 함)은 전국의 생협 및 관련 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퇴직 후 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DB형 퇴직연금제도이다. 일생협기금에는 제1제도와 제2제도가 있다. 제1제도는 모든 가입사업소, 제2제도는 제1제도 가입사업소 중 임의의 사업소가 퇴직금제도의 일부 등을 가지고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급부는 가입한 기간 등에 따라 일시금 및 연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44) <http://www.zenzeiky.com/nenkin.html>

일생협기금에서는 노령급부금, 탈퇴일시금, 유족급부금 등을 제공한다. 노령급부금은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 미만으로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60세에 도달한 때,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실시사업소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 당해 실시사업소에 사용되지 않게 된 때에 노령급부금을 연금으로 지급한다(규약 제59조). 연금으로 지급하는 노령급부금의 액수는 표준연금액으로 한다. 연금의 지급은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다.

〈표 III-30〉 횡수지급방식(예)

금액	9만 엔 이상	6만 엔 이상 9만 엔 미만	3만 엔 이상 6만 엔 미만	3만 엔 미만
지급 기일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4월, 8월, 12월	6월, 12월	8월

자료: 日生協企業年金基金 規約

4) 예정이율변동형 확정각출연금보험(5년)

동 상품은 메이지야스다생명이 DC형을 대상으로 출시한 이율보증연금이다. 메이지야스다 이율보증연금(5년)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동 상품은 보험료 납입별로 적용하는 보증기간에 따라 보증이율을 설정하고 확정수익률로 운용되는 원본확보형 상품이다. 보증이율은 매월 보험료가 납입될 때마다 그 당시의 시중금리에 따라 설정되며, 한 번 정해진 이율은 보증기간 중 변경할 수 없다. 매월의 보험료는 DC형 연금제도의 각출한도 이내라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납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동 상품 가입자는 인출단계에서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퇴직연금 플랜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당 플랜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동 상품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령방법에는 연금상품코스, 분할매도코스, 일시금 등 3가지가 있다. 연금상품코스에서는 확정연금과 종신연금을 제시하고 있다. 확정연금은 연금개시 시점의 개인별 관리자잔액을 기초로 일정기간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다. 연금수령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종신연금은 연금개시 시점의 개인별 관리자잔액을 기반으로 종신 동안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다. 보증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분할매도코스는 급

여청구 시의 개인별 관리자산액을 일정기간(5~20년)으로 분할하여 수령하는 방법이다. 급여개시 이후에도 적립기간 때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운용을 계속한다. 다만 수령 시에는 그 시점의 시장금리에 따라 계산되는 매도공제가 차감되는 경우도 있다.

보증이율은 적립단계에서는 국채 등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매월 1일에 설정되고, 한 번 설정된 보증이율은 이율보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변경할 수 없다. 인출단계에서는 연금급여 개시시점에 보증이율이 설정되며, 설정된 보증이율은 도중에 변경할 수 없다. 분할매도코스를 선택하는 경우의 보증이율은 적립단계와 동일하다. 보증이율의 적용기간은 적립단계에서는 5년이며, 인출단계에서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이율은 연금급여 개시시점의 이율이 연금급여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인출단계에서 분할매도코스를 선택하는 경우의 보증이율 적용기간은 적립단계와 동일하다.

5. 시사점

여타 선진국에 비해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의 퇴직연금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여건을 갖고 있다. 본인과 배우자에게 종신토록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확정급여형제도가 쇠퇴하고 일시납 지급이 일반적인 확정기여형제도가 성장함에 따라 인출국면의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들어 정책 및 감독당국은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부담을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하여 보완하고자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하며 인출 관련 정책을 수정·보완해 왔다. 개별 국가마다 처한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법령 제정, 평생소득흐름에 대한 인식 제고, 인출국면 통계 데이터 공시,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인출 전용 상품 가격 정보제공 등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인출국면에 대해서도 수탁자(퇴직연금사업자, 사용자)에게 적절한 전략, 상품 및 서비스를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과하였다.

인출 옵션과 관련하여 해외사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가입자들이 적립금에 대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연한 인출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25~30년 이상으로 길어진 은퇴 기간을 고려할 때 단일 상품보다는 구조화된 솔루션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는 은퇴 초기(55~75/80세)에는 재량인출을 통해 유연하게 가입자 니즈를 충족시키고, 활동력과 인지가 저하되는 후기 고령기(75/80세 이후) 또는 평균수

명(80/85세) 이후에는 종신연금을 통해 장수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하여 은퇴 초기에는 자본시장 투자를 통해 소비 재원을 극대화하고 은퇴 후기에는 종신연금의 사망률 상호보조(mortality credit subsidy)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는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퇴직연금제도의 인출국면에 대한 발전방안과 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IV

발전방안

1. 필요성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다 되어 가면서 퇴직연금제도로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에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퇴직연금 가입자 중 55세에 도달하는 자가 증가해야 하고, 이 중에서 퇴직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는 자가 동시에 증가해야 한다.⁴⁵⁾

통계청에 의하면, 전체 퇴직연금가입자 중 연금수령 자격연령에 임박했거나 도달한 50대 이상 가입자 수는 2016년 약 148만 명에서 2022년 약 244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전체 퇴직연금 가입자에서 50대 이상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25.5%에서 2022년 35.2%로 증가하였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수도 2016년 약 90만 명에서 2022년 약 182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이들이 전체 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15.5%에서 2022년 26.1%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1〉 50대 이상 및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22년	
	수	비중	수	비중
50대 이상 가입자	1,484,373	25.5	2,443,845	35.2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자	899,369	15.5	1,815,521	26.1
전체 가입자 수	5,810,244	-	6,948,108	-

자료: 통계청(각 연도), 퇴직연금통계를 이용해 작성함

45) 그러나 연금계좌로부터 연금형태로 인출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에서는 연금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연금형태로 인출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근퇴법 과 소득세법 간에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가입기간 요건을 둘러싸고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임. 여기서는 근퇴법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해 근퇴법의 요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이 결과 실제로 퇴직연금제도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만 55세 이후 인출을 한 가입자 수⁴⁶⁾는 2017년 241,462명에서 2023년 529,664명으로 약 119% 증가하였고, 이 중 연금으로 수령한 가입자의 비중은 2017년 1.9%에서 2023년 10.4%로 크게 높아졌다(〈표 II-6〉 참조)

위와 같은 사실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도 이제 본격적으로 인출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이는 이제 인출국면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인출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갈 길이 먼 게 사실이기도 하다. 〈표 II-6〉에서 보는 것처럼, 2023년 현재 일시금 수령 비중이 계좌 수 기준으로는 10.4%, 적립금액 기준으로는 50.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좌 수 기준 대비 적립금액 기준의 연금수령 비중이 높다는 것은 1인당 적립금액이 높을수록 연금수령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IV-2〉에서 보는 것처럼 개인형 IRP 전체로 2022년의 적립금액, 가입자 수, 1인당 적립금액은 2016년 대비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추세는 50대 이상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적립금액은 2016년 12조 2,789억 원에서 2022년 58조 3,587억 원으로 약 4.75배, 1인당 적립금액은 2016년 1,577만 원에서 2022년 1,943만 원으로 1.23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런 경향을 50대 이상으로 한정하면, 적립금액은 2016년 8조 3,738억 원에서 2022년 41조 5,829억 원으로 4.97배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1인당 적립금액은 2016년 3,536만 원에서 2022년 3,166만 원으로 0.90배 수준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2〉 50대 이상 1인당 개인형 IRP 적립금액 등의 증가 추이

구분		2016년	2022년	증감
전체	적립금액(억 원)	122,789	583,587	4.75배 ↗
	가입자 수(명)	778,654	3,004,192	3.86배 ↗
	1인당 적립금액(만 원)	1,577	1,943	1.23배 ↗
50대 이상	적립금액(억 원)	83,738	415,829	4.97배 ↗
	가입자 수(명)	236,792	1,313,246	5.55배 ↗
	1인당 적립금액(만 원)	3,536	3,166	0.90배 ↘

자료: 통계청(각 연도), 퇴직연금통계를 이용해 작성함

46) 실제로는 계좌 수 기준이나, 1인 1 퇴직연금계좌를 갖는 게 일반적인 현실을 감안해 '계좌 수=가입자 수'로 간주한 것임

개인형 IRP에서 50대 이상의 적립금액이 전체 적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68.2%에서 2022년 71.3%로 증가하였다. 이는 퇴직연금시장에서 인출국면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50대 이상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50대 이상의 1인당 적립금액이 2016년 564만 원에서 2022년 1,702만 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최소한 퇴직연금이 가교연금으로서 이들의 노후생활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익과 비용 등을 무시하고 1인당 적립금액을 현행 연금수령 최소기간인 5년 동안 균등하게 인출한다고 가정할 때, 2016년에는 연간 112.8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데 비해 2022년에는 340.4만 원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월 단위로 나누면 2016년 월 9.4만 원에 불과하던 월 수령액이 2022년 월 28.4만 원으로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향후 빠른 속도로 인출국면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연금 수급에 대한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퇴직연금제도가 단순한 저축제도가 아니라 당당한 연금제도로서의 의미를 강화하려면 연금수급자 비중 증대가 필수적이다. 퇴직연금제도가 인출국면에 접어 들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연금수급자 비중 증대를 위한 제반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적기임에 분명하다. 왜냐하면 핵심 이해관계자인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인출국면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만큼 관심도 크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제도에서 연금수급자 비중의 증대는 퇴직연금제도 자체의 의미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연금제도의 신뢰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표 IV-3>에서 보는 것처럼 가입자 수 기준으로 퇴직연금은 2018년부터 개인연금을 추월하며 사적연금제도의 핵심으로 굳건히 자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연금가입자 10명 중 3명 정도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을 정도로 전체 연금제도에서 차지하는 위상 역시 국민연금 다음으로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서 보다 많은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한다면 전체 연금제도의 역할 증대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특히 퇴직연금 가입자의 대부분이 국민연금 가입자임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퇴직연금의 연금화는 연금제도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표 IV-3〉 연금종류별 연금가입자 현황

(단위 : 천 명, %)

구분	연금가입자				
	전체	국민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2016년	21,754 (100.0)	19,017 (87.4)	1,626 (7.5)	5,230 (24.0)	6,420 (29.5)
2017년	21,880 (100.0)	19,180 (87.7)	1,638 (7.5)	5,758 (26.3)	6,341 (29.0)
2018년	22,296 (100.0)	19,640 (88.1)	1,684 (7.6)	6,294 (28.2)	6,176 (27.7)
2019년	22,263 (100.0)	19,635 (88.2)	1,727 (7.8)	6,676 (30.0)	5,912 (26.6)
2020년	23,793 (100.0)	21,534 (90.5)	1,762 (7.4)	7,028 (29.5)	5,644 (23.7)
2021년	23,727 (100.0)	21,500 (90.6)	1,797 (7.6)	7,266 (30.6)	5,437 (22.9)
2022년	23,826 (100.0)	21,628 (90.8)	1,825 (7.7)	7,406 (31.1)	4,572 (19.2)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4), "2022년 연금통계 결과", p. 70

2. 접근방법

인출국면에 접어든 퇴직연금제도를 더욱 발전적인 모습으로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금화율을 제고가 필수적이다. 연금화율이 높아지면 퇴직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을 보완하여 적절한 노후소득대체율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 소득을 오랫동안 인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 정책당국은 더 많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수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연금수령을 둘러싼 제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계약형 중심의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에서 연금수령 비중을 높이려면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 스스로 연금화율 제고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야 하겠지만,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연금화율 제고에 더 많

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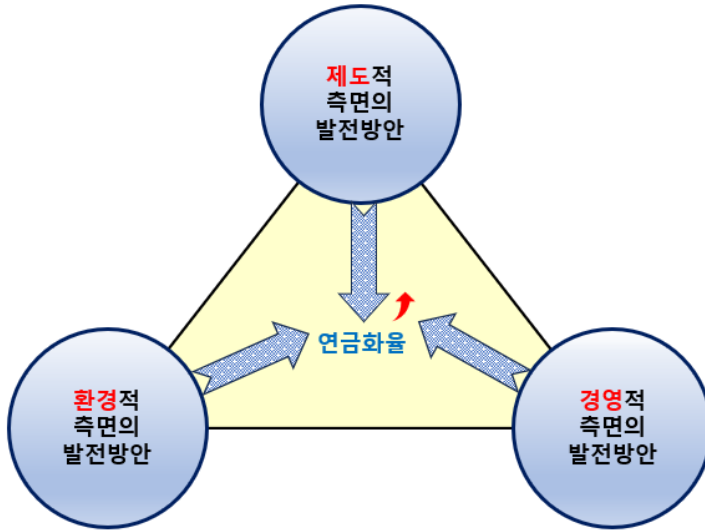
정책당국과 퇴직연금사업자가 힘을 합칠 때 퇴직연금제도는 단순한 저축제도 이미지를 벗어나 명실상부한 연금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출국면에 접어든 퇴직연금제도의 연금수령 비중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을 도출함에 있어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는 제도적 측면에서 필요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제한하거나 제약할 우려가 있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규정을 개선하고, 연금화율 제고에 필요한 새로운 수단이 있다면 이를 근퇴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환경적 측면에서 필요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근퇴법상에 연금화율 제고를 위한 좋은 규정이 아무리 많더라도 가입자들이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연금수령의 선택자인 가입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근퇴법상의 규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런 선택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반 환경 및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환경적 측면의 발전방안은 근퇴법상에서 다루기는 곤란하면서도 가입자의 연금수령 선택을 지원하는 제반 정책들을 의미한다.

셋째는 경영적 측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되었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주류는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이다. 계약형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이 연금화율 제고를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퇴직연금제도에서 그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출국면에 접어든 퇴직연금제도의 연금화율 제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할 때 엄연한 영리기업인 퇴직연금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에만 의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 할 수 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연금화율 제고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데 장애요소는 없는지 파악해 이를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 가입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처럼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연금화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림 IV-1〉 퇴직연금제도 연금화율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트라이앵글



3. 세부 발전방안

가. 제도적 측면의 발전방안

제도적 측면의 발전방안은 주로 현행 퇴직연금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규정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인출국면의 발전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편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연금수령 요건의 완화, IRP 인출 유연성 제고, 연금수령의 디폴트화, 인출국면 맞춤형 정보제공의 강화, 중신연금 선택 시 최저세율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 연금수령 요건의 완화

연금수령 요건에 대해서는 근퇴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퇴직연금에서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55세 이상과 가입기간 10년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

여야만 한다. 그러나 연금계좌로부터의 연금형태 인출 가능 요건을 규정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에서는 연금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아도 연금형태 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다.

근퇴법 제정 당시 우리나라 기업의 법정 퇴직연령이 55세였다는 점과 법정 퇴직연령이 60세로 늘어난 현 시점에서도 그 이전에 퇴직하는 자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금수령의 연령 요건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가입기간 10년 요건은 적립금이 어느 정도 쌓여야 연금수령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이직 시 IRP에서의 적립금 유지를 통한 중도인출 억제 효과 기대, 제도 도입 초기 과거근무 채무의 퇴직연금으로의 전환 유도 등의 의도 하에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와 의미에도 불구하고 가입기간 10년 요건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가입기간 10년 요건은 가입자 선택권 존중이라는 정책적 의도와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근퇴법 제17조 제1항에서 퇴직급여 수령방법으로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가입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십 년 동안 퇴직금제도를 운영해 오며 퇴직급여의 일시금 수령을 당연시해온 그간의 관행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그런데 일시금 수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으면서 연금수령에 대해서는 연령과 가입기간이라는 2가지 요건을 설정한 것은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요소임에 분명하다. 이는 일시금 수령과 연금수령 간에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둘째, 동 규정이 오히려 연금수령 유인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는 점이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목적은 퇴직급여의 연금화를 통한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및 안정화일 것이다. 그러나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55세 이상과 가입기간 10년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연금보다는 오히려 일시금 선택을 유도하는데 기여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2020년 이전까지 계좌 수 기준으로 연금수령 비중이 3%대 이하를 기록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가입기간 10년 요건은 퇴직연금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국제적 정합성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해외사례 중 가입기간을 연금수령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외국에서는 연금지급개시연령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가입기간을 연금수령 요건으로 설정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

의 퇴직연금법(ERISA)에서는 퇴직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을 원칙적으로 65세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일 퇴직연금을 완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이 65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도가입 후 만 10년(60세 이후 가입자에 대해서는 만 5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총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부터 75세 사이에 노령급부금⁴⁷⁾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입기간은 연금수령 요건이 아니라 노령급부금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기준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가입기간 10년이라는 연금수령 요건의 완화를 제안하는 바이다. 그 방안으로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제3항에서 연금수령으로 인정하는 인출시기와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연금계좌 가입기간 5년을 연금수령으로 인정하는 인출시기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금계좌에 IRP가 포함됨을 감안할 때 근퇴법의 가입기간 10년이라는 연금수령 요건을 소득세법 시행령의 연금수령으로 인정하는 인출시기인 5년으로 통일하는 것이 가입자의 혼란을 줄일 뿐 아니라 연금수령 비중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IRP 유연성 제고

현재 IRP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적립금의 부분적 인출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IRP 적립금의 부분 인출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근퇴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에서는 “법 제24조제5항 및 영 제18조제2항⁴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IRP제도의 일부해지는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업무 Tip’으로 “IRP제도 설정자는 자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IRP제도를 해지(전액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IRP제도 설정 시 부여받은 세제혜택(세액공제 등)은 취소됨”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IRP제도 관련 행정해석(2015. 3. 30)에서는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담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등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예금)계좌 등으로 지

47) 일본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령연금에 해당하는 노령급부금 외에도 규약에서 인정하는 경우 유족연금, 사망급부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

48) 법 제24조제5항 및 영 제18조제2항은 IRP제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임

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가입자는 IRP를 개설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IRP계좌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 밝히고 있다.

위의 내용은 IRP계좌로 들어갈 때(입구)는 퇴직급여의 일부를 납입할 수 있도록, 즉 퇴직급여의 부분인출을 허용하는 반면에 IRP계좌에서 나올 때(출구)는 퇴직급여의 전액인출만 가능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퇴직연금적립금을 최대한 오래 퇴직연금제도에 머물게 함으로써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적립단계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중도인출을 통한 적립금의 부분인출을 허용하면서 인출단계에서는 전액해지만 인정하는 현행 규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과연 이런 정책이 정책 의도대로 퇴직연금적립금의 제도 내 장기유지에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에서의 연금수령 비율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여기에는 퇴직금제도의 유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는데, IRP 부분인출 금지 역시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퇴직 후 IRP계좌에 1억 원을 적립한 상태에서 중도인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시급히 5,0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현행 제도 하에서 이 사람은 부득이 1억 원을 전부해지할 수밖에 없다. 결국 5,000만 원의 IRP 적립금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55세 이후 목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IRP 부분인출 금지는 IRP 적립금의 장기유지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둘째, 현행 규제는 적립단계의 가입자와 인출단계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적립단계의 가입자는 중도인출 요건에 해당하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적립금을 부분인출 할 수 있다. 이들이 중도인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로 급전이 필요하면 급여소득자이므로 대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긴급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안정적이면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소득흐름 창출능력이 사라진 인출단계에 접어든 가입자의 사정은 매우 다르다. 안정적인 소득흐름이 없는 상태에서의 차입은 그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가능하다 하더라도 고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IRP 적립금의 부분해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그 전액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전액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이 결과 그들의 노후준비자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잔액을 일시납즉시연금에 가입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지만, 이 방법은 IRP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에 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금수령 요건을 갖춘 자가 IRP 적립금의 부분인출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IRP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즉, 연금수령 요건을 갖춘 자가 중도인출 사유 이외의 부득이한 사유로 IRP 적립금의 부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부득이한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부분인출을 허용하면 전액해지의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령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 이러면 오히려 제도의 경직성만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요즘의 중장년은 자신들의 노후대비와 관련하여서는 상당히 단호하며 현명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완벽한 제도는 없다는 점에서 인출국면에서 IRP의 유연성을 제고하면 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효과는 그 이상일 것이라 판단한다.

인출국면에서 IRP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관련 내용을 적립단계와 인출단계로 명확히 구분해, 적립단계에서는 현행 규정 및 해석을 유지하되 인출단계에서는 부분해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IRP 부분해지 금지의 근거로 제시한 근퇴법상의 중도인출 요건은 적립단계를 염두에 둔 조항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출단계에서 부분해지를 인정하더라도 제도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한 푼이라도 더 연금으로 수령하고 싶은 가입자의 잠재적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신뢰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3) 연금수령의 디폴트화

퇴직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대해서는 근퇴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급여의 종류와 연금 및 일시금 수급조건을 제2~3항은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 조건을, 제4~5항은 IRP제도로의 지급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퇴직급여의 연금화 제고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2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제17조(급여 종류 및 지급요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지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이 경우 가입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첫째, 제1항의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라는 규정은 앞서 언급했듯이 가입자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지만, 연금과 일시금을 병렬적으로 열거함으로써 두 가지 급여의 중요성을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뿌리가 퇴직일시금제도임을 감안하면 연금을 앞에 내세운 것 자체에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퇴직급여제도가 노후자금 저축제도에서 연금제도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둘째, 적립단계에서 축적한 퇴직연금적립금을 IRP계좌로 이전한 이후의 수령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근퇴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연금과 일시금 중 자유롭게 선택하는 게 관행화되어 있다. 관련 법규 그 어디에도 연금수령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일시금보다는 연금수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는 바이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의 확정급부기업연금법(이하 ‘DB법’이라 함)에서는 급여의 종류(제29조)와 지급방법(제38조)을 구분하고 있다. 확정기여연금법(이하 ‘DC법’이라 함)에서도 마찬가지로 급여의 종류(제28조)와 지급방법(제35조)을 구분하고 있다.

〈표 IV-4〉 일본의 퇴직급여 종류와 지급방법

구분	DB법	DC법
급여의 종류	제29조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1. 노령급부금 2. 탈퇴일시금 ② 사업주 등은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 각 호의 급부에 추가하여 다음 각호의 급부를 지급할 수 있다. 1. 장해급부금 2. 유족급부금	제28조 기업형연금의 급부는 다음과 같다. 1. 노령급부금 2. 장해급부금 3. 사망일시금
지급 방법	제38조 노령급부금은 연금으로 지급한다. ② 노령급부금은 규약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해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노령급부금은 연금으로 지급한다. ② 노령급부금은 기업형연금 규약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기업형연금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현행 근퇴법 규정의 문제점과 급여의 종류와 지급방법을 구분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때 일시금 수령보다 연금수령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표 IV-5〉와 같은 방법으로 근퇴법 제 17조에 기존의 제1항을 1항(급여 종류)과 2항(급여 수급요건)으로 구분하고, 제7항(급여 지급방법)을 신설하여 IRP제도에서의 퇴직급여 수령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표 IV-5〉 근퇴법 제17조 개정(안)

현행	개정
①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재편)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 2. 일시금 ② (재편)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이하 생략)	⑦ (신설)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서 급여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연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4) 인출국면 맞춤형 정보제공의 강화

인출국면에서 퇴직급여 수령방법을 선택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근퇴법에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퇴직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을 규정한 근퇴법 제17조의 내용을 고려할 때 특히 55세 이후의 인출국면에서 퇴직급여 수령방법은 퇴직 후 일단 IRP제도로 적립금을 이전한 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가입자의 퇴직 시점까지만 책임지고 그 이후의 적립금 운용 및 퇴직급여 수령방법 선택 등은 가입자와 IRP 사업자 간의 논의에서 정해지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특징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결과 근로자는 퇴직연금가입자라 하더라도 퇴직 이후 퇴직연금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사용자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이후 퇴직연금 운영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론 관여할 여지가 없으므로 인출국면에 진입한 가입자의 올바른 퇴직급여 수령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물론 사용자의 가입자 교육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근퇴법 시행령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제1항 제1호에서는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7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그 중 퇴직급여 수령방법과 관련한 내용은 첫 번째의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과 다섯 번째의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일곱 번째의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등 3가지이다. 현행 가입자교육 관련 교육사항은 상당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인출국면으로 한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현행 규정은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퇴직급여 수령방법 선택을 앞둔 가입자들이 최적의 선택을 하도록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표 IV-1>에서 살펴본 것처럼 2022년 현재 전체 개인형IRP 가입자 중 50대 이상 가입자의 비중은 35.2%이다. 이는 가입자의 약 2/3는 아직 퇴직급여 수령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젊은 가입자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용자 및 가입자교육을 위탁받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입자교육 자료를 만들 때나 교육을 실시할 때 젊은 가입자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인출국면에 진입한 가입자는 퇴직 때까지 사용자나 사업자로부터 수령방법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둘째, 퇴직급여 수령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

고, IRP 계좌로 적립금을 옮긴 후 가입자는 연금과 일시금 중 일시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연금퍼즐(pension puzzle)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금보다는 일시금 선호 현상이 높다. 이러한 인간의 속성을 감안할 때 가입자들이 퇴직시점까지 퇴직급여 수령방법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를 받지 못한 채 퇴직하도록 방치하는 것으로는 연금퍼즐 현상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영국에서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가입 근로자가 은퇴시기를 맞이할 때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은퇴옵션패키지(retirement option package)를 제공해야 한다. 즉, 근로자가 은퇴하거나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다양한 연금수령 옵션과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은퇴계획을 선택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와 관련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관련 기관과 연금사업자들 역시 사용자 및 가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⁴⁹⁾ 영국에서는 관련 기관은 물론 연금사업자들이 인출국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영국과 같은 인출국면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근퇴법 시행령 제31조에 제6호를 신설해 '50세 이상 또는 퇴직연령까지 남은 시기가 5년 이내인 가입자에게는 다양한 은퇴옵션과 각 옵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퇴직연금적립금을 은퇴자금으로 인출하는 시기가 IRP로 적립금을 이전한 이후라는 점을 감안할 때, IRP제도에서의 가입자 교육사항을 규정하는 근퇴법 시행령 제36조를 적립단계에서의 교육사항과 인출국면에서의 교육사항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IRP제도는 적립단계와 인출단계가 혼재되어 있는 게 현실이나 현재의 교육사항은 적립단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IRP제도에서의 교육사항은 ① 부담금 납입한도, ②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③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④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⑥

49) 가입자의 은퇴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사업자 및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 (<https://www.standardlife.co.uk/retirement/guides/ways-to-take-money>; <https://www.aviva.co.uk/retirement/using-your-pension-money/mix-retirement-options/>; https://pensionsauthority.ie/lifecycle/benefits_payable_on_retir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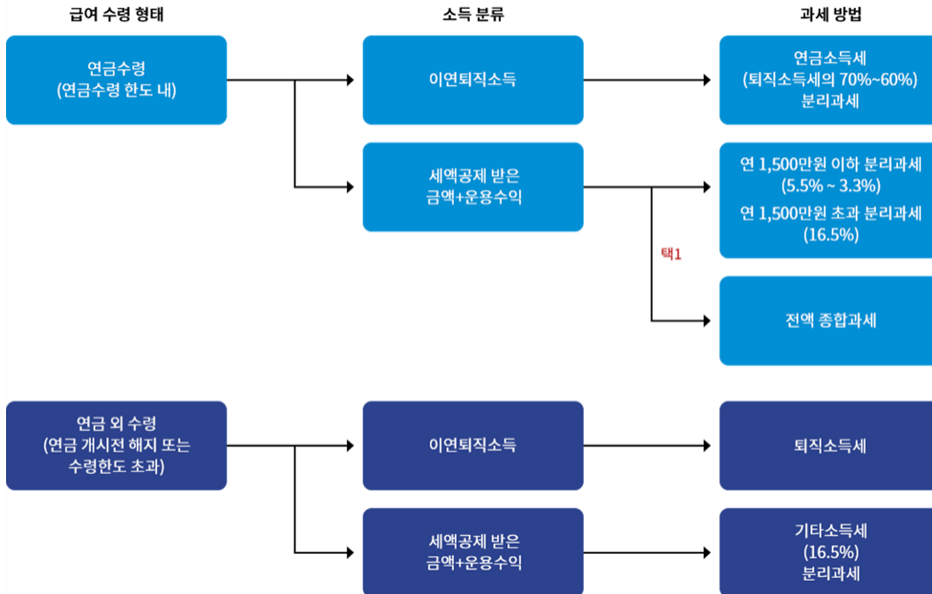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중 직간접적으로 인출국면과 관련이 있는 교육사항은 ②, ③, ④ 등 3가지나 되지만, 이는 적립단계 가입자의 투자지평(time horizon)을 길게 하자는 취지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인출국면에 접어든 가입자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현재 인출국면에 접어든 가입자의 수가 많고,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들이 정보에 바탕을 둔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IRP제도에서의 교육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근퇴법 시행령 제36조를 적립단계와 인출국면으로 구분하고, 인출국면의 교육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퇴직연금제도에서의 연금화율 제고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가입자의 후생 수준 증가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5) 종신연금 선택 시 최저세율 적용

소득세법에서는 퇴직급여 수령 형태를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으로 구분해 과세방법을 달리 적용한다. 연금수령은 다시 소득의 원천이 '이연퇴직소득'인지 '세액공제 받은 금액+운용수익'인지에 따라 전자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후자에 대해서는 연 1,500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5.5~3.3%)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둘을 합쳐 전액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연금외수령(연금개시 전 해지 또는 수령한도 초과)의 경우 이연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를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그림 IV-2〉 퇴직급여 수령 형태에 따른 과세방법



자료: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1012>)

〈그림 IV-2〉에서 보는 것처럼 퇴직연금에서 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연금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그 소득원천이 사용자부담금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60~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적용받는다. 또한 그 소득원천이 근로자 납입금 중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의 종류 및 연금수령 연령별로 차등적인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에는 확정형과 종신형이 있다. 〈표 IV-6〉에서 보는 것처럼 연금수령 개시연령이 늦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며, 확정형보다는 종신형에 조금 더 유리한 세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가급적 연금을 길게 수령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장수리스크에 자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인센티브 장치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연금수령 개시연령이 80세 이상인 경우에만 최저세율인 3.3%를 적용하고, 그 미만에 대해서는 4.4%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장수리스크 대비 강화라는 취지에 비춰봐도 실효성이 낮다. 오히려 종신연금수령에 대해서는 최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제를 보다 단순화함으로써 가입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종신연금 선택 비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IRP에서 79세까지 적립금을 유지했

다가 80세부터 연금을 개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인생 후반에 대한 전반적인 인생설계는 대부분 은퇴 연령을 전후한 시점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종신연금은 장수리스크 관리에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적립금에 대한 통제권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자발적 선택이 어렵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요즘 인출단계에 접어든 중장년은 과거와 달리 활동적이고 스마트한 중장년이 대부분이다. 은퇴 초기 이들의 삶 역시 매우 다이나믹한 경우가 많다. 이런 이들에게 목돈인 퇴직급여를 종신연금에 가입하여 사용 및 운용의 유연성을 빼앗기는 것은 상당히 큰 단점으로 와 닿을 가능성이 높다. 장수리스크 관리의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이다. 개인이 종신연금에 가입한다는 것은 국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종신연금을 선택하는 IRP 가입자에게는 그 연령을 불문하고 최저세율인 3.3%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

〈표 IV-6〉 연금수령에 대한 연금소득세율

연금수령 개시연령	확정형		종신형	
	한도내 금액	한도 초과액	한도내 금액	한도 초과액
만 70세 미만	5.5%	16.5%	4.4%	16.5%
만 70세~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3.3%	

자료: 금융감독원(<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1009>)

나. 환경적 측면의 발전방안

환경적 측면의 발전방안은 퇴직연금제도를 규율하는 법령에서 다루기 힘든 내용이지만 인출국면에 접어든 가입자들이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반 내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연금통계의 개선, 공적 무료상담서비스 제공, 인출국면 비교공시 강화 등이 포함된다.

1) 퇴직연금통계의 개선: 인출국면 별도 산출

현재 퇴직연금과 관련한 통계는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합동 보도자료 및 통계청에서 보

도자료 형태로 매년 발표하는 '퇴직연금통계 결과' 두 가지가 있다.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합동 보도자료는 적립단계의 현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히 다루고 있지만, 인출단계와 관련하여서는 계좌수 및 적립금액 기준 연금과 일시금 수령 비중을 1페이지로만 제시하고 있다. 2015년 결과치부터 발표한 통계청의 '퇴직연금통계 결과'는 2017년까지 3개년 동안은 '퇴직연금 수급현황'이라는 항목을 발표하다 그 이후부터는 이 항목을 제외한 채 발표하고 있다. 과거 '퇴직연금 수급현황'에서는 성별로 일시금 및 연금 수급 인원 및 금액을 직전년도와 비교해 제시하였다. 연금수급의 경우에는 누적과 신규 데이터를 함께 보여주었다.

〈표 IV-7〉 2017년 퇴직연금통계에서의 퇴직연금 수급 현황 (단위: 명, 억 원, %)

구분	일시금 수급		연금 수급				
	인원	수급 금액	인원	신규 수급	수급 금액	신규 수급	
'16년	합계 (구성비)	266,389 (100.0)	39,060 (100.0)	5,866 (100.0)	2,839 (100.0)	3,311 (100.0)	1,772 (100.0)
	남성	138,023 (51.8)	33,066 (84.7)	5,289 (90.2)	2,587 (91.1)	3,138 (94.7)	1,684 (95.1)
	여성	128,366 (48.2)	5,994 (15.3)	577 (9.8)	252 (8.9)	174 (5.3)	87 (4.9)
'17년	합계	298,724 (100.0)	37,675 (100.0)	10,680 (100.0)	4,237 (100.0)	8,239 (100.0)	1,907 (100.0)
	남성	149,158 (49.9)	30,775 (81.7)	9,612 (90.0)	3,816 (90.1)	7,843 (95.2)	1,775 (93.1)
	여성	149,566 (50.1)	6,900 (18.3)	1,068 (10.0)	421 (9.9)	396 (4.8)	132 (6.9)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8), "2017년 하반기 및 연간 퇴직연금통계", p. 22

정확하고 세부적인 통계는 국가 정책, 비즈니스 현장, 핵심 이해관계자의 행동 등 여러 측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출국면에 접어든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통계는 여전히 적립단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인출국면에 대한 통계는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합동 보도자료에서 제시하는 계좌수 및 적립금액 기준 연금과 일시금 수령 비중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정도의 데이터만으로 인출국면에 접어든 퇴직연금제도의 발전과 연금화율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에 충분한 통찰력

을 줄 수 있을지는 큰 의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인출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통계에 인출국면을 별도 산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는 바이다.

먼저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합동 보도자료의 경우 퇴직연금 수익률, 총비용 부담률, 맞춤형 수수료 등 주요 변수에 대해 적립단계와 인출단계로 구분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의 퇴직연금통계의 경우는 최소한 2017년까지 퇴직연금 수급현황에서 다른 수준의 데이터를 다시 공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연금의 종류(확정연금, 종신연금 등)별 수급자 현황, 퇴직연금 가입기간별 연금수령 비중, IRP로의 적립금 이전 직전 근무지 기준 기업규모별 연금수령 비중 등 인출국면의 보다 구체적인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근퇴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6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사용자와 고용노동부장관,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퇴법 시행규칙 제12조(취급실적의 제출)에서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사항,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적립금 운용사항, 급여 지급사항, 재정검증평가 결과에 대한 사항 등 제출해야 하는 통계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취볼 때 퇴직연금통계 작성의 1차 책임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즉, 퇴직연금사업자는 통계의 출발점인 원자료를 생성하는 중요한 기관인 것이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통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원자료 생성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생성한 원자료에 대한 검증 책임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퇴법에서 취급실적 제출처로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고 수준 높은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생성한 원자료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협업하여 검증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2) 공적 무료상담서비스의 체계적 제공

인출국면에 접어든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자신의 적립금을 어떤 방식으로 인출하느냐에 따라 노후생활의 안정성은 많이 달라진다. 퇴직연금수령방법으로 연금을 선택하더라도 다양한 연금 종류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최선의 결과를 낼지 가늠하는 것은 결코 쉬

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는 가입자의 생활 및 소비습관, 은퇴 이후의 라이프스타일, 예상 사망연령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민연금수령시점 및 수령액을 감안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가입자 스스로 최선의 퇴직연금 인출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인출국면의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최선의 인출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것이다. 이는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공적 기관이 담당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인 노후준비와 관련해서 여러 기관에서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체계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곳은 국민연금공단과 금융감독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 모두가 체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진단과 상담,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그림 IV-3〉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4대 서비스 영역



자료: 중앙노후지원센터(<https://csa.nps.or.kr/intro/intro01.do>)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을 통해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파인에서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자격을 갖춘 금융전문가가 상담자문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소득대비 지출관리, 저축과 투자, 부채관리, 위험관리,

노후소득원, 생활세금, 금융서비스 피해예방과 보호 등 7가지 주제에 대해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연금공단과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담서비스는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있다. 인출국면에 접어든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이러한 전반적인 영역에 걸친 상담도 필요로 하지만, 퇴직연금적립금을 어떻게 활용하면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연금수령 방식과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Pension Wise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제3장 영국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2018년에 설립된 Pension Wise는 확정기여형 가입자 중 50대 이상으로 인출국면에 접어든 사람을 대상으로 인출옵션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만일 50세 미만이거나 확정기여형 연금에만 가입한 경우에는 대면 서비스는 불가능하지만 무료전화 또는 웹채팅을 통해 연금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준비에서 퇴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인출국면에 접어든 퇴직연금제도의 현 위치를 고려할 때 퇴직연금의 인출국면에 대한 자문 및 상담 제공에 초점을 둔 무료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인출국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파인이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기능을 조정해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3) 인출국면 비교공시 강화

기업이든 개인이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다양한 선택지를 비교한다. 기업은 내부의 인적자원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직접 다양한 선택지의 장단점을 탐색하거나 벤치마킹 대상을 선정해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려 한다. 그러나 기업과 같은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개인은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에서부터 장벽에 부딪히기 십상이다. 특히 개인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더욱 큰 장벽에 직면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실수를 예방하고 개인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인출국면에 접어든 퇴직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인출방법을 선택하고,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어느 사업자로부터 받느냐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

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인출옵션과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니즈와 시장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인출옵션과 상품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려된 투자자가 아니라면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부 및 감독당국 차원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파인 시스템 내 통합연금포털에서는 연금상품 비교공시라는 항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 항목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 비교공시, 맞춤형 수수료 비교, 원리금보장상품 제공현황 등 3가지 세부항목을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세부내용을 보면 적립단계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영국의 Money Helpe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큰 차이가 있다. 제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국의 Money Helper에서는 다양한 퇴직연금 인출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인출국면에 진입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최선의 인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적기관에서 인출국면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런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곳은 금융감독원의 파인시스템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연금상품 비교공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연금상품 비교공시는 적립단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인출국면을 전담하는 코너를 하나 개설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즉 '인출상품 비교공시'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인출옵션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다양한 인출방법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금리 및 수익률, 판매액, 예상 연금액, 실적 연금액 등 인출국면의 가입자들이 인출방법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담아낼 필요가 있다.

다. 경영적 측면의 발전방안

경영적 측면의 발전방안은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주로 인출국면에서의 보험사 경쟁력 제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연금보험 경쟁력 제고, 운용현황보고서 개선, 자산운용 역량 강화 등이 포함된다.

1) 연금보험 경쟁력 제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퇴직연금제도는 이미 인출단계에 진입했다. 이는 곧 IRP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으며, IRP 가입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퇴직연금사업자의 경쟁력도 강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적립단계에서 은행 및 증권업계에 밀리고 있는 보험사 입장에서 인출단계는 권토중래를 노려볼 만한 시장이다. 인출단계에서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타 업권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비해 연금상품 운용경험이 많다. 이는 타 업권 사업자에 비해 보험사가 가지는 중요한 자산이자 이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IRP시장에서의 보험사 경쟁력은 그다지 높다고 할 수 없다. 적립단계의 연장선상처럼 증권사와 은행에 밀려 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출시장에서 보험사가 고전을 하는 핵심 이유는 낮은 금리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여전히 적립단계의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안정적 연금지급이라는 보험사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가격(수익률)에 민감하고 조금이라도 적립금운용에 관여하고 싶은 니즈가 큰 스마트 고령자들이 대거 인출시장에 진입해 있는 인구통계학적 현상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영국 퇴직연금 인출시장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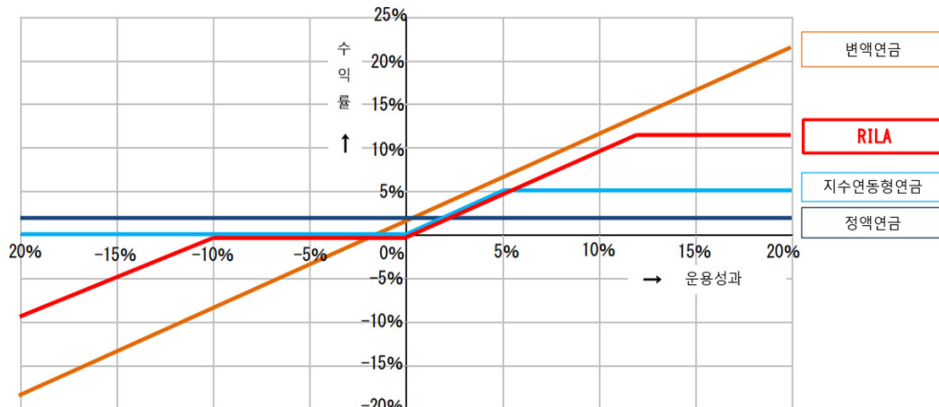
최근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에서 연금자산 규모 20억 파운드 이상의 기업 중 일부를 샘플로 선정해 조사한 내용⁵⁰⁾에 따르면, '종신연금 구입'은 건수와 금액 모두 2015년 이후 약세를 보이다 2022년에는 모두 10% 미만으로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드롭다운 선택'은 건수 기준으로는 2015년 1.2%에서 2022년 29.5%로, 금액 기준으로는 70% 전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가 IRP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수익률과 자유도 측면에서 인출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먼저 수익률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현재의 금리연동형 상품보다는 훨씬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보험사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23년 11월 26일 퇴직연금 감독규정의 개정으로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이 인출단계 상품으로 편입되었다는 점이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최저수익률 보장 기능이 있는 변액연금상품을 말한다. 아직 해당 상품이 개발되어 인출시장에 투입되었다는 소식은 없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하나의 장벽은 넘은 셈이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는 변액연금은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긴 하나, 오늘날 미국의 인출시장에서는 전통적인 상품으로 분류되며 실적 역시 하락세를 겪고 있다. RILA와 같은 보다 혁신적인

50) FCA(2024)

상품이 필요하다. RILA는 전통적 변액연금보다 중위험-중수익 성향이 더욱 강한 상품으로 최근 그 성장세가 매우 가파르다. RILA가 전통적 변액연금보다 중위험-중수익 성향이 더 강하다는 것은 <그림 IV-4>에서 보는 것처럼 둘 다 하방위험이 존재하지만 그 정도는 RILA가 적고, 이는 상방위험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림 IV-4> 개인연금 상품 종류별 운용성과와 수익의 관계



자료: Andrew Phillips(2019), "Intro to Structured Annuities", 2019 SOA Annual Meeting, Session 175 ; 篠原 拓也(2023)에서 재인용함

다른 하나는 인출상품의 자유도를 높이는 것인데, 이는 보험상품만으로는 그 구조상 쉽지 않아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장에서 살펴 본 영국 NEST Guided Retirement Fund, 호주 AMP MyNorth Lifetime 상품 같은 유연한 인출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 상품은 은퇴 초기에는 투자하면서 재량 인출하며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적립금을 활용하는 유연성을 갖고 있으며, 은퇴 후기에는 안정적인 연금지급이라는 안전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영국의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인출시장에서 주력 상품의 하나로 내세우는 드로다운 상품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보험형 연금이 아니라 신탁형 연금상품이다. 우리나라 보험사가 이런 상품을 개발하여 인출시장에 투입하려면 우선 신탁업 면허가 필요하다. 그런데 보험사 중 신탁업 면허를 취득한 곳은 생명보험사 5개와 손해보험사 2개 뿐이다. 보험사 중 퇴직연금사업자인 곳은 생명보험사 11개, 손해보험사 6개이다. 즉 퇴직연금사업을 영위하는 생명보험사 11곳 중 6곳과 손해보험사 6곳 중 4곳이 아직 신탁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황이다. 인출시장이라는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기 전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운용현황보고서 항목 개선

금융감독원은 2018년 12월 가입자 관점에서 적립금 운용상품 선택 및 운용성과 평가에 꼭 필요한 핵심정보를 충실히 제공한다는 취지로 상품제안서 및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을 제정하였다. 그동안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운용상품 선정을 위하여 '상품제안서'를, 적립금 운용현황 및 성과 평가를 위해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를 각각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업자별로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크고, 투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가입자를 위한 실질적 도움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핵심내용을 담도록 하였다. ① 적립금 운용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적립금 운용 및 운용수익률 추이, 상품별 적립금 비중 및 부담금 투자비율 등을 그래프로 제시, ② 가입자별 수익률을 사업자 비교공시 수익률과 동일 기준으로 산출토록 통일하여 비교 가능성 제고, ③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 산정 기준 및 내역을 명시하고, 실적배당 상품은 총보수·비용 비율뿐 아니라 총부담액 및 가입금액 백만 원당 총부담액을 모두 기재하도록 하였다.

2020년 11월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과 예상 연금수령액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을 개편하였다. 개편되는 운용보고서에는 ① 납입원금 대비 누적 및 연평균 수익률, ② 펀드보수, ③ 55세 이후 연금수령액 등을 안내하도록 추가하였다. 개편된 표준서식은 요약과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은 다시 자산현황, 수익률 현황, 수수료 등 비용 안내, 기타사항 등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출국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예상 연금수령액은 기타사항에 들어가 있다.

표준서식에는 예상 납입액, 예상 수익률, 예상 연금수령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예상 납입액은 작성기준일로부터 역산한 직전 3년간의 월평균 납입액을 의미하며, 예상 수익률은 통합연금포털 예상연금액 산출 시 적용되는 가정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예상 연금수령액은 ① 직전 3년간 월평균 납입액을 ② 고객이 지정한 기간 동안 납입하고, ③ 예상수익률이 향후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④ 고객이 신청한 연금수령개시 예정일로부터 ⑤ 고객의 연금수령 신청기간(기간이 없는 경우 20년 가정)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세금 차감 전 금액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림 IV-5〉 개편 적립금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 상의 예상 연금수령액 서식

(가정)예상 납입액(단위:원)			(가정) 예상 수익률(%)						
연령(만)	55세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61세	62세	63세
연 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금 액									
연령(만)	64세	65세	66세	67세	68세	69세	70세	71세	72세
연 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금 액									
연령(만)	73세	74세	75세	76세	77세	78세	79세	80세	81세
연 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금 액									
연령(만)	82세	83세	84세	85세	86세	87세	88세	89세	90세
연 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20xx년
금 액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내년부터 퇴직연금의 실질 수익률과 예상 연금수령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개편 표준서식은 예상 연금수령액을 제시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미국의 운용보고서와 비교하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존재한다. 제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은퇴강화법이 2019년 통과(시행은 2022년 12월)된 이후 2022년 1분기부터 DC 가입자에게 배포하는 운용보고서에 평생소득금액을 예시하도록 하였다. 평생소득금액 예시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에서 제공한 작성지침에는 적립금 규모, 평생소득 수령일자, 예정사망률, 예정이자율, 예상되는 평생소득금액(1인과 2인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만일 DC제도 내에 연금보험계약이 있다면, 정부 지침을 따르거나 실제 가입한 계약의 종신연금 예상액 중 하나를 선택해서 표기할 수도 있다.

미국의 운용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개편 표준서식 대비 훨씬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제공 정보의 양이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가입자의 은퇴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보라면 빠져서도 안 된다. 미국의 운용보고서 작성지침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예상되는 평생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수령자가 1인(본인)일 경우에는 평생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하며, 2인(본인+배우자)일 경우에는 마지막 생존자까지 평생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때는 실제 결혼상태나 배우자의 실제 연령과 관계없이 동갑 배우자를 가정하고, 마지막 생존자에게 100% 지급이 가능한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결국 미국의 예상연금액은 종신연금을 기본으로 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예상연금액은 <표 I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정기간연금을 디폴트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퇴직급여 수령방법의 최종 선택권자는 가입자이지만, 운용현황보고서에서 종신연금이 아닌 확정기간연금을 강조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국가적 과제로 등장한 장수리스크 대응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예상연금액은 종신연금을 디폴트로 하고, 가입자의 은퇴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목을 찾아 추가하는 방향으로 운용보고서 표준서식의 개편이 필요하다.

3) 자산운용 역량 강화

연금상품은 기본적으로 장기상품이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을 감안할 때 60세에 연금보험에 가입하더라도 2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상품은 약간의 수익률 차이에도 연금의 원자는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연금상품은 수익률 민감도가 매우 높은 상품인 것이다. 이는 연금상품의 경쟁력은 자산운용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보험사들이 제시하는 연금상품의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보험사의 자산운용 역량은 연금상품이 경쟁력을 갖추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다 보니 최근 보험업계는 IFRS17 도입 이후 CSM이 큰 보장성상품⁵¹⁾에 주력하고 연금사업에 대한 관심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공적연금의 사회적 안전망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사적연금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기회를 방기하기에는 보험사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나 사업적 전망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IFRS17 하에서 보험사의 당기손익은 CSM과 투자손익으로 구성되므로 연금사업의 투자수입은 매우 중요한 이익의 원천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우리나라처럼 보장성보험을 많이 판매하는 미국 보험사의 영업이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연금보험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⁵²⁾

이상에서 본 것처럼 연금사업은 보험사 입장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영역이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수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연금사업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쉬

51) 노건업 외(2023)에 따르면 장기선도금리 변화를 기본 가정으로 했을 때 상품별 CSM은 건강보험 19.1%, 종신보험 9.7%, 연금보험 5.5%, 저축보험 1.2%로 추정됨

52) NAIC(2024)에 의하면, 2023년도 생명보험사의 영업이익 중 연금보험(Annuities)이 4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생명보험(Life Insurance) 31.3%, 제3분야(Accident & Health) 27.8% 순으로 나타났다

운 일은 아니다. 연금사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금상품의 매력도를 높이는 정도는 자산운용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다. 자산운용 역량이 뛰어난 보험사는 연금상품에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도 그 이상의 자산운용수익률을 거둬오르며 이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다시 연금상품을 통해 자금유입이 늘어나고, 자산운용에 투입되는 자금 역시 증가함으로써 동일한 수익률로도 더 많은 이익을 거두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자산운용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의 보험사들은 자체 운용능력 제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아웃소싱을 하면 자금 당장은 적은 비용으로 보다 높은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일본의 보험사들은 글로벌 운용시대임을 감안해 해외 유망 자산운용사 인수 및 합작 운용사 설립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일본생명은 2012년 8월 인도 자산운용회사인 킬라이언스 캐피탈 에셋매니지먼트 지분 35% 취득, 2013년 4월 닛폰라이프 글로벌인베스터즈 싱가포르 법인 설립, 2013년 4월 고이올 회사채 투자에 특화되어 있는 미국 자산운용회사 포스트 어드바이저리그룹 지분 20% 취득, 2017년 12월 미국채권 운용에 강점을 지닌 미국 자산운용회사인 TCW그룹의 지분 24.75% 취득, 2018년 3월 독일 자산운용회사 도이치에셋매니지먼트 지분 5% 취득 등 오래 전부터 글로벌 자산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 생명보험업계 2위인 다이이치생명은 2012년 8월 미국 자산운용회사 자누스(Janus Capital Group)에 출자(19.9%) 및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후 2013년 1월 관련회사로 편입하였다.

일본의 보험사들이 해외 운용능력 강화에 발 벗고 나선 것은 연금사업 강화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인구감소 시대를 맞이해 신규 유입자금보다 보험금으로 유출되는 자금의 규모가 더 커질 것에 대비한 장기포석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일반계정 자산의 수익률이 올라가면 금리연동형 연금상품의 금리를 높일 수 있고, 특별계정 자산의 수익률이 올라가면 퇴직연금과 변액보험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결국 자산운용과 보험영업 사이에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보험사가 처한 상황 또한 일본 보험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국내에서 운용능력 강화가 쉽지 않다면 해외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보험사들도 글로벌 운용시대임을 감안해 해외 유망 자산운용사 인수 또는 지분투자, 특정분야에 강점을 보이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투자, 글로벌 운용능력이 뛰어난 자산운용사와의 협업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산운용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는 연금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도입 20년을 앞두고 본격적인 인출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현재의 인구구성을 감안할 때 머지않은 시기에 성숙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도 이제 인출국면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뜻한다. 일부 사업자들은 이미 IRP 시장에 투자를 늘리며 인출국면 전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아직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타 권역 대비 보험권 사업자의 인출국면 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인출국면에서 전개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최근 인출국면에 제도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해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인출국면에 우호적인 환경의 정비, 보험권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사업자의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을 규정한 근퇴법 제17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의 세율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30%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지만, 일시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큰 상황에서는 이것만으로 연금화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은 2022년 12월 시행된 은퇴강화법(SECURE)에서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한 평생소득금액 예시(Lifetime Income Illustration) 의무화, 종신연금보험 편입 유인 확대, 종신연금보험 사업자에 대한 수탁자책임 면제 등을 도입하였다. 영국은 금융감독청(FCA)의 핸드북 제19장에서 공개시장옵션, 독립지배구조위원회, 인출옵션 선택 시 수반되는 위험에 대한 정보제공, 연금보험 가격비교 정보, 재량인출 및 정형화된 인출옵션 제공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인출단계 개선을 목적으로 2014년 금융시스템조사를 실시한 호주는 인출단계에서 디폴트 상품의 조건으로 포괄적 퇴직소득상품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2021년에는 퇴직연금산업(감독)법에 퇴직소득규약을 명시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범위를 노후를 대비한 적립단계에서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인출단계로까지 확장하였다. 일본의 경우 인출방법으로 일시금, 연금, 연금+일시금, 연금+적립금 직접 운용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측면에서 인출국면에 접어든 퇴직연금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연금수령 요건의 완화, IRP 유연성 제고, 연금수령의 디폴트화, 인출국면 맞춤형 정보제공의 강화, 종신연금 선택 시 최저세율 적용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퇴직연금 통계의 개선, 공적 무료상담서비스의 체계적 제공, 인출국면 비교공시 강화 등 3가지를 제안하였다. 경영적 측면에서는 연금보험 경쟁력 제고, 운용현황보고서의 항목 개선, 자산운용 역량 강화 등 3가지를 도출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퇴직연금제도 인출국면에 초점을 맞춰 국내외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인출국면에 접어든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향후 과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 한정했기 때문에 인출국면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50대 이상의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물론 퇴직연금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연구활동을 해온 연구자의 경험이 일정 부분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는 없다. 특히 인출국면에서 선택의 기로에 직면할 50대 이상 가입자의 구체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은 정책당국의 제도개선은 물론 퇴직연금사업자의 전략 수립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후속 과제로서 50대 이상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실제적인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다양한 해외사례를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각 사례들을 유기적으로 엮어 국내에 시사하는 바를 명확히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한계이다. 한국과 해외사례 간 인출국면 의사결정 체계,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 정책 및 감독 인프라 등이 상이하여 이들 요건을 고려한 심도 있는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김병덕(2021),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해외사례 및 국내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KIF 금융분석 리포트』, 금융연구원

김현중·이동화(2024), 「종신연금 상품의 수익비 분석: 사망률 개선 효과를 중심으로」, 『연금연구』, 제14권 제1호

노건엽·이승주·전예지(2023), 「IFRS17 영향분석과 성과지표 연구」,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박희진(2024), 「한국 퇴직연금시장에 Master Trust 도입이 필요한가: 영국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연금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연금학회

자본시장연구원(2020a), 「미국 연금법 개정(SECURE Act)의 특징과 의미」, 『자본시장포커스』
_____ (2020b), 「영국의 연금비용 공개 개혁 시행과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국회법률도서관(<https://law.nanet.go.kr>)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http://www.fss.or.kr>)

금융규제·법령해설포털(<https://better.fsc.go.kr>)

생명보험협회 공시실(<https://pub.insure.or.kr>)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https://csa.nps.or.kr/main.do>)

篠原拓也(2023), 「アメリカでの新たな年金の普及 - 第4の年金は、変額年金にとって代わるか? -」, 『保険・年金フォーカス』, ニッセイ基礎研究所

日生協企業年金基金, 「日生協企業年金基金規約」

運営管理機関連絡協議会(2023. 11), 「確定拠出年金統計資料」

厚生労働省(2021), 「確定給付企業年金の事業状況等」 (<https://www.mhlw.go.jp/content/12500000/000712299.pdf>)

三井住友信託銀行(2022), 「確定拠出年金 老齢給付金請求のお手続き」

<https://faq.jis-t.co.jp>

<https://www.resona-tb.co.jp>

<http://www.zenzeikyo.com>

AJBell(2024), “A Guide to Drawdown”

American Academy of Actuaries(2022), “A Review of Qualifying Longevity Annuity Contracts”, *Issue Brief*

AMP(2023), MyNorth Super and Pension: Product Disclosure Statement

APRA(2024a), 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From June 2015 to June 2023

APRA(2024b), INDUSTRY UPDATE Pulse check on retirement income covenant implementation

APRA, ASIC(2023), “Implementation of the retirement income covenant: Finding from the APRA and ASIC thematic review”, *Information Report*

Australian Treasury(2023a), “2023 Intergovernmental Report”

_____ (2023b), “Retirement Phase of Superannuation”, Discussion Paper

Deloitte(2016), Innovations and Trends in Annuities: QLACs

Department for Work & Pensions(2020), “Stronger Nudge to Pensions Guidance”

_____ (2022), “Government response; Stronger Nudge to Pensions Guidance”

_____ (2023a), “Evolving the Regulatory Approach to Master Trust”

_____ (2023b), “Trends in the DC trust-based pensions market”

Ellis, C., Moenig, T., and J. Volkman-Wise(2023), “Registered Index-Linked Annuities in Qualified Retirement Plans”, *TIAA Trends and Issues*

FCA(2023), “Investment Pathways: Post-Implementation Review”

___(2024), “Retirement income market data 2022/23”
LIMRA(2023b), “U. S. Individual Annuity Yearbook: 2022 in Review”
_____(2024), “U. S. Individual Annuity Yearbook: 2023 in Review”
LIMRA, LOMA(2023), “A Deeper Dive: 2021 Income Annuity Market”
NAIC(2024), U.S. Life and A&H Insurance Industry Analysis Report
NEST(2019), Guided Retirement Fund
_____(2021), Quarterly Investment Report
NFU Mutual(2024), “Income Drawdown Guide: A flexible way to use your pension pot”
PLANSPONSOR(2024), DC Benchmarking survey
TPR, FCA(2023), “Value for Money: A framework on metrics, standards, and disclosures”
University of California(2023), Deferred Lifetime Income Decision Guide
U. S. IRS(2014), “Longevity Annuity Contracts”, *Federal Register*, 79(127)
Vanguard(2021), Annual Report for 2020, Vanguard Asset Management Independent
Governance Committee
Vanguard Research(2024), From theory to practice: Guaranteed Income and Hybrid
Annuity Target-Date Funds

미국 국세청(<https://www.irs.gov>)

미국 상원(<https://www.congress.gov>)

영국 Money Helper(<https://comparison.moneyhelper.org.uk/>)

호주 moneysmart(<https://moneysmart.gov.au>)

호주 Mynorth(<https://www.northonline.com.au/>)

<https://www.aviva.co.uk>

<https://pensionsauthority.ie>

<https://www.standardlife.co.uk>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연회비	제공자료
법인회원	₩300,000원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특별회원	₩150,000원	
개인회원	₩150,000원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 팩스 : (02)3775-9102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 예금주: 보험연구원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 저자약력

이경희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계리사 / 상명대학교 교수
E-mail : khlee@smu.ac.kr

손성동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 / 한국연금연구소 대표이사
E-mail : ssdks@naver.com

연구보고서 2024-15

퇴직연금제도 인출국면 현황과 과제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인쇄소 고려씨엔피

ISBN 979-11-93021-60-6
979-11-85691-50-3(세트)

(정가 10,000원)